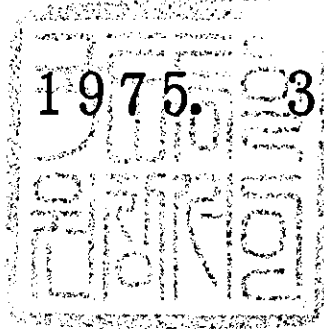


우방국의 민방위 실태 고찰

전산필



이 보고서를 국토통일원 75년도 상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5.3

연구책임자 : 강 대 식

목 차

I. 미국의 민방위에 관한 개요	3
제 1 절 연 령	5
제 2 절 목 적	6
제 3 절 책 임	7
제 4 절 예방계획	9
제 5 절 구제계획	17
제 6 절 지원업무	22
제 7 절 행정적조치	29
II. 미국의 민방위 제도	37
제 1 절 총 칙	39
제 2 절 행정기관	50
제 3 절 권한 및 임무	52
제 4 절 긴급권한	65
III. 스위스 연방의 민방위 개요	71
제 1 절 개 요	73
제 2 절 민방위 실태	80
IV. 스위스 연방의 민방위 제도	97
제 1 절 연방 민방위법	99
제 2 절 민방위에 있어서의 건축상 조치에 관한 법률	129

V. 이스라엘의 민방위 제도	139
제 1 절 해 석	141
제 2 절 민방위부	142
제 3 절 대피소	159
제 4 절 기업체 종업원의 장비 및 훈련	182
제 5 절 민방위 경계상태	184
제 6 절 유독성 물질	187
제 7 절 개인장비	190
제 8 절 총 칙	192

I . 미국의 민방위에 관한 개요

제 1 절 연 령

미합중국의 민방위계획은 1916년 8월에 의회가 국가의 안전보장 및 복지를 위하여 모든 산업과 자원을 조정하고, 유사시(有事時)에는 국내의 제반 자원을 즉시 집중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국방회의(國防會議) : the Council of National Defense : (이른 육군, 해군, 내무, 농무 등 6개 성 장관으로 구성)를 설치한 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후 이 국방회의가 해체된 1918년 12월부터 1940년 4월 까지도 사실상 공식적인 민방위 계획은 중단상태에 있다가, 1940년 5월 28일 「루우스벨트」(F.D. Roosevelt) 대통령이 주 및 지방협력국(the Division of State and Local Cooperation)을 포함한 국방자문위원회(the National Defense Advisory Commission)를 설치함으로써 부활되었으며, 1941년 5월 대통령 집행명령(the Presidential Executive Order)에 의하여 주 및 지방협력국은 민방위청(民防衛庁 : the Office of Civil Defense)으로 대체되었다.

1941년 5월부터 1951년 1월에 이르는 기간중, 잠재적인 적(敵)의 파괴능력(destructive capabilities)과 미국의 국방정책이 변동됨에 따라 미국정부의 민방위정책, 계획 및 지침상에도 일련의 변경이 뒤따르게 되었다. 1951년 1월 12일 「트루우먼」(H.S. Truman) 대통령은 1950년 연방민방위법(the Federal Civil Defense Act : 공법 920)에 서명하였으며, 이 법에 의하여 현행 국가민방위계획(the national civil defense Program)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그후 10여년간에 걸쳐 무기 및 전달방법 (delivery) 의 발달과 미국의 국방정책 및 자세의 변경에 따라, 이러한 민방위정책 및 계획도 계속하여 변경되어 왔다. 1961년 8월 1일 대통령 집행명령에 의하여 국방장관 (the Secretary of Defense) 이 연방민방위 계획의 책임을 지는 한편, 국방성 (the Defense Department) 의 예하기관으로서 민방위청이 설치되었다. 그후 1964년 3월 31일 육군장관 (the secretary of the Army) 이 국방장관의 민방위책임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민방위청은 국방장관의 관할에서 육군장관의 관할하에 이전되었다.

제 2 절 목 적 (objectives)

전면전쟁 (the general war) 에는 엄청난 파괴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을지라도 충분한 예방 및 구제조치를 취한다면 전쟁의 참화로부터 수백만의 인명 (人命) 을 구할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으로부터 야기되는 재산의 손실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바, 이러한 조치가 바로 적의 공격으로 인한 긴급사태하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존 (生存) 에 필수불가결한 서어비스 및 시설을 유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화된 민방위활동이다. 따라서 민방위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가지 기본목적에 고려하여야 하는 바,

첫째, 공격의 영향을 최소화 (最少化) 시키기 위하여, 즉 취약성 (脆弱性 (vulnerability)) 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격의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및 지식을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

호하고,

둘째, 공격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즉, 생존자 (the survivors) 를 살리고 생존자의 복구를 돕기 위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격의 결과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작업 및 훈련에 의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존한다.

그외에도 민방위계획은 이러한 제반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와 민방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업무도 포괄한다.

제 3 절 책 임 (responsibilities)

법률에 의하면, 민방위도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으로 되어있고, 연방정부 (the Federal Government) 도 필요한 조정 (the coordination), 지도 (guidance) 및 지원 (assistance) 의 책임을 진다. 실제적인 긴급 민방위업무는 제 1 차적으로 각 주 및 그 예하기관이 담당하며, “ 민방위 (civildefense) ” 라는 말은 1950년 연방민방위법 제 3 조 (b) 항에 정의되어 있다.

제 1 항 연 방

1958년 개편계획 (the Reorganization Plan) 제 1 호에 의하여 대통령에 이전된 연방민방위에 관한 제반 책임은 대통령에 의하여 국방성, 비상기획실 (非常企劃室 : the Office of Emergency-Planning) 및 기타 연방기관에 부여되었다. 대통령령으로서는 대통령에게 유보 (留保) 된 민방위 비상사태하에서의 비상조치권을

연방기관에 위임 할 수 없으나, 연방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1. 민방위청 : 연방정부의 민방위 책임은 대통령령 제10952호에 의하여 국방장관에게 부여 되었고, 국방성안에서는 민방위계획의 이행책임은 육군 장관이 관장하며, 육군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민방위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민방위청은 대통령에게 유보되거나 대통령이 다른 기관에 이양한 기능을 제외하고, 연방의 모든 민방위 기능에 관한 계획의 책임을 진다.

민방위청의 일반기능은 다음에 설명할 특별계획 이외에도 국가 민방위계획을 작성 및 지도하고, 주 및 지방민방위능력의 발전을 조력하는 것이다.

민방위청은 또한 전국 8개 지청 (支庁 : the Regional Offices: Massachusetts 주의 Maynard, Maryland 주의 Olney, Georgia 주의 Thomasville, Michigan 주의 Battle Creek, Texas 주의 Denton, Colorado 주의 Denver, California 주의 Santa Rosa, Washington 주의 Bothell.) 을 통하여 주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방위 계획에 관하여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2. 비상기획실 : 비상기획실장은 대통령령 제10952호에 의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을 진다.

(1) 민방위에 관한 전체계획을 기획, 지도 및 조정하기 위한 정책결정.

(2) 연방기관의 민방위 임무 결정, 민방위활동에 관한 사열 및 평가, 연방기관 상호간의 활동의 조정 및 각 주와 인접국가간의 민방위활동의 조정

(3) 주 상호간 및 각 주와 인접국가간의 상호 원조협약 (the mutualaidcompacts)의 주선 및 권장, 민방위의 목적을 위한 법령제정의 촉진

3. 기타 연방기관 : 일부기관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특별한 민방위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각 기관은 자체의 필수임무 또는 기타 연방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지 아니하는 인원, 물자, 시설 및 서비스를 민방위 비상사태하에 있는 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당하고, 이러한 잉여인원을 각 주의 훈련목적에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을 진다.

제 2 항 주 및 지방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기의 관할범위안에서 민방위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며, 주 법률 및 연방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민방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 및 절차를 발전시킨다.

제 4 절 예방계획 (preventive Programs)

“ 예방계획 ”이라는 말은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영향에 대한 인간 및 사물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민방위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세가지 기본계획은 전국 방사성 낙진 대피조직 (the national fallout shelter system), 민방위경보조직 (the civil defense warning system), 방사능 강도검사 및 보고체계 (the radiological monitoring and reporting system) 이며, 자체방위 (自体防衛 : the Self-Protection) 및 주요시설의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에 관한 일반 대중 교육도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제 1 항 방사성 낙진 대피소

전국 방사성 낙진 대피계획의 목적은 다음에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간소하고도 적당한 방사성 낙진 대피소를) 적절한 규격으로 통일시키고 허가제로 하여 표지를 부착시키고 필요품을 비축시킨다.

2. 연방청사 및 기타 공공건물 안에 보조 대피소 (additional shelterspace) 를 만든다.

3.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대피소를 만들도록 권장한다.

4. 대피소 관리요원을 훈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대피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方案) 을 준비한다.

A. 민방위청 (O.C.D) : 민방위청은 전국 방사성 낙진 대피계획의 목적 (objectives), 규준 (standards) 및 이행사항 (implementation requirements) 을 정하며, 이러한 기능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행한다.

(1) 보호규준의 설정

- (2) 대피소의 검사 및 표지 계획에 관한 지시
- (3) 연방 대피소 보급품 및 장비의 제공
- (4) 대피소 시설비품목록의 보관
- (5) 대피소의 건설 및 사용에 관한 지도

민방위청 지침은 대피소 계획을 감독하고, 연방 일선기관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술지도 및 원조를 제공한다.

B. 기타 연방기관 : 기타 모든 연방기관은 가능한 한, 그 관할하에 있는 신축건물 및 기존건물 안에 방사성 낙진 대피소용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C. 주 및 지방자치단체 :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방의 지원하에 주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피소를 확보하고, 유사시에 주민들을 대피소까지 이동시키는 계획을 확립하는 한편, 대피소 및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일반주민과 대피소 관리요원을 훈련시켜야 한다.

제 2 항 민방위 경보 조직

이 계획의 목적은 공격의 경보(警報) 및 기타 소식을 국내 전역에 걸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데 있다.

A. 민방위청 : 민방위청은 북미 대공 방위 사령부 (the North American Air Defence Command)로부터 수취한 각종 경보를 전국에 전파하는 경보조직을 운용 및 유지할 책임을 지며,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보조직을 설치 및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각각 50%의 비율에 따라,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 자금을 공급한다.

민방위청 지침은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자체의 정보조직을 발전시키는데 조력하고 지도하며, 상호 관계되는 정보사항에 관하여 군사기관과 협조하는 한편, 정보에 관한 정보를 연방 일선 기관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다.

B. 주 및 지방자치단체 :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보를 전파하고, 관찰 주민에게 정보에 따라 취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알리기 위한 각기의 민방위조직을 편성 및 유지한다.

제 3 항 방사능의 강도 검사 및 보고

계획의 목적은 핵공격 (the nuclear attack) 으로부터 결과되는 방사능 위험 (the radiological hazards) 의 소재 (所在) , 강도 (強度) 및 존속기간에 관한 정확하고 때에 알맞는 정보를 수취 및 전파하고, 이러한 위험을 최소로 경감시키는 수단을 알리기 위한 검사 및 보고체제와 기관을 설치함에 있다.

A. 민방위청 : 민방위청은 방사능 위험에 관한 정보를 보고, 수취, 계획, 분석 및 평가하고 이러한 정보를 다른 연방, 주 및 지방기관과 일반대중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통 (系統) 및 절차를 정한다.

이러한 임무를 행하기 위하여, 민방위청은 연방기관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훈련, 기준 및 지침과 수단 및 방편 (方便) 을 제공하는 한편 각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검사 및 정보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한다.

민방위청 지침은 방사능 강도의 검사 및 보고체제와 방사능 위협의 평가절차를 정하며, 다음에 계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사능 위협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정보를 민방위청 본부, 기타 연방기관,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氣象)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전파함에 있어 상무성(商務省: the Department of Commerce)과 협조한다.

(3) 방사능의 영향을 신속히 평가하는데 유용한 기상학적 기술(meteorological techniques)에 관하여 연방 일선기관과 주 및 지방정부에 자문 및 지도를 한다.

B. 기타 연방기관: 모든 연방기관은 방사능의 위협을 탐지 및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방사능위험에 관한 정보를 민방위청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성 이하의 기타기관, 내무성, 농무성, 보건교육복지성, 연방항공청(the Federal Aviation Agency),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he Tennessee Valley Authority) 및 원호처(the Veterans Administration)는 각기 방사능의 검사결과를 전파하는 방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무성은 방사성 낙진에 관한 예보(予報)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연방기관이 운영하는 이러한 방송시설은 각 주와 관계 연방기관의 공동계획협정(the mutual planning agreement)에 따라, 직접 또는 적당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송망을 통하여 주의 검사 및

보고망과 제휴할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 :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그 결과를 민방위청지청에 보고하기 위한 자체의 연락망을 수립 및 운영하는 한편, 보고받은 방사능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도 발전시킨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제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사능 방어장비 (the radiological defense equipment) 를 유지하는 체계를 정비한다.

(2) 공중의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민간 공중정찰대 (the Civil Air Patrol) 를 포함한 민간 항공기 (수송기 제외) 의 이용절차를 정한다.

(3) 공공대피소 안의 방사능 위험을 탐지 및 평가하기 위한 능력을 발전시킨다.

(4) 방사능 방어상태에 관하여 일반 대중에게 계속 보도하기 위한 수단을 발전시킨다.

(5) 방사능 방어 훈련계획을 지도한다.

제 4 항 시 설 보 호

이 계획의 목적은 모든 기간산업 (基幹産業) 이 필요한 시설 보호조치 (facilities Protection measures) 를 채택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함에 있다.

A. 민방위청 : 전술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민방위청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각 산업체가 연방, 주 및 지방기관과 협력하여 비상계획 (emergency plans) 을 수립하는데 조력한다.

(2) 적절한 기타 연방기관과 협조하여 산업체 및 사업체에게 시설보호에 관한 기술적 자문 및 원조를 제공한다.

(3) 기타 연방기관의 산업시설보호계획을 조정한다.

민방위청 지침은 시설보호계획의 협조조정을 돕기 위하여 관한 연방기관의 현장요원 (the field staffs) 과 협조한다.

B. 기타 연방기관 : 시설보호의 책임을 진 기관은 관계산업 및 사업의 필요에 따른 지도를 하고, 전국적인 준비계획을 촉진한다.

C. 주 및 지방자치단체 :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에 참여하는 산업 및 사업을 장려 및 지원한다.

제 5 항 훈 련 및 교 육

이 계획의 목적은 공무원 및 일반주민에게 다음 각호의 1 을 제공함으로써 민방위활동에 대비시키는 것이다.

(1) 민방위임무를 부여받은 각급 공무원 및 군인의 훈련

(2)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민방위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에 대한 기술 훈련

(3)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자립 (自立) 하고, 공동사회의 생존노력에 조력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A. 민방위청 : 민방위청은 민방위요원에 대하여 특수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할 책임을 지며, 다음에 제기하는

는 사항도 그 책임하에 이행한다.

(1) 연방민방위 참모대학 (the Federal Civil Defense Staff College) 및 2개의 훈련소의 운용

(2)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훈련자금의 지급

(3)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연방기관의 훈련 및 교육용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연락의 유지

(4) 이러한 훈련을 지도 및 후원하는 비정부단체 (nongovernmental groups) 에 대한 기술지도 및 원조의 제공

(5) 전국에서 사용할 훈련자료의 창작을 포함한 일반 교육계획의 수립

(6) 연방 일선기관에 대하여 민방위훈련 및 교육계획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의 하달

민방위청은 민방위활동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건축가 및 기사 (技師) 에 대한 직업개발계획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을 지도한다.

민방위청 지침은 주 및 지방자치단체, 연방일선기관, 교육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민방위훈련을 지도하며, 민방위 교육자재를 배부하고, 그 교육자재의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훈련을 지도한다.

B. 기타 연방기관: 기타 연방기관은 민방위청의 정책에 따라 민방위청과 협조하면서 자기 담당한 민방위활동의 범위안에서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훈련계획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며, 현재 사용하는 교육자재를 발전시키고, 자체의 훈련을 지도한다. 특히,

(1) 보건교육 복지성 (the Department of Health, Educa -

tion, and Welfare) 의 예하기관인 보건소 (保健所 : the Public-Health Service) 는 공중의료자조계획 (公衆医療自助計劃 : the Public Medical Self-Help Program) 을 발전시키고 지도한다.

(2) 보건교육복지성 (DHEW) 교육청 (教育庁 : the Office of Education) 은 민방위청을 대신하여 민방위에 관한 성인교육을 담당한다.

(3) 농무성은 농부 및 농촌 주민들에게 민방위의 사명을 주지 (周知) 시키기 위한 농촌계몽계획을 지도하며,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비슷한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지도를 제공한다.

C. 주 및 지방자치단체 :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요원에 대한 훈련과 민방위청 및 기타 연방기관에서 훈련받을 피교육자 선발의 책임을 진다.

제 5 절 구제계획 (救濟計劃)

여기에서 “ 구제계획 (remedical programs) ” 이라 함은 연방 정책지침에 따라 행하여지는 민방위활동과 생존자 (the survivors) 를 구하고 그들의 회복을 돕는 여러가지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민방위활동을 말한다.

제 1 항 긴급공보활동 (Emergency Public Information)

이 계획의 목적은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이 긴급을 요하는 민방위에 관한 소식 및 지시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

하는데 있다.

A. 민방위청 : 전술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민방위청은 공격후의 수습이 필요한 곳에 소식 및 물자를 전달하고, 비상방송 (emergency broadcasting)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는 책임을 진다. 비상사태하에서는 생존을 위한 각종 지시 및 민방위에 관한 제반 소식은 비상방송망 (the Emergency Broadcast System : EBS)을 포함한 모든 가용 (可用) 중개수단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전달한다.

민방위청 지침은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비상공보활동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고, 비상시에는 적절한 소식을 전파한다.

B. 기타 연방기관 : 모든 연방기관은 긴급한 소식 및 지시사항을 수취하고 또 이를 전파하기 위하여 공보요원의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C. 주 및 지방자치단체 :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공보 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공보기관에 비치한다. 비상사태하에서 민방위에 관한 공보 및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1)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제반 조치에 관한 지시사항을 중계한다.

(2) 각종 무기의 영향력에 관한 보도 및 방사성 낙진에 관한 예보를 접수 및 전파한다.

(3) 주민들의 사기 (士氣)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지사항 (公知事項) 및 제반 정보를 계속 보도한다.

그 외에도,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관이 비상방송망을 이

용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 2 항 구 제 활 동

이 계획의 목적은 전면 전쟁상태하에서 인명을 구하고,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 시킴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비상 활동 및 근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수준에서 수행하는 바, 각종 계획 및 이에 따른 특별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구조(救助) — 파괴된 흙더미 속에 묻혀있는 생존자를 구출하고,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2) 재산의 보존 — 필수 보급품 및 장비를 복구하고, 재산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폭발되지 아니한 화기, 가연성 물질등)을 제거한다.

(3) 소화(消火) 및 통제 — 소방활동을 지휘하고, 화재의 확산(拡散)을 방지한다.

(4) 법령(Law and order) — 공격후에 실시하게 될 법령의 적용 범위를 동일하게 하고, 법률을 시행할 정규 및 보조직원을 훈련시키며, 민방위활동중 법령의 시행을 유지한다.

(5) 시료(施療) — 응급치료, 가료(加療) 및 입원가료를 실시하고, 의료 자원의 충분한 이용을 보장한다.

(6) 파괴물의 부스러기 제거 — 통로, 대피소, 공공시설 기타 주요시설로부터 파괴된 부스러기를 제거한다.

(7) 정화(淨化 : the decontamination) — 민방위활동 및 복구작업이 상당히 안전한 상태에서 행하여질 수 있도록 방사능

의 오염을 감소 또는 제거시킨다.

(8) 생존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급식소(給食所)를 마련하여 준다.

(9) 물(water) - 주민들의 식수(食水), 위생, 소화 및 정화에 필요한 물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확보한다.

(10) 보건 및 위생 - 안전한 우유 및 식료품을 확보하고, 물의 오염을 방지 및 제거하며, 쥐나 토끼와 같은 설치류(啮齒類) 동물, 곤충 및 기타 공중위생에 위해(危害)로운 요소를 박멸하고, 시체(屍體)를 제거 및 매장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한다.

(11) 주택 - 대피소가 필요한 생존자들을 위하여 비상주택(emergency housing)을 제공한다.

(12) 긴급복지(緊急福祉) - 생존자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복지사업을 행한다.

(13) 긴급수리(緊急修理) - 생명을 유지하고 다른 민방위 활동을 지휘하는데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수리한다.

A. 민방위청: 민방위청은 연방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별 민방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준 및 지침을 제공하고, 기존 조직을 강화시키는 한편 민방위를 위한 제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조언한다.

민방위청은 또한 다음에 제기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술지도 및 원조를 제공한다.

(2)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비축하여야 할 보급품 및 장비

의 양(量)을 결정하는데 참여한다.

(3) 훈련자재를 준비하고 교육활동을 지도한다.

민방위청 지침은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계획을 감독하고 민방위활동을 지원한다.

B. 기타 연방기관 : 기타 연방기관은 민방위업무의 일부인 연방의 특별계획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1) 농무성 (USDA) - 적정량 (適正量) 의 식량을 생산 및 분배하도록 보장하고, 연방식량 비축계획 (the Federal food Stockpile Programs) 을 지도한다.

(2) 보건교육복지성 (DHEW) - 보건교육복지성은 긴급 구제활동의 일환으로서, 긴급숙박시설을 포함한 의료, 급수, 보건위생 및 복지에 관한 재반 계획을 발전시키고, 복지활동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의약품 비축계획을 감독한다.

(3) 노무성 - 민방위 요원의 충원 (充員) 을 담당한다.

(4) 주택금융청 (the Housing and Home Finance Agency : HHFA) 비상주택 및 이와 관련되는 공공시설의 건설, 수리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급수 및 위생시설을 위한 연방의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보건교육복지성과 협조한다.

민방위의 책임을 진 모든 연방기관은 주 및 지방기관이 비상대비훈련계획 (the preemergency training programs) 을 수립함에 있어 지도 및 원조를 제공한다.

C. 주 및 지방자치단체 : 비상사태하에서 민방위에 관한 제 1 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제기하는

업무를 이행한다.

(1) 민방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관할하에 있는 민방위요원 및 자원의 동원에 관한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한다.

(2) 민방위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장비 및 보급품의 소재를 확인한다.

(3) 특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시 담당하게 될 민방위활동부서를 정한다.

(4) 인접된 주 당국과 상호 원조협약을 체결한다.

(5) 비상사태의 상황 및 자원능력에 관한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상급기관(지방자치단체는 주, 주는 민방위청 지청 및 관계 연방기관)에 대하여 조언한다.

(6) 필수시설에 대한 긴급수리의 필요성 유무를 판정한다.

(7) 국민 비상식량 소비기준(the National Emergency Food Consumption Standard)을 준수한다.

(8) 관할하에 있는 제반 자원의 이용가능성 및 건전성(健全性)을 판정하고 정결한 보급품을 제공하는 한편, 불안정한 보급품은 사전에 제거하여 사용을 못하게 한다.

(9) 민방위기획 및 활동에 있어서 직업단체와 민간단체로부터의 기부(contributions)를 권장하고, 이를 이용한다.

제 6 절 지원업무(Supporting Services)

여기에서 사용하는 “지원업무”라는 말은 모든 연방비상대책활동

에 적용되는 근무계획으로써 예방적 및 구조적 민방위계획을 지원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는 다음의 5가지 주요계획이 있다.

제 1 항 손해의 평가

이 업무의 목적은 각급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민방위활동을 결정 및 지도하는데 필요한 민방위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A. 민방위청 : 민방위청은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핵공격으로부터 발생하는 주민과 자원에 대한 손해의 평가 체계를 발전시키고, 소요량을 판정한다. 이러한 평가체계에는 자료 및 정보센터, 자료분석시설, 기술 및 방법, 필요한 교육 등이 포함되며, 민방위청은 또한 손해평가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연방기관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자문에 응할 책임을 진다.

비상사태하에서는 민방위청은 자체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연방기관의 평가체계를 이용하여 손해 및 상황보고를 접수 및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전파한다.

B. 기타 연방기관 : 기타 연방기관은 각기 관할지역 안에서 손해평가 및 상황의 보고를 이행할 책임을 지며, 민방위의 목적을 위한 적당한 자료를 민방위청에 제출할 책임을 진다.

비상기획실 (OEP) 은 국가자원평가센터 (the National Resource Evaluation Center) 를 통하여 자료의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공격후 자원 관리활동을 분석한다. 연방자원관리기관 및 민방위청은 자원상황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비상기획실에 제공할 책임을 진다.

C. 주 및 지방자치단체 : 민방위청 및 기타 연방기관의 지침에 따라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평가하고, 상황보고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수집 및 준비하며, 비상시에는 그 자체로서 손해의 평가 및 능력분석을 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반 정보를 주에 보고하고, 주는 이를 연방일선기관 및 민방위청 지침에 보고한다.

제 2 항 통 신 (Communication)

이 계획의 목적은 어떠한 공격하에서도 지탱할 수 있고, 연방, 주 및 지방의 민방위활동을 지도 및 조정하기에 적절한 통신체제를 수립하는데 있다.

국방상은 국가 체신기관 (the National Communication System : NCS) 의 행정관 (行政官, the Executive Agent) 으로서 국가체신기관의 구조내에서 평상시의 군 통신기관 및 연방 체신기관 (the Federal Telecommunications System : FTS) 을 이용하여 민방위를 위한 전신지원 (telecommunication support) 을 제공한다.

A. 민방위청 : 민방위청은 방위 체신청 (the Defense Communications Agency : DCA) 과 협조하여 어떠한 공격하에서도 가동할 수 있는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상통신망을 설치할 책임을 진다.

민방위청은 또한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 비상활동을 계획함에 있어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아마추어」 무선사 (the amateur radio operators) 의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민방위청은 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지방기관이 고도의 비상통신능력을 획득하도록 지도 및 원조를 제공한다.

B. 주 및 지방자치단체 :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상통신체제를 발전 및 유지할 책임을 지며, 다음에 제기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1) 필요한 주 공동통신망을 조직한다.

(2) 비상시를 대비하여 설치한 주 및 지방의 기존 통신기관을 통합시키는 계획을 작성한다.

(3) 공공기관의 우편배달부와 협조하여 민방위업무 운영상 우선권이 부여된 연락업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 3 항 수 송 (transportation)

이 계획의 목적은 비상민방위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수송기관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A. 민방위청 : 비상수송처 (the Office of Emergency Transportation : OET) 와 수송에 대한 제 1 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타 연방 기관의 제반계획에 따라 민방위청은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수송을 위한 각종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는데 조력한다.

B. 기타 연방기관 : 일반조달본부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 GSA = 국방동원 총본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략물자

의 구매나 처분을 하는 기관)는 연방민사기관의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송관리 및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며, 육군성 군 운수관리과 (the Military Traffic Management and Terminal Service : MTMTS)는 민방위활동을 위하여 민방위청에 일반수송 및 교통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C. 주 및 지방자치단체 :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상 민방위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제 2 차 수송지원 (the Secondary transportation resources)을 유사시 즉각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기의 비상수송업무를 계획하며, 실제로 이를 이행함에 있어 모든 예하기관과 직업적 민간단체 및 비영리 산업기관과 같은 사설단체로부터 지원을 구한다.

제 4 항 군사적 지원 (military support)

이 계획의 목적은 민방위 지원에 있어 군사적 원조 (military assistance)의 제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다. 이러한 지원은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범위 안에서 보충적으로 행하며, 국방성은 예하 군부대를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A. 육군성 : 육군장관은 시험연습 (test exercises)을 포함한 민방위 예비활동에 있어서의 군의 참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성 (省) 단위의 정책, 책임 및 계획에 관하여 국방장관에게 조언 (助言) 한다.

육군장관은 또한 민방위지원을 위하여 군기관에서 발하는 각종

지시나 명령을 재검토하고, 전국적인 운영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하며, 민방위지원을 담당하는 군기관에 대하여 군(軍)이 특별한 이해관계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민방위사항에 관한 최군의 정보 및 안내사항을 알려준다. 비상시에 육군성은 민방위지원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현역 및 예비군인의 고용을 조정 및 통제한다.

민방위청 지침은 군관구와의 연락 및 협조를 유지하고, 대기중인 예비병력을 민방위 활동에 이용하도록 주선한다. 군사지원 계획과 민방위계획과의 조정은 지방 민방위조정위원회 (the Regional Civil Defense Coordinating Boards)가 행한다.

B. 병참지원 (logistics support) : 방위보급청 (the Defense Supply Agency DSA)은 민방위를 위하여 보급관리와 같은 병참지원을 제공한다.

C. 기술지원 (engineering support) : 미육군공병단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및 해군조선국 (the Navy's Bureau of Yards and Docks)은 대피소 조사 및 표지계획, 공용 대피소계획과 같은 업무를 지원한다.

D. 주 및 지방자치단체 :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적당한 군사 당국과 협조한다.

제 5 항 자원의 이용

이 계획의 목적은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민방위를 위하여 군사지원을 포함한 주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함에 있다.

연방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기업체를 인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한다.

이 계획은 1964년 1월 14일 비상기획실 및 민방위청간의 협의각서 (the OEPOC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여기에서 제 1차 및 제 2차 자원을 구분하고 있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는바, 제 1차 자원 (일반적으로 전국 또는 대다수의 주가 이용하는 주 공동도매재고품 (interstate wholesale stocks) 및 제조업자의 재고품 (manufacturers' inventories)은 비상기획실장 또는 그 대리인이 정하는 우선순위 및 중앙계획에 따라 연방자원기관이 통제하며, 일반적으로 각 주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매용 재고품 (retail stock) 및 도매 재고품인 제 2차 자원은 연방기관의 감독 및 조력하에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한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그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각 주는 당해 주 안에 있는 제 1차 자원의 이용을 지시할 수 있다.

A. 민방위청 : 민방위청은 다른 연방기관과 협조하여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적인 요소를 타개하기 위한 인력 (人力) : manpower) 및 제 2차 자원의 사용에 관한 절차를 준비하는데 지도 및 조력한다.

민방위청 지침은 전술한 민방위청의 업무를 지원하고, 비상사태하에서는 기본적 요소를 타개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주간에 제 2차 자원을 재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각 주의 기본적 소요를 타개하기 위한 제 1차 자원의 소요를 견적하고 이를 준비함에 있어 연방자원 기관을 돕기 위하여 민방위의 우선순위를 권고하며 군사지

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정한다.

B. 기타 연방기관 : 가용자원의 긴급수요 (urgent demands) 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방자원기관은 비상기획실에서 지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할당한다.

C. 주 및 지방자치단체 : 각 주는 관할하에 있는 제2차 자원과 연방정부가 사용을 허가한 제1차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며, 재보급 (resupply) 을 독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자원을 획득하는데 조력하기 위하여 당해 주에 파견된 연방기관의 대표들과 업무협조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획득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연방지시에 주요품목을 공평하고 효과있게 분배하기 위한 배급제도 (the rationing system) 를 운영 및 발전시킨다.

제 7 절 행정적 조치 (Administrative Measures)

여기에서 사용하는 행정적 조치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행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민방위계획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행정조치는 모든 비상대책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특히 민방위와 관련되는 부문만을 다루기로 한다.

제 1 항 비상지휘본부 (Emergency Operating Centers)

이 계획의 목적은 민방위를 포함한 비상활동을 지휘할 수 있는

보호된 본부를 제공함에 있다.

A. 비상기획실 : 비상기획실은 비상지휘본부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기관에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조정하는 책임을 진다.

B. 민방위청 : 민방위청은 연방비상지역본부 (the emergency Federal regional Centers) 에 관한 설계도안, 위치의 지정, 건축 및 필요한 행정지원을 담당하며, 그 외에도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비상지휘본부들을 설치하고 정비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본부의 설계 기준 및 장비지침을 정한다.

C. 기타 연방기관 : 기타 연방기관은 비상기획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방위청 및 일반조달본부 (C S A) 의 지원하에 자기 현지 비상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러한 시설을 지휘·감독한다.

D. 주 및 지방자치단체 :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자체의 비상지휘본부들을 설치하고, 여기에 근무할 요원에 대한 훈련활동을 지도한다.

제 2 장 민방위운영계획 (Civil Defense Operating Plans)

이 계획의 목적은 각급 기관이 비상시 민방위 활동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각종 계획·절차 및 조직을 준비함에 있다.

A. 민방위청 : 민방위청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국가 전역에 걸친 비상민방위본부조직에 관한 계획 및 절차를 정한다.

(2) 연방기관이 자기 자체의 민방위 운영절차를 위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는데 참여한다.

(3)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민방위 운영지침 및 기준을 정하고,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운영계획을 지원한다. 민방위청 지침은 자체의 운영계획을 발전시키는 이외에,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의 정책, 계획 및 체계에 따라 자기의 민방위 운영계획을 발전 및 개선하는데 조언하고 조력한다.

B. 기타 연방기관 : 모든 연방기관은 민방위 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절차를 시행하며, 자기의 일선기관의 계획을 지도하는 한편 이러한 계획을 비상계획실, 민방위청, 기타 연방기관 및 각 주의 계획과 조정할 책임을 진다.

C. 주 및 지방자치단체 :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책임을 진다.

(1) 비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관할하에 있는 제반 자원의 동원계획을 수립한다.

(2) 자기 자체의 민방위 운영계획을 작성한다.

(3) 전술한 제반계획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 3 항 시험 (tests) 및 연습 (exercises) .

이것은 운영능력을 평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민방위계획과 활동을 실제로 실행하는 계획이다.

A. 민방위청 : 민방위청은 전체적인 민방위시험 및 연습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도하며, 국방장관의 결정에 따라 전국적인 민방위 연습

의 지도 및 운영에 참여한다. 민방위청은 또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방기관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방위 연습에 참가하기 위한 가정(假定: assumptions), 지침(guidelines) 및 상황자료(situational material)를 제공한다.

(2) 군작전 연습과의 조정과 이러한 군연습에 참가하기 위하여 군당국과의 연락을 유지한다.

민방위청 지침은 전국적인 민방위 시험에 참여하고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기의 민방위계획, 활동 및 체제에 관한 적격성을 시험하는 데 있어 자문 및 지원하며 주민 방위연습을 감독한다.

B. 기타 연방기관: 민방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연방기관은 전국적인 민방위연습에 참가하며, 각기의 일선기관이 자체의 시험 및 연습을 행하는데 조언 및 조력한다.

C. 주 및 지방자치단체: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및 전국적 민방위 연습에 참가하는 이외에 자체의 민방위 능력을 시험 및 연습한다.

제 4 항 연방의 원조

이 계획의 목적은 다음에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원조를

제공함에 있다.

(1) 민방위요원, 행정지원, 훈련 및 비상지휘본부 등을 위하여 균등분배의 원칙하에 재정원조를 제공한다.

(2) 연방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동산 (Federal surplus personal property), 방사능 방위장비 및 대피소비축품을 기증한다.

(3) 훈련을 보조한다.

A. 민방위청 : 연방자금으로써 주 및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며, 자금사용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자금이 지시한 용도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는가의 여부를 판정한다.

민방위청은 또한 지방자치 단체가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위하여 필요한 민방위청 지청은 연방원조에 관한 신청을 사정 (査定) 및 처리하고 지역단위의 민방위 계획을 감독 및 운영한다.

B. 기타 연방기관 : 일반조달 본부는 민방위임무가 부여된 연방기관이 잉여 부동산 및 동산을 이용하는 데에 관한 계획과 절차를 만들고 보건교육복지성과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주의 기관을 통하여 잉여 동산을 수취기관에게 기증하는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C. 주 및 지방자치단체 :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예하기관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원조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고 연방자금을 신청하는 업무 이외에 연방의 자금 및 재산의 사용계획이

연방이 정한 필요조건 및 정책에 일치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제 5항 조사연구 및 발전

이 계획의 목적은 민방위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 물자 및 시설을 찾아내는데 있다.

조사연구의 제목으로서는 대피소·지원체제, 무기의 영향력, 방사성 낙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손해평가, 수리 및 계획 작성상의 필요조건 등이다.

A. 민방위청 : 민방위청은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에 계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외부계약자와 공동으로 기존(既存)하는 계획상의 소요를 타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

(2) 외부로부터 조사결과를 수립 및 분석하고 이를 민방위에 적용할 수 있는가 위 여부를 판정한다.

민방위청 지청은 조사연구 보고에 관한 열람실을 설치 및 유지하고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방위 계획 작성에 유용한 조사 결과를 안내한다.

B. 기타 연방기관 : 민방위의 책임 있는 모든 연방기관은 민방위청과 협조하여, 민방위계획을 수립 및 지도하며 각기 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민방위에 관한 계획에 관하여 타기관에 조언한다.

C. 주 및 지방자치단체 : 주 및 지방 자치단체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민방위청 또는 다른 기관이 제공한 적절한 조사 연구
결과를 채택 및 이용한다.

(2) 지역별 소요를 타개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연구를 행
한다.

(3) 조사연구를 요하는 일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민방위청에
조언하고 연방과 주의 공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협력한다.

Ⅱ . 미국의 민방위 제도

제 1 절 총 칙

제 2251 조 (의회의 정책선언) 의회 (the Congress) 는 오늘날과 같은 열핵시대 (熱核時代 : the energy nuclear age) 에 있어서 미합중국의 방위는 이법 (미합중국 주석법전 제 2251 조 ~ 제 2296 조) 에서 정한 제반 조치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 공격으로부터 미합중국의 인명 (人命)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체제 (the system of civil defense) 를 마련하는 한편 , 민방위의 책임을 연방정부와 각 주 및 그에하기관에 공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의회의 정책 및 뜻을 선언한다 . 연방정부는 필요한 지시 , 조정 및 지도를 하며 , 이법 (민방위법 : 1951 년 1 월 12 일 공포)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민방위청 (the Federal Civil Defense Administration) 을 운영하고 ,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 2252 조 (정의) 이 법에서 (a) 「 공격 (attack) 」 이라 함은 태업 (怠業 : Sabotage) 에 의하여 , 또는 폭탄 (bombs) , 포화 (砲火 : shellfire) , 원자력 , 세균 · 화생방 (化生放) 에 의한 수단이나 기타 무기에 의하여 , 미합중국 안에 있는 민간재산이나 주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 또는 상해 (傷害) 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합중국의 적 (敵) 에 의한 일련의 공격을 말한다 .

(b) 「 민방위 (Civil defense) 」 라 함은 (1) 미합중국에 대한

공격에 의하여 일반 주민이 받게 되거나 받게 될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고, (2) 어떠한 공격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처하며, (3) 그러한 공격에 의하여 파손된 중요 공공기관 및 시설의 긴급수리 또는 긴급복구 (the emergency restoration)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하는 모든 활동 및 조치를 말한다. 민방위라는 말은,

- (A) 예상공격 (anticipated attack)에 대비하여 취하는 제반 조치 (이에는 적당한 조직의 편성, 운영계획 및 지원협정의 수립, 요원의 모집 및 훈련, 조사연구의 지도, 필요한 물자와 보급품의 조달 및 비축, 적절한 경보체계 (warning systems)의 준비, 대피소, 대피지역, 통제소의 건설 또는 준비,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소개 (疎開)등을 포함한다)
 - (B) 공격중에 취하는 제반조치 (이에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군사당국 또는 민사당국이 규정하는 수세적 방위규정 (passive defense regulations)의 시행, 요원의 대피지역으로서의 소개, 교통 및 혼잡의 통제, 등화관계 및 민간 통신시설의 통제 및 사용등을 포함한다)
 - (C) 공격후에 취하는 제반조치 (이에는 소화작업)구조활동, 긴급의료 및 위생봉사,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특수무기의 감시, 불발 (不發) 폭탄의 탐지, 파편 (破片)의 제거, 긴급구제조치, 파손된 주요 시설의 긴급수리 또는 복구 작업등을 포함한다)
- (c) "편제장비 (Organizational equipment)"라 함은 청장

(the Administrator) 이 (1) 개인 장비와 구별하여 민방위 기관에 필요하고, (2) 유형(類型)이나 성격으로 보아 소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그러나 편제 장비라는 말은 민방위 계획의 필요에 의하여 비상이 많은 수량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통상적(通常的)으로 당해 지방의 각종 재해(災害)시에 이용하는 장비까지도 포함한다고는 해석하지 아니한다.

(d) 「물자(materials)」라는 말은 원료, 보급품, 의약품, 장비, 부분품 및 민방위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지식 및 기술적 방법을 포함한다.

(e) 「시설(facilities)」이라는 말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대피소, 공공건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

(f) 「미합중국(United States)」 또는 「주(States)」라는 말은 각 주, 「컬럼비아」특별지구(the District of Columbia), 준주(準州: the Territories) 및 미합중국의 속령(屬領: the Possessions)을 포함한다.

(g) 「인접국가(neighboring countries)」라는 말은 「캐나다」(Canada) 및 「멕시코」(Mexico)를 포함한다.

제 2253 조(행정상의 권한) 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에 계기하는 권한을 가진다.

(a) 공무원법에 따라 미합중국(컬럼비아)특별지구 포함 또는 다

른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민간인요원 (Civilian Personnel) 을 채용하고 , 1949 년 직위 분류법 (the Classification Act) 에 따라 이러한 요원의 보수 (the Compensation) 를 결정하는 권한

(b)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100 인 이하의 시간제 근무 또는 임시직의 고문관 요원 (이에는 25 인 이하의 영국 및 「캐나다」 자치령의 국민을 포함한다) 을 채용하는 권한 , 미합중국에 소속된 다른 직장 또는 직위를 보유하고 이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 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중 이러한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며 , 기타의 자문위원회 위원 및 시간제근무 또는 임시직 고문관 요원은 무보수로 근무하거나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 (日當) \$ 50 이하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c) 연방기관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동의를 얻어 주 및 지방자치 기관의 공공시설을 인수 및 이용하는 권한 , 필요한 지방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권한 , 수시로 요구되는 개인 또는 기관에 의한 무보수의 자발적 봉사를 이용하는 권한 , 이러한 개인 및 기관을 통합하여 미합중국 민방위대 (the United States Civil Defense Corps) 를 설치 및 조직하는 권한을 각 주에 위임하는 권한 , 다만 , 이러한 민방위대 요원은 미합중국의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d) 법률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 보급품 , 장비 및 시설의 기증

을 받으며 이러한 기증물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 또는 분배하는 권한

(e) 연방기관이 지출한 제반비용 또는 직원의 보수 및 이 법에 의한 물자 및 시설의 이용 또는 소비에 대한 경비를 자금의 가용(可用) 범위 안에서 변상하여 주는 권한

(f) 관영 인쇄소, 영업적 또는 사설 인쇄업소나 제본소(製本所)로부터 정부지정 인쇄업자(the Public Printer)의 주문 또는 1895년 1월 12일 승인된 인쇄업법(the Printing Act) 제 12조에 따라 발하여진 증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 제본 및 백지장부용 기계를 구입하는 권한

(g)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 및 규칙을 제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그가 지명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또는 이러한 직원의 조력을 받아 그에게 부여된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권한

(h) 주 또는 기타인에 대하여 상당한 통고 및 발언의 기회를 제공한후 승인된 민방위 계획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규칙 및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된 조건에 따라 자금이 지출되지 아니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러한 주 또는 기타인에게 청장이 더 이상 그러한 잘못이 없을 것으로 인정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지출예산(또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상에 잘못이 있는 승인된 계획에 대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자금)으로 부터 이 주 또는 기타인에 대한 지출을 일체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권한, 청

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출상의 오류가 시정되었음을 인정할 때 까지 이러한 주 또는 기타인에 대한 예산 배정을 보류하거나 실제상 계획에 일치하는 운영계획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이 항에서 말하는 기타인은 주의 예하기관 또는 단체, 이 법 제 201 조 (8)항 (미합중국 주석법전 제 50 편 부록 제 2281 조 (6)항)에 의하여 설치된 주공동민방위기관 또는 개인, 법인, 협회, 주 및 그 예하기관의 보조기구를 포함한 모든 성격의 기타 단체를 말한다.

제 2254 조 (고용제한의 면제) 이 법 제 401 조 (b)항 및 (c)항 (미합중국 주석법전 제 50 편 부록 - 이하 제 50 편 부록이라 한다 - 제 2253 조 (b)항 및 (c)항에서 부여한 권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행사 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또한 전술한 권한에 의하여 채용하거나 그의 봉사를 이용하는 자를 제 18 편 제 281 조, 제 283 조, 제 284 조, 제 434 조 및 제 1914 조와 개정법령 (the Revised Statutes) 제 190 조 (제 5 편 제 99 조)의 시행으로부터 면제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255 조 (보안규칙 : 선서) (a) 청장은 정보 및 재산에 대한 접근제한 규정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안수칙 및 안전 규정을 정한다.

민방위청 직원은 누구든지 연방수사국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또는 다른 정부 수사기관의 조사 기록철

내에 당해 직원의 보안에 대한 성실성이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기록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그러한 기록이 발견된 경우에는, 연방수사국이 당해 직원에 관하여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조사보고를 청장이 서면으로 평가하는 때까지, 이 조에 의하여 접근이 제한된 정보 또는 재산에 접근하지 못한다.

민방위청 직원은 누구든지 공무원 임용위원회 (the Civil Service Commission)가 당해 직원에 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청장이 이에 관한 보고를 서면으로 평가할 때까지 청장이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견지에서 극히 중요하다고 판정하는 직위를 점유하지 못한다.

공무원 임용위원회에 의한 조사의 결과 중요직위의 임용후보자가 보안에 대한 성실성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사실이 지적되거나, 청장이 다른 이유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청장에게 회부하여 그의 서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청장은 이 사건을 연방 수사국에 위탁하여 철저히 조사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연방 수사국은 당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한다.

(b) 이 법 제 401조 (b)항 (이 부록 제 2253조 (b)항)에서 명시한 영국 및 「캐나다」자치령의 국민을 제외하고, 연방민방위청의 모든 직원은 공무원 임용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충성선서 (忠誠宣誓 the loyalty oath : 미국에서 공무원 또는 일정한 직에 취임

할 때 행하여지는 합중국 또는 주에 대한 충성의 선서) 또는 취임선서 (the appointment affidavits)를 행한다.

연방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민방위를 위하여 주 또는 지방 기관에 근무 하도록 임명된 자는 취임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권한이 부여된 자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서면으로 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 000는, 모든 국내외의 적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헌법을 지지 (支持) 및 수호하고, 국헌을 충실히 준수하여, 의중유보 (意中留保 : mental reservation) 또는 기피의 의도 없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의무를 지고, 내가 지금부터 맡게 되는 임무를 최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폭력에 의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어떠한 조직이나 집단을 옹호하거나 이러한 조직이나 집단의 일원으로 가입하지 아니 하였으며, 민방위 요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중 폭력에 의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어떠한 조직이나 집단을 옹호 하거나 이의 일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선서 합니다.”

주 민방위처장 (the director of civil defense of state) 및 그로부터 서면으로 지명받은 민방위장교는 처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당해 주 안에서 위와 같은 선서를 받을 수 있다.

허위선서를 한 자는 제 18 편 제 1621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처벌된다.

제 2256 조 (기능 , 재산 및 인원의 이관) 1950 년 12 월 1 일 집행명령 제 10186 호에 의하여 설치된 연방 민방위청의 기능 , 재산 및 인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연방민방위청에 이관되며 , 대통령은 국가 안전보장 자원위원회 (the National Security Resources Board) 의 기능 , 재산 및 인원중에서 이 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민방위 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연방민방위청에 이관시킬 수 있다 .

제 2257 조 (기존시설의 이용) 청장은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1) 정부의 각 부처와 협조하고 , (2) 연방정부의 기존시설 및 자원과 주 및 그 예하기관의 시설과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며 , (3) 다른 연방기관의 활동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활동은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만 , 청장이 대통령의 서면승인을 얻어 , 이러한 중복되는 활동이 이 법의 목적을 완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2258 조 (의회에 대한 보고) 청장은 매년 이 법에 따라 연방민방위청의 지출 , 기부금 , 사업 및 업적에 관한 보고서를 건의서 (recommendations) 와 함께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259 조 (이 부록 제 2251 조 - 제 3297 조의 적용범위) 이 법의 규정 (이 부록 제 2251 조 - 제 2297 조) 은 미합중국 , 주 , 준주 , 속령 및 「 컬럼비아 」 특별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260 조 (자금의 총당 및 이관)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정부예산에 계상(計上)한다.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예산국 (the Bureau of the Budget) 의 승인을 얻어 이 법의 이행을 조력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할당 또는 이관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할당 또는 이관은 매 회 할당 또는 이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법 제 201 조 (e)항 (이 부록 제 2281 조 (e)항)에 의하여 생도(生徒)의 여비 및 일급(日給)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 30,000 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법 제 201 조 (h)항 (이 부록 제 2281 조 (h)항: 방사능기구의 기증용)의 네번째 단서(但書)에 의한 지출금은 연간 \$ 35,000,000 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이 법 제 201 조 (i)항 (이 부록 제 2281 조(i)항)에 의하여 각 주에 배정하는 금액은 연간 \$ 2,000,000 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법 제 205 조 (이 부록 제 2286 조)에 의하여 인건비 및 행정비로써 각 주에 배정하는 금액은 연간 \$ 35,000,000 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2261 조 (재건 금융조합으로 부터의 대부: 재건 금융조합의 대부권한 증가) 이 법의 목적을 이행하는데 조력하기 위하여, 청장은 재건 금융조합 (the Reconstruction Finance Cooperat-

ion)에 대하여 민방위계획 (the Civil Defense Program)에 따라 민방위 목적을 위한 재정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증권을 구입하거나 대부(이것에 대한 참여 및 보증도 포함)를 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증명을 하고 재건금융조합은 이러한 청장의 증명에 입각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한과 조합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러한 증권을 구입하고 대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 구입, 참여 및 보증을 위하여 일시(一時)에 방출하는 총액은 \$ 250,000,000 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재건금융 조합이 행할 수 있는 투자, 대부, 구매 및 참여의 총액은 그만큼 증가된다.

제 2262 조 (1946 년 원자력법의 유효성) 이 법은 1946 년 원자력법 (the Atomic Energy Act) 의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263 조 (간첩행위, 태업행위 또는 파괴행위에 관한 수사) 이 법은 연방수사국의 직원이 아닌 자에 의한 간첩, 태업 또는 파괴행위의 수사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264 조 ("민방위 조달기금" 의 설치, 용도 및 청구) 운영자본 (the Working Capital) \$ 5,000,000 로서 "민방위 조달기금" (the Civil defense Procurement fund) 을 설치하며 이 기금은 청장이 만일 이것이 없으면, 이 부록 제 2281 조 (1)항에 의하여 균등원칙에 따라 각 주에 자금을 배정하여야 하는 물자

또는 편제장비를 조달하는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 기금은 전술한 물자 또는 장비의 구매자금으로 충당되며, 따라서 (1) 사용할 수 있는 지출예산 및 (2) 각 주에서 출자한 기금으로 부터 균등한 금액으로 선불 또는 상환식으로 지불한다. 이러한 물자 또는 편제장비는 각 주에 인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인도되는 물자 또는 편제장비의 구매 대금중 연방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이와 동액의 자금배정으로 대신한다.

제 2 절 행정 기관

제 2271 조 (연방민방위청의 설치 및 청장의 임명) (a) 정부의 집행부서 내에 연방민방위청 (이하 「민방위청」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청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자문 및 동의를 얻어 민간인 (Civilian life) 중에서 임명 한다.

(b) 민방위청에는 대통령이 상원의 자문 및 동의를 얻어 민간인 중에서 임명하는 부청장 (Deputy Administrator)을 둔다.

부청장은 청장이 명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청장 유고시 (有故時)에는 청장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 (代行) 한다.

(c) 청장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하에 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2272 조 (민방위자문 회의의 설치, 임무, 구성, 임기, 집회, 특별자문 위원회 및 보수) (a) 민방위에 관한 일반정책 또는 기본정책 사항에 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협의하는 민방위 자문

회의 (the Civil Defense Advisory Council : 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한다.

자문회의는 청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2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청장이 그 의장이 된다. 12인의 위원중 3인은 주 정부의 대표로 하며, 3인은 주 예하기관의 대표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현재 정규적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미합중국 공무원이 아닌 미합중국의 시민으로서 공익 (公益) 분야에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각 주 및 그 예하기관의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후보자명단은 다음에 제기하는 기관에 위촉하여 작성한다.

주 정부회의 (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주 치사협의회 (The Governors Conference)

미국자치시협회 (美国自治市協會 : The American Municipal Association)

미합중국시장협의회 (美合衆国市長協議會 :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of Mayors)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 및 그 예하기관의 대표는 전술한 기관이 작성한 명단에 의하여 3년의 임기로 선발된다. 다만, (1) 전임자 (前任者)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임명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 재임하며, (2) 1951년 1월 12일 이후에 처음으로 취임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대통령이 임명시에 지정하는 바에 따라, 4인은 1년 말에, 4인은

2년 말에 그리고 4인은 3년 말에 각각 종료된다. 자문회의는 적어도 년 1회 이상 집회하며, 청장이 사업계획상 자문회의의 조언(助言)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집회한다.

(b)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c) 청장을 제외하고, 자문회의 및 기타 자문위원회의의 위원은 이법 제 401조 (b)항(이 부록 제 2253조 (b)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 3 절 권 한 및 임무

제 2281조 (청장의 직무) 청장은 전술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민방위계획의 작성) 국가안전보장위원회가 작성한 제반 계획중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미합중국의 민방위에 관한 국가 계획을 작성하고, 이러한 국가 계획을 후원 및 지휘하며, 대통령, 의회 및 각 주에 대하여 미합중국내의 민방위 상황을 언제든지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각 주의 민방위 계획 및 활동에 관한 보고를 요청 한다.

(b) (민방위책임의 위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범위의 민방위 책임을 연방정부의 관계부처에 위임하고, 연방정부의 관계부처간의 민방위 활동과 각 주 및 인접국가의 민방위 활동을

검토 및 조정한다.

(c) (민방위 연락망의 편성 및 경보의 전달) 민방위상 필요한 연락 수단과 적의 공격을 주민에게 알리는 경보의 전달을 위하여 적절한 규정을 제정한다.

(d) (보호수단, 대피소 및 장비에 개발) 공격의 결과에 대한 최선의 사후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등을 포함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수단을 연구 및 개발하며, 대피소의 설계 및 건축용 자재를 개발하고 장비 또는 시설을 발전시키는 한편, 이러한 장비나 시설을 민방위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표준화 시킨다.

(e) (훈련계획, 특수 전문학교 및 기술훈련소의 설치) 계약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민방위 요원 및 민방위 기구내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민방위교육의 실시계획을 지도 또는 준비하고 각급 학교를 지도 또는 운영하며 1949년 여비법(旅費法: the Travel Expenses Act) 및 출장규정(the Standardized Government Travel Regulations)에 의하여 피훈련자에게 여비 및 일당(日當)을 지급하거나, 청장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피훈련자 및 교관에게 생활비 및 숙소를 제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관요원 및 교육보조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첫째, 이 항에 의하여 인가된 여비 및 일당의 지급에 관하여 청장이 정하는 규정내에는 이러한 지불금은 이에 관한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 시켜야 하며,

둘째, 이 항에 의하여 인가된 피훈련자의 여비 및 일당을 지급하는 권한은 1976년 6월 30일에 끝나고,

셋째, 이 항의 권한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설은 국립 민방위 전문학교 (the national civil defense college) 1개 및 민방위 기술훈련소 (the Civil defense technical training schools) 3개 이내로 하며,

넷째, 청장은 이 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에 의하여 특히 허가된 경우가 아닌 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f) (소식의 전파) 민방위에 관한 소식을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일반에게 널리 전파한다.

(g) (주민방위사업의 장려) 각 주가 서로 협상을 통하여 각 주간 민방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력 및 장려화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러한 각 주간의 협약의 통일성 및 국가 민방위계획과의 일치성을 기하는데 협조 하기 위하여 제안된 협약의 내용 및 조건을 검토하며, 이러한 협약에 의한 제반 활동을 지원 및 조정한다.

그리고 공격의 위협을 받거나 현재 공격을 받고 있는 주 또는 그 예하기관 자체 만으로서는 도저히 타개 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어떠한 공격이 있는 경우에 각 주가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민방위법의 제정을 지원 및

촉진한다.

다만, 민방위협약은 체결 즉시 상·하원에 각각 제출하고 제출 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가 전술한 기간내에 제출된 협약에 대한 부결안을 통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항은 의회가 협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h) (필요한 방위물자 및 시설의 취득) 수용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민방위를 위한 물자 및 시설은 이에 대한 직접 점유권과 함께 조달, 건축, 임대차, 운반, 비축, 보관, 개수 또는 분배한다.

다만, 첫째, 구매, 증여 또는 기타 양도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은 개정법령 제 355 조에 의하여 법무장관으로부터 자격의 인정을 받기 전에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징용 및 개수할 수 있으며, 둘째, 청장은 이 항에 의하여 취득한 모든 재산에 관하여 적어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셋째, 청장은 1976년 6월 30일까지 이 항에 의하여 방사능에 관한 각종 기구 및 탐지기, 방독면, 독가스탐지기를 조달 및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기구들을 청장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각 주에 대여 또는 양도한다.

(i) (각 주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각 주에 대하여 청장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민방위의 목적을

위한 물자 및 시설의 조달, 건설, 임대차 또는 개수를 포함한 재정적 지원을 행한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청장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은 물자 또는 시설의 구매방법, 수량, 품질 또는 명세와 이러한 물자 또는 시설의 동질성, 유용성 및 온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요인 주의사항 또는 취급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첫째, 토지구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하지 못하며, 둘째, 이 항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1960년 6월 30일 이전에 각 주에 대하여 승인될 수 있었거나 승인되어 지출한 소급적 재정지원은 재가 및 확인되고, 셋째, 1964년 6월 30일 이후에도 주 또는 지방 민방위요원의 개인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하지 못하며,

넷째, 편제장비의 구입비로 청장이 각 주에 배정하는 금액은 각 주가 당해 주의 법률에 일치한다고 판정하는 원천에서 조달하는 금액과 동액으로 하고,

다섯째, 대피소 및 기타 보호시설을 위하여 각 주에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은 매회계년도마다 이러한 시설을 위하여 청장에게 배정되거나 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수령하여, 자금 배정 결정일 현재 전국의 주요 목표지역의 총도시 인구에 대한 각 주의 주요 목표지역(이러한 지역은 국방장관의 자문을 거쳐 청장이 결정한다)의 도시인구의 비례에 따라 각 주에 배분 함으로써 결정한다. 그리고 다섯째 각 주는 당해주의 법률에 일치

한다는 원칙에서 청장이 이러한 대피소 및 보호시설을 각 주에
배정하는 금액과 동액의 예산을 조달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내
에 이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장은 이 자금을 전술한
방법에 따라 다른 주에 재 배정할 수 있고,

일곱째, 주 또는 그 에하기관이 기부하는 토지의 값은 당해주
의 분담금 계산을 공제하며,

여덟째, 이 항에 의하여 각 주에 배정되는 자금은 청장이 승
인한 주 민방위계획에 따라 이 항에서 정하는 목적을 이행하는
데만 지출하여야 한다.

아홉째, 청장은 (1) 전부 또는 일부를 민방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설 및 (2) 완공되면 그러한 비용을 회수 또는
변제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조
달, 건설 또는 임차를 위한 경비에 대하여는 자금 배정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이 항의 전술한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장이 민방위
의 주된 목적을 위하여는 불필요하게 설계되거나 건축된 시설에
직접 합체되는 것으로 판정되지만,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그러
한 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건설, 재건 또는
확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하여 당해주에 자금을 배정할 수 있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열째, 청장은 이 항에 의하여 행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 사항
에 관하여 적어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열한번째, 계약자 또는 하청인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청장이 제공하는 연방기금의 후원하에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고용된 노동자 및 기계공에 대하여는 노동장관이 「데이비스-베이컨」 법 (the Davis-Bacon Act) 에 따라 결정하는 당해지방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임금 수준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법정 근무일에 8시간 또는 주간당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하여는 주간당 총노동시간에 대한 기본 보수액의 1.2분의1배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장은 먼저 당해 건설공사에 있어서 이러한 근로기준이 유지되리라는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는한 연방기금을 배정하지 못한다.

노동장관은 이 단서에서 명시한 근로기준에 관하여 1950년 개편계획 (the Reorganization Plan) 제 14호 및 1934년 6월 13일 법 제2조에 규정된 권한 및 기능을 가진다.

(j) (잉여 재산의 매각 및 처분) 1941년 연방재산 및 행정관리법 (the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 에서 잉여 재산에 관하여 규정한 것과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자 및 시설을 매각 또는 처분하며, 이러한 물자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처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기타 수입금 (the miscellaneous) 으로서 국고에 귀속된다.

제 2282조 (" 국가방위 " 또는 " 방위 " 의 정의) 1950년 방위생산법 (the Defense Production Act) 제 2편에서 사용된 " 국가

방위 (national defense) 또는 방위 (defense) 라는 말은 이 법에서 정의하는 민방위 (Civil defense) 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 2283 조 (각 주와 인접 국가간의 상호지원 협약) 청장은 각 주가 국무성을 통하여 인접국가와 상호 민방위지원 (mutual civil defense aid) 을 협의하는데 가능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2284 조 (신분표지 : 제조 , 소지 또는 패용 : 처벌) 청장은 청장이 제정하는 규정에 따라 민방위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이러한 자가 소지 또는 패용할 수 있는 표지 (insignia) , 완장 및 기타 인식표 (이에는 미합중국에 부여되고 1941년 5월 20일 부 집행명령 제 8757 호에 의하여 창설된 민방위처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 (Letters Patent) 에 의한 전의 도안도 포함한다) 를 규정할 수 있다.

규정에 저촉되는 신분표지 , 완장 또는 기타 인식표의 제조 , 소지 또는 패용은 불법이며 이러한 자는 \$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제 2285 조 (부동산 거래 및 군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a) 민방위 동원처장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Civil and Defense Mobilization)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는 제안된 거래에 관한 사실을 상원 및 하원의 군사위원회 (the Committees on Armed Services) 에 보고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당처에 의한 또는 당처의 사용을 위한 다음에 제기하는 거래를 행하지 못한다.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으로서, 그 전적 가액이 \$ 50,000 인 경우

(2) 미합중국에 대한 부동산의 임대료써, 연간 전적임대료가 \$ 50,000 이상인 경우

(3) 다른 연방기관 또는 다른 준관계성 또는 주에 대한 미합중국 소유 부동산의 양도료써, 그 전적가액이 \$ 50,000 이상인 경우

(4) 미합중국이 소유한 잉여 부동산의 처분기관에 대한 보고로써, 그 전적 가액이 \$ 50,000 이상인 경우

전술한 (1) 또는 (2)에 의한 거래가 어떤 계획의 일부인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에는 취득 또는 임대차 대상토지의 총 가격에 관한 전적서와 함께 당해 계획 전반에 관한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b) (의회군사위원회에 대한 분기별 보고) 민방위 동원처장은

(a)항에 제기한 거래(이에는 전적가액이 \$ 5,000 이상 \$ 50,000 이하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상원 및 하원의 군사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c) 이 조는 미합중국의 각 주, 「컬럼비아」 특별지구 및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하천 및 항구계획 또는 홍수방지계획을 부동산이나 농업적

또는 방목적 (放目的) 목적을 위한 정부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 차용증서 (the lease)를 포함한 양도증서 (the instrument of Conveyance)내에 이조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었다든가, 양도증서가 이 조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기술은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 2286 조 (각 주의 인건비 및 행정비를 위한 재정지원) 청장은 이 법의 목적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인된 주민 방위계획 (이 계획은 청장이 승인한 국가민방위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에 입각하여, 필요 불가결한 주 및 지방민방위경비 (인건비 및 행정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각 주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각 주에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은 전술한 총 경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a) 이 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계획에는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주 법률에 따라 이 계획은 당해 주의 모든 예하기관에서 유효하며, 이러한 예하기관에 위임되고, 주의 단독 기관에 의하여 관리 또는 감독된다는 사항

(2) 당해 주는 주법률에 일치한다고 인정하는 원천에서 연방정부에 이 조에 의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과 동액의 보조금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청장이 승인한 기준에 따라 주 및 지방 민방위 운영계획

을 발전시키는 사항

- (4) 전시간 근무하는 민방위청장 또는 부청장의 임용과 실적본위에 입각한 직원 임용 기준의 설정 및 유지에 관한 방법(청장의 관할사항이 아닌 즉 이러한 임용방법에 의하여 고용된 자의 선발, 임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을 포함하여 청장이 당해 계획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 및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리법에 관한 사항
 - (5) 당해 주는 청장이 요구하는 양식 및 내용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사항
 - (6) 청장 및 감사원장(the Comperoller General)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은 자가 이 조의 목적을 위한 회계감사(the audits)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부, 기록 서류 및 분석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 (b) 청장은 필요하고 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조건을 설정한다.
- (c) 이 조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이 법 제 201 조 (g)항(이 부록 제 2281 조 (g)항 및 제 401 조 (h)항(이 부록 제 2253 조 (h)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d) 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그가 제정하는 규칙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 지출예산총액에 따라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각 주에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을 할당하여야 하며 각 주에 대한 자금 할당규정은
- (1) 국가 전역의 중요성

- (2) 타 주와 비교하여 당해 주의 민방위 대책의 발전 상태
- (3) 인구 및 청장이 정하는 기타 요소를 충분히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은 어느 주가 사용하지 아니한 할당금의 잔여액을 당해 주가 제출한 승인할 수 있는 계획에 재 할당할 수 있으며 이 조에 의하여 주 및 그 예하기관에 지급된 금액은 이 조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야만 지출하여야 한다.

- (e) 청장이 이 조에 의한 자금 할당을 각 주에 통보한 후 60일 이내에 이 조에서 요구하는 승인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주가 있는 경우에는 청장은 이러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민방위 능력의 상당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주에 재 배당할 수 있다.

(f) 청장은 매년 이 조에 의하여 행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g)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 (State)"라는 말은 이 법 제 201 조 (g)항 (이 부록 제 2281 조 (g)항)에 의하여 설치된 주공동 민방위기관 (interstate civil defense authorities)을 포함한다.

(h) 이 조의 규정은 1976년 6월 30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2287 조 (방사성 낙진으로 부터의 보호) (a) 이 법의 시행일 (1966년 9월 12일) 이후에는, 연간 군사시설 건축허가법 (Ann-

ual Military Construction authorization Acts)에 의하여 허가된 모든 건축물은 이 건축물을 허가한 목적이나 건축물의 효율성(効率性)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방사성 낙진 (the fallout)으로 부터의 보호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하여 민방위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건이 국방장관 또는 그의 지정인이 정하는 규칙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국방장관은 건축설계 및 계획을 작성하고, 이 법에 의한 또는 이후에 이 조의 목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되는 건축에 있어서 기술적 설계 및 건축법의 이용을 위한 적절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개별 계획에 지출되는 비용은 당해 계획을 위하여 승인된 지출금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지출비용은 2개 이상의 시설 또는 3개 이상의 계획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방사성 낙진의 대피장소를 더 넓게 만들거나 이러한 시설 또는 계획에서 최소한의 방사성 낙진 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균분하여 1개의 시설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제 4 절 긴급 권한

제 2291 조 (민방위비상사태 기간중에만 유효한 이 부록 제 2291 조 내지 제 2296 조 , 비상사태의 선포 및 종료) 이 편 의 규정 (이 부록 제 2291 조 - 제 2296 조) 은 민방위 비상사태 (the State of Civil defense emergency : 이하 이 편에서는 「비상사태」라 한다) 가 존재하는 기간중에만 시행된다.

이러한 비상사태의 존재는 대통령 또는 의회가 미합중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고 , 따라서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이 편 의 규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 또는 의회의 상, 하 양원에서 채택된 동일 결의 (the Concurrent resolution) 에 의하여 선포된다.

이러한 비상사태는 또한 대통령이 미합중국내의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공격이 개시 되었거나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에 대하여 이 편 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데에도 이 특정 지역내에 존재한다.

비상사태는 대통령의 해제선포 또는 의회의 비상사태 해제에 관한 동일 결의안 통과에 의하여 종료 된다.

제 2292 조 (연방정부기관의 이용) 대통령은 , 민방위비상사태의 기간중 기증 , 보상 또는 반환의 조건으로 또한 민방위의 목적만을 위하여 국방성의 군사적 필요를 고려한 다음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대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방기관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

- (a) 각 주를 지원하기 위한 인원, 물자 및 시설을 청장에게 제공
- (b) 건축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긴급 대피소를 제공
- (c) 인명 및 재산의 보존, 파손물의 제거 및 공격으로 파손 또는 파괴된 미합중국 또는 그 예하기관의 통신시설, 병원, 공익시설, 운수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긴급수리 및 임시대용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지 또는 사유지상에 있는 기타 보호용 건축물의 제공

제 2293 조 (청장의 비상권한) 청장은 민방위 비상사태의 기간중 다음에 제기하는 권한을 가진다.

(2) 1932년 6월 30일 법률 (제 40 편 제 278 조(a), 개정법령 제 3709 조 (제 41 편 제 5 조) 및 제 3734 조 (제 40 편 제 259 조 및 제 267 조) , 1949년 연방 재산관리법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기존법률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 법 제 201 조(b)항의 (이 부록 제 2281 조(b) 항) 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b) 청장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리고 기존 법률의 제한에 불구하고 민방위 목적을 위하여 물자를 매각, 채용, 대여,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물자의 매각등 처분이나 서비스로 부터 얻게 되는 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배정된 지출 예산의 대변에 예치하고, 이러한 지출 예산의 목적을 위한 경비에 이용하여야 한다.

(c)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이 법 제 302 조 (이 부록 제 2292 조) 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여러 부처간의 규제활동

을 조정 및 지시할 수 있다.

(d) 각 주 및 그 예하기관에 대하여, 당해 주 외에서 민방위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원에 대한 보수, 수송비 및 생계유지비를 변상하고 청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송비를 포함하여 당해 주 외에서 이용되거나 소비된 주 정부 또는 그 예하기관의 물자에 대한 공정하고 상당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사용되는 "고용원 (employees)"이란 받은 주정부 또는 그 예하기관의 명령이나 통제를 받은 전 시간제 또는 시간제 근무자, 지원자 및 보조자등 모든 민방위 근무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원은 변상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써 미합중국의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e) 어떠한 공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곤궁한 사태하에 있는 민간인에 대한 응급구제 또는 구조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f) 공무원법에 구애됨이 없이 임시직원을 고용하고 어떠한 공격이나 예상되는 공격에 대한 민방위의 필요를 타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채무를 미합중국을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다.

청장은 민방위비상사태 기간중 분기별로 이 조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94 조 (연방기관 또는 직원에 의하여 발생된 재산상의 손해, 사망 또는 인체상의 상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면제) 연방정부는 연방기관 또는 공무원이 민방위 비상사태기간중 이 편의 규정을

이 행함에 있어, 부여된 기능 또는 임무의 행사 또는 수행으로 인하여 또는 이러한 기능이나 임무의 불행사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 사망 또는 인체상의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조는 연방공무원보상법(제5편 제751조-제756조) 제757조-제791조 및 제793조) 또는 연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또는 보상금의 수취권(受取權)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295조(행정절차법의 유보) 민방위 비상사태기간중 이 법에 의하여 행사되는 제반기능 및 임무는 행정 절차법(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제3조(제5편 제1002조)의 필요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행정절차법(제5편 제1001조-제1011조)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2296조(비정부재산의 취득에 대한 보상, 소유자에 대한 재산반환 및 잉여재산의 처분) (a) 1949년 연방재산관리법의 규정 및 이 법 제201조 (b)항에 따라, 또는 법률상의 매수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장은 어떠한 재산(연방정부 각 기관의 재산이 아님)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보상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용도를 즉시 재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裁定)은 미합중국헌법 제5보칙에 있는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시를 기준하여 행하여야

한다. 만일, 청장이 정당한 보상으로 재정한 금액을 수취할 자격이 있는 자가 이러한 보상금은 당해 재산 또는 그 재산의 사용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으로써 받아 들이려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자에 대하여는 전술한 보상금의 75%를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법원 (the Court of Claims) 또는 소송 금액이 \$ 10,000 을 초과 하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미합중국의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통하여 미합중국으로 부터 추가로 변상받는다.

(b) 청장을 그가 취득한 부동산이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공정한 대가를 청장에게 지불하고 이를 반환받고자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재산은 그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청장 및 원소유자가 이러한 재산의 공정한 가격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인의 평가인이 가격을 결정하며 이 평가인은 청장 및 소유자가 각각 1인씩 선임하고, 1인은 이들 2인의 평가인이 선임한다.

이러한 공정한 가격 결정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정부 및 원소유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c)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취득한 개인 재산이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청장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에 따라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처분되는

재산의 전소유자에게

- (1) 청장이 그 당시의 공정한 가격이라고 판정하는 값으로 또는
- (2) 이 재산을 전술한 가격 이하로 처분(경매의 경우는 제외)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가격으로 이 재산을 재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재취득의 기회는 공정 가격이 \$ 1,000 이하의 대체물 (the fungibles) 의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Ⅲ. 스위스 연방의 민방위 개요

제 1 절 개 요

1. 국민의 정신적 자세

평화와 자유는 그것이 한번 확보되었다고 하여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는 어떠한 제국주의적 야심도 가지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영토의 정복은 꿈조차 꾸지 아니하고, 모름지기 스위스의 독립을 유지하고 스스로 힘써 이루어 놓은 제도를 지켜가기만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는 것이 스위스의 국가당국과 국민자신의 의무이며, 이에는 군사적 방위뿐만 아니라 정신적 방위 (La defense spirituelle)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민 각자가 전쟁의 충격 (le choc d'une guerre)에 대처할 만한의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없이 불의의 재난에 부딪치게 되면 비극적인 파국(破局)만을 초래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전쟁은 없다" (nous n'aurons jamais la guerre cheznous)고 단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재난(災難)을 자초(自招)하는 경솔한 짓이다.

앞으로는 스위스 국민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날 세계는 평화와 전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여기 저기에서 새로운(戰火)가 불타오르고, 지구를 2분하는 「이데올로기」의 조류(les couraes idéologiques)는 국지 전쟁을 전면전쟁 (le conflie generalise)으로 바꾸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스위스의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나라도 무장을 해제하기는 커녕 군사비를 증대시키는 실정이며, 이 지상에는 몸서리 쳐지는 핵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평화로운 생활을 그 수중(手中)에 쥐고 있는 강대국이 이성적(理性的)이고 현명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희망을 확실한 사실로 보는 것은 상궤(常軌)를 벗어난 착오(錯誤) (l'aberraeion)이며, 따라서 최악의 사태 (les pires eveneualites)에 대비할 각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곳에서 행하여지는 전쟁이라도 스위스의 경제에 대하여 중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인 이해는 정치적 이해 관계와 마찬가지로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날 일은 모두 스위스에도 관련이 있게 된다. 스위스의 무역수지(貿易收支)를 보면 스위스가 얼마만큼 세계경제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는바, 식료품의 상당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 특히 동력용 연료(les carburantes)의 전부를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한편 스위스의 수출이 중지되면 스위스의 노동자는 대부분 실업(失業)상태에 빠지게 된다.

스위스 국민은 또한 어느 국가를 점령하는 형태도 가지각색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핵과피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les grandes puissances)은 전투도 없이 약소국(les petits pays)을 손에 넣으려고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핵전쟁에 의하여 사막(沙漠)처럼 황폐하여 버린 나라를 손에 넣는 것보다는 물자

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 나라를 취(取)하는 것이 득책(得策)이라는 계산아래, 전쟁은 심리전의 형태(les formes psychologiques)를 택하게 되고 따라서 유혹에서 협박에 이르는 각종의 압력을 병행하여 끝내는 국민의 저항심(la volonee de resistance d'un peuple)을 깨트려 버리려고 한다.

오늘날 선전의 기술적 수단이 고도로 발달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타국에 대한 침투가 가능하며, 스위스도 과거 수차에 걸쳐 이러한 수단에 넘어가 나라를 짓밟힌 기억이 남아있다.

1939 년에서 1945 년에 걸친 제 2 차 세계대전의 경험에 의하면 스위스가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하여 중립을 지키고자 애쓰더라도 어느 강국 또는 연합된 교전국(les puissances belligeranes et allies) 집단에 의하여 스위스가 완전히 포위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세가 언제 또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하여 두어야 한다.

만일 제 2 차대전 당시와 같은 사태가 재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외부와의 교통은 차단되고, 물자의 공급은 중지되는 한편, 통신수단은 거의 제구실을 못하게 되고, 피난민은 홍수처럼 밀려들고 국가는 피난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인도적인 의무(les devoirs d'humanite)를 지고 있으나 이들 중에는 감시를 게을리 하지 못할 요주의 인물(要注意人物)이 포함되어 있고 더구나 정치적 난민(難民)을 받아 들였을 경우에는 외부적 협박을 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만일 스위스가 연합군대에 의하여 포위 되었을 경우 스위스를 구하여 줄 사람은 바로 국민 자신들 뿐이다.

2. 전면전쟁에 대한 전면방위

오늘날의 전쟁은 단 한사람이라도 간과(看過)할 수 없는 전면전쟁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생존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전면전에 대한 대책도 총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수단에 의한 방위가 우선하여야 되겠지만, 민간인의 보호와 스위스의 경제생활 및 정신생활에 관한 정책이 이에 부가되어야 한다. 저항운동(la resistance)은 자유와 독립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는 국민 각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1) 군대 : 군대는 외부로부터의 공격(la attaque)과 내부에서 유발되는 혼란에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민방위(la protection civile) : 민방위 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부상자를 보살피며 기타 전시 및 평시에 있어 어떠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대피소의 건설, 경보체계의 조직화 및 영공(領空), 하천, 호수, 식료품등의 감시가 있다. 이러한 민방위 제도에 입각하여 전시소방, 공사, 보안, 위생, 이재민 구조등의 업무

체제가 구성되고, 군대도 이러한 임무의 일부를 담당한다.

(3) 정치적 방위 (la defense politique) : 정치적 방위는 스위스의 모든 제도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도록 보살피는 한편, 영컴 하거나 지나친 내정간섭에 의하여 스위스의 자유와 독립이 약화되거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4) 경제적 방위 (la defense économique) : 경제적 식량, 원료 [에너지] 원 등의 공급을 확보하여 스위스가 경제적으로 어느 하나 또는 다수의 외국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5) 사회적 방위 (la defense sociale) : 사회적 방위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정세의 유지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이 그의 생활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쟁할 각오를 가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그의 생활상태에 만족하는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상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정세의 유지가 필요한 것이다.

(6) 심리적 방위 (le defense spirituelle) : 정신적 방위에 있어서는 스위스 국민의 독립심 (la volonee d'independance) 을 약화시키려는 외국의 「이데올로기」 선전 공세 (les propagnandes ideologiques etrangeres) 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 제공하도록 유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또한 국민에 대하여 민족적 가치관에 관한 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민족적 가치관에는 조국과 제반 제도에 대한 애정 이외에

인류, 특히 개발 도상국의 국민에 대한 연대감 및 이에 의한 의무도 포함한다.

3. 국가방위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스위스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고 국토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의 존망(存亡)이 걸린 중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인구가 많은 타국에 비하여 온갖 힘을 국토 방위에 집중하여야 한다.

남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군복을 입고 일선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며,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곤란에 대비하여 식량을 확보하고 국영 또는 민영기업체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경우에 여성이 져야할 임무와 책임은 극히 중요한 것이다.

전시에 있어서의 여성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구호활동에 협력하는 것인 바, 이러한 임무의 달성은 근년에 와서 점점 곤란하게 되어 평시부터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민방위 조직은 비상시에 여성들이 그들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조직이다.

가정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생명이 잘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남성들은 그것 만으로서도 어떠한 전쟁이라도 싸워 이길 투지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토를 방위함에 있어 여성이 행할 수 있는 최대의 공헌인 것이다.

여성은 지원제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근무하게 되지만 생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근무에는 대부분의 스위스 여성이 기꺼이 참여하리라 믿는다.

다른 한편, 스위스의 여성들은 군속으로서 여러가지 보조군무를 수행 함으로써 조국에 공헌할 수 있는바, 예컨대 여성들이 군의 경보발령소, 전화 교환대, 사무실, 대공, 감시초소, 야전병원, 주보 등에 근무 하거나 병원차의 운전수, 군의 취사장, 피난민 수용소 등에서 일할 수 있으며, 여성들이 이러한 곳에서 근무를 하면 그만큼 남자들을 전투 또는 보조 근무등 제1선에 돌릴 수 있게 된다.

상병(傷病)군인을 간호하는 여성 요원은 적십자에 배속되어 있고 실험실조수, X선조수, 여의사, 간호원, 보조 간호원, 특수기능자 등도 적십자의 각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군의 병원, 위생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에 있어서도 필수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전시에 있어서 인명의 보호 및 구조를 위한 구호 조직에 참가하는 자는 뒷짐을 집고 방관하는 자 보다는 곤란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

따라서 자기의 임무나 의무를 확실히 자각하고 있는 자는 혼란이나 공포에 직면하는 경우에는 이에 간단히 휩쓸려 드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유사시에 자기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평시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 2 절 민방위 실태

1. 계획의 수립

민간 방위라는 것은 전, 평시를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재해로부터 일반대중 또는 이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방위는 스위스의 국토방위상 필수 불가결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민방위 임무 수행에도 전, 평시를 불문하고 군의 지역방위대 (le service territorial de l'armée) 의 지원을 받는다.

민방위 조직은 비군사적 조직으로서 자치단체인 시(읍, 면)에 의하여 조직되고, 그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스위스의 민방위대는 법무 치안부의 관할하에 있으나, 비무장이기 때문에 전투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스위스가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적의 점령하에 있게 되더라도 민방위대는 그 활동을 계속하고 민방위요원은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중 포로가 되지 아니한다.

민방위대는 부녀자 및 병역 의무가 없는 남자로서 구성되며 훈련기간은 수일간의 단기과정이다.

이 조직은 자기자신의 보호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성립된 것이므로 구성원의 대다수는 자택에서 각기의 가족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자녀를 가진 주부(主婦)라도 민방위에 참가할 수 있다.

대재해(大災害)가 있을 때 일반주민을 구조하기 위하여는 민방

위대 이외에 특수한 구호장비를 보유하고 또 군사적으로 잘 훈련된 강력한 부대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방공대 (les troupes de protection aerienne)이다.

이 부대는 자위를 위한 무장부대이지만 특정한 전투임무에는 투입되지 아니하고 대부분 인구가 많은 시(읍, 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긴급한 경우에는 동원가능한 예비 부대로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공대는 적의 폭격을 피하고 또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구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시(읍, 면)의 외각에 대기하고 있다.

방공대는 군과 민간인간의 연락업무를 행하며 그 주요임무로는 주요 건물의 경비, 기상예보, 눈사태의 감시, 정보 및 경보의 전달, 물자의 징발, 기업 활동의 제한, 재고품의 규제등 전시 경제적 조치를 취하고 경찰보안조치, 교통의 규제, 피난민 또는 포로등의 수용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경보발령, 간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찰보안조치, 교통정리, 간첩이나 태업활동의 단속 등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방위대는 민병(民兵)으로 구성되는 경보병 부대, 간호 및 보조경찰분견대 등을 그 지휘하에 두고 있다.

방사능에 대한 감시는 평시 및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는 때에는 연방방사능 감시위원회가 담당하고 전시 및 준전시하에 있어서는 지역방위 부대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바 공기, 강설, 강우, 물, 식료품등

에 함유되어 있는 방사능의 양을 수시로 검사하여 만일 방사능이 위험한 정도에 달한 경우에는 주민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는 한편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당한 조치를 알려준다.

현재는 언제든지 활동태세 하에 있는 감시 본부가 방사능에 관한 내외로 부터의 정보를 수집하여 위험한 사태에 이르는 경우에는 제 1 차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 지역민방위 대장

민방위대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는 시(읍, 면)는 현재 약 1,000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시(읍, 면)에서는 민방위대의 책임자로서 지역민방위대장을 둔다.

지역민방위대장은 민방위 조직이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 설치된 목적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또는 이 지역의 민방위 조직이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담당구역안에 있는 위험에 취약한 지역, 건물, 시설, 교통망등의 소재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장은 그의 지휘하에 있는 민방위대의 동원계획을 세우는 한편, 민방위대의 주력을 동원하여야 할 장소 및 시기와 주민의 자력방위에 맡기어도 좋은 지역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민방위대장은 기술적 지식이나 결단력은 물론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및 지휘능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

지역민방위대장의 명령계통에는 민방위대 및 자위대가 속하여 있고, 지역민방위대장은 군의 지역민방위부대 및 인접된 시(읍, 면)와의 연락업무도 담당하며, 방공 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시(읍, 면)에서는 이러한 부대는 지역 민방위 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행동한다.

3. 자치 방위대의 조직

자치방위대는 주택방위대와 직장방위대로 편성되어 있는바 주택방위대는 주민 60인 내지 80인을 단위로 구성하며, 이에도 자체 방위대장 1인, 대피소책임자 1인, 간호 및 위생 책임자 1인 기타 적어도 6인 이상의 임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직장방위대는 행정기관, 10인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직장 50대 이상의 침대를 가진 병원등에 설치한다.

자치방위대의 임무는 가정 및 직장에 있어서 민방위 규칙의 준수, 담당 지역의 안전과 질서의 확보, 방위용 자재와 의료용품의 공급 및 확보, 소규모의 소화(消火)작업, 부상자의 응급치료, 치안상의 장애물 제거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대는 효율성이 높은 소화기구 및 공사용구를 구비하고 지역민방위대장의 지휘하에 활동한다. 소도시에는 전 시 소방방만이 설치되어 있으나 대도시에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다.

4. 민방위 조직법의 규정

① 의무제 및 지원제 : 징집되지 아니하는 남자는 만 20세로 부터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민방위대에 근무할 의무를 지며 (제 34 조 및 제 35 조) 여자는 만 16세부터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다.

(제 37 조) 민방위대에 근무할 의무가 있는 자라도 질병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에서 면제되는 바, 예컨대 유아를 가진 부녀, 부양가족이 있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 43 조)

② 장비 : 시 (읍, 면)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대 및 주택방위대에 소속된 민방위대원에게 필요한 장비를 대여한다. (제 64 조)

가옥의 소유자는 주택방위대를 위하여 소정의 자재를 구입하고 이를 방위대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옥의 소유자는 이러한 자재를 시 (읍, 면)에서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 74 조)

③ 보상 (補償) : indemnities : 민방위대에서 근무를 하는 자는 보수 또는 수입의 감소에 대한 보상, 재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에 관한 청구권을 가진다. 민방위의 임무에 종사하는 것은 해고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 46 조~제 48 조)

④ 훈련 (instruction) : 지역민방위대 및 직장방위대의 대원과 주택방위대장은 최고 3일 이내의 기초훈련과정 (les cours d'introduction)을 거치며, 지역 민방위대장 및 전문가 (les specialistes)는 12일 이내의 소정훈련을 받는다. 지역민방위대 및 직장방위대의 대원과 주택방위대장은 훈련 및 보고를 위하여 매년 2일 이내의 기간 소집

된다. (제 53 조 및 제 54 조)

5. 민방위대 요원

어느 시(읍, 면)의 인구를 10,000 인으로 보면, 그중 평균 1,300 인의 국방군요원 및 900 인의 외국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7,800 인이 되고, 이의 3분의 2는 어린이, 노인, 허약자, 병자등 민방위대 요원으로서는 부적격자 들이다. 또한 아이들이나 병자를 보아야 하는 주부, 기타 가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되는 자는 모두 민방위대요원에서 제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방위 요원으로 서의 자격자는 많아야 7,800 인의 3분의 1 즉 2,600 인 정도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민방위 요원중 4분의 3은 자체방위대에, 나머지 4분의 1은 지역 민방위대에 배속된다.

6. 지역 민방위 조직

① 경보, 감시 및 연락반 (요원총수의 16%) : 경보 전달은 지휘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다.

상황보고 (les rapports de situation), 각종 경보명령, 핵무기 및 화학무기에 관한 보고, 댐 파괴등에 관한 보고는 모두 국방군의 지역방위 부대가 수행 한다. 정보반 (le service des renseignements) 은 지역민방위 대장에게 제반정보를 종합보고 함으로써 그의 지휘를 효과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시소방반 (les sapeurs-pompiers de guerre : 31%) : 전시 소방반은 평시에는 시(읍, 면) 소방대로서의 임무를 수행 하지만 전시에는 이에 중요한 임무가 추가되는 바 지역민방위대장은 주택방위대 및 직장방위대의 활동으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소방반을 필요한 지점에 출동 시킨다.

③ 공사반 : le service pionnier : 16%) 공사반은 파괴된 가옥이나 흩어미속에 산채로 매몰된 자를 구조하고 또한 토사(土砂)가 덮혀 불통이 된 도로등의 복구공사에 종사한다.

④ 안전반 : 안전반은 공공시설의 안전반 직원과 협력하여 수도(水道)의 보전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위생반 (le service sanitaire : 20%) 위생반은 부상자 및 병자의 간호와 수송을 담당한다.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는 먼저 치료소에 보내어 지는데, 부상이 가벼운 자는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부상이 무거운 자(les blesses graves)는 여기서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구 또는 시(읍, 면)의 구호소 : le poste sanitaire de secours)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극히 심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된다.

⑥ 화생방반 (le service AC : 4%) : 화생방 반은 핵무기 및 화학무기에 의한 위험을 탐지하고 방사능 또는 독성(毒性)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⑦ 이재민 구호반 (l'aide aux sans-abri : 13%) : 이재민 구

호반은 이재민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급식을 하는 것이 주임무이지만, 시(읍, 면)당국과 협조하여 부모 또는 친지(親知)의 집에서 동거하도록 주선하거나 생활 필수품을 다시 마련하여 주는 일도 한다.

큰 도시나 시(읍, 면)에서는 위에 제시한 부서 이외에도 다른 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바, 예컨대 지역민방위대의 자체 수송업무를 조정하는 수선반과 근무중인 민방위대원 및 이재민에게 급식을 하는 급식반(le service de subsistances), 그리고 민방위대가 필요로 하는 물자, 자재, 시설등을 확보하고 보급반(le service du materiel)등을 추가 설치하고 시(읍, 면)의 경찰은 질서유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지역민방위대를 원조한다.

7. 민방위대의 편성

6개 내지 10개의 주택방위대로서 통반(統班) : les ilot)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통반민방위대장(le chef d'ilot)을 둔다.

통반민방위대는 인구가 조밀한 도시의 민방위의 핵심(le noyau la protection civile)으로서 400~800인의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통반민방위대장은 주택방위에 상호간의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되도록 지도한다.

큰 시(읍, 면)에서는 6~10개의 통반민방위대로서 1개의 동(洞 : les quartiers)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1개 동에는 4,000~6,000인의 인구를 포용한다.

그리고 수개의 동민방위대를 모아 최하 20,000 인의 인구를 포함하는 하나의 지구(地区: les secteurs) 민방위대를 만들며 대도시에서는 지구민방위대를 모아 구(区: les arrondissementes)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이와같은 각 단위별 민방위대의 소재지와 책임지역은 명확히 지정되며 국방군의 지역민방위부대 또는 인접하고 있는 지역민방위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한편 서로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직장방위대의 구성인원은 종업원의 인원수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지(敷地) 면적이나 건물의 종류, 기업의 종류, 화재 또는 폭발의 발생 위험도 등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원칙상 종업원이 100 인인 경우에는 20%, 500 인인 경우에는 12%, 3,000 인인 경우에는 5%가 민방위 요원이 된다.

8. 대피소 (les abris)

인구 1,000 인 이상의 시(읍, 면)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대피소를 건설할 의무를 지며 인구가 1,000 인 이하인 경우에도 일부 시(읍, 면)에 대하여 주(州)의 규칙에 의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과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시(읍, 면)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경우 적어도 최저기준에 따른 대피소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같은 대피소의 건설비용에 관하여는 연방, 주, 시(읍, 면)가 비용의 약 75%를 부담하며 대피소를 건설할 의무가 없는 시(읍

면)에 있어서도 현존하는 건물 또는 신축건물에 기준에 맞는 대피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연방, 주, 시(읍, 면)로 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읍, 면)는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곳, 번화가(繁華街), 교통의 중심지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개인대피소(les abris prives)가 없는 구역에 공공 대피소(les abris publics)를 구축하고 지역민방위대 및 병원에서 사용하는 대피소는 특히 그 안전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

대피소를 만드는 자는 자기가 선정한 건축기사(le architects)와 상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축기사는 연방의 대피소건설 규칙에 따라 위탁자가 희망하는 건설계획을 작성하여 시(읍, 면)에 제출하고 시(읍, 면) 당국은 이 설계도를 주 및 연방당국에 보내어 검토를 받는다. 연방 주 및 시(읍, 면)당국에 의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도 함께 승인된 것으로 본다.

건축기사는 공사를 완료한 후 대피소 건설비용에 관한 계산서를 시(읍, 면) 당국에 제출하고 시(읍, 면)당국이 완공된 대피소와 이에 관한 계산서를 검사한 다음 이를 승인하면 보조금은 건설계획의 위탁자에게 지불된다.

개인대피소의 건설기준은 보호도(保護度): le degre de protection)기압으로서 대피소는 되도록 지하 깊숙히 자리하고 주위에 벽을 만들며, 큰 건물의 밑에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9. 연락 (la liaison) 및 지휘 (le commandement)

후방에서의 민방위에 있어서도 일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락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지휘 즉 인원 및 자재의 합리적 동원이 가능한 것으로서 각 부서의 책임자는 담당사항에 관한 제반정보를 신속히 입수하는 한편 자기의 담당사항 이외에 관하여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정보 (情報) : les renseignements)는 전화, 무선전선, 전령, (la escouade)을 통하여 간단 명료하고 정료하게 제보되어야 하며, 6차 원칙에 입각하여 발생한 사태를 보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두 (口頭)에 의한 보고 또는 명령은 이것을 수령하는 측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복창시켜야 한다. 연락에 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본느 듀뽕 (Yvonne Dupone) 부인은 주택방위대장 (le chef d'immeuble)이다. 「듀뽕」부인은 자기의 임무를 잘 알고 있으며, 인근의 주택 자위대, 구호소 및 이재민 수용소의 소재지를 알고 있다.

「듀뽕」부인은 주택방위대장으로서 「포스트」가 (la rue de la poste) 8번지 및 10번지의 주택을 담당하고 제 12통반 민방위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재해가 발생하면 주택방위대에 그 처리를 의뢰하는 한편 제 12통반민방위대장에게 전령을 보내어, 재해가 발생한 장소, 시간, 피해

의 정도, 이에 대한 조치 사항등을 정확하게 보고한다.

그리고 부상자는 구호소를 보내고 이재민은 이재민 구호반에 가도록 지시한다.

제 12 통반 민방위대장은 담당 통반구역내의 피해상황을 문서로써 전령을 통하여 제 1 통 민방위대장에게 보고한다.

제 1 통 민방위대장은 통반민방위 대장으로부터의 보고에 입각하여 상사(上司)에 보고를 하는 한편 구원을 요청한다. 동민방위대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은 지구 민방위대장은 정세를 검토한 다음, 자기의 지휘하에 있는 지구민방위대 또는 직장방위대에 출동명령을 발하며, 이러한 정세판단에 입각하여 대공방위 부대를 동원할 수 있다.

10. 경보체제

위험을 확인한 때로부터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그러나 스위스에는 감시경보망이 충분히 또 잘 정비되어 있으며, 어떤 위협이 눈앞에 절박하였을 때에 군대 및 국민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고 위급을 알리는 것은 국방군의 지역방위부대가 담당하고 있다.

지역방위 부대에는 전국에 20개 이상에 달하는 경보발령센터(les centra les d'emission d'alerte)를 가진 경보부대(le service d'alerte)가 소속되어 있는바 경보발령센터는 전국 방방곡곡에 배치되어 기민하게 활동하고 있는 감시망으로 부터 제반

정보를 얻고 있으며 항공감시에 근대기술을 채용하고 있어 비교적 적은 경비로서 스위스의 전영역과 수백 km에 달하는 국경을 감시할 수 있으며, 스위스에 접근하는 항공기는 국경에 다달지기 훨씬 전에 발견되고 만다.

댐의 제방은 수방경보 분견대 (水防警報分遣隊 : les detachements d'alarme-eau)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폭격이나 「사보타주」(le sabotage) 등에 의하여 파괴되더라도 즉시 발견된다.

군, 민의 핵무기 및 화학무기 방위부대는 핵무기 또는 화학무기의 위협에 대비하여 이로부터의 위협을 통보한다.

이 부대는 공중의 방사능을 감시하고 또 화학독물을 탐지한다. 공중이나 물속의 방사능은 평시에 있어서는 대부분 민간인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감시되고 있다. 경보 부대는 생물무기 (les armes biologiques)가 살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령 (指令: les directives)을 발하며 댐의 제방등을 정확히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파괴의 징후를 적시에 발견할 수 있다.

위험 (les dangers)은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방사능운 (放射能雲: les nuages radioactifs)이나 댐의 파괴에 의한 물의 범람은 스위스의 특정지역 만을 위험에 빠트리기 때문에 경보발령센터가 있는 각 경보구 (警報區: le secteur d'aleree)는 단독으로 또는 인접한 경보발령센터와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경보담당관 (l'officier d'aleree)은 적시에 경보를 발하여 위급

을 알릴 책임을 지며 경보의 발령은 무선방송망을 통하여 행한다.

공습경보는 지방 민방위대의 경보센터를 통하여 경보담당관이 발하며 경계경보는 방사능의 정도, 독물 또는 세균에 의한 오염의 정도 재해의 규모, 댐의 파괴에 의한 출수(出水)의 시각등에 관하여 상세히 보도한다.

각종 경보는 유선에 의한 전달이 불가능 하더라도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의하여 대피소 안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무선통신을 이용하여야 한다.

11. 제방의 파괴

적은 스위스를 공격할때 댐이나 제방을 폭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폭파는 대개 저공비행하는 적기가 투하하는 폭탄이나 어뢰(魚雷), 로켓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자가 매설한 폭약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결과로 생기는 재해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클 수 있다.

죽 댐이 소재한 골짜기는 물론 기타 지역도 홍수에 휩쓸리고 물자갈밭으로 바뀌는 한편 아무런 재해대책이 없더라면 수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참변을 당한다.

경지도 황폐하고 장기간에 걸쳐 불모지(不毛地)가 될 것이며 중요한 공업시설, 도로, 철도가 파괴되어 수년간 사용불가능하게 된다.

군대는 진흙과 자갈더미 속에서 행동 불능하게 되고 비행장이나

탄약고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적군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수시간 내에 스위스 국민의 저항력을 분쇄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각자는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여러가지 재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댐이나 제방의 파괴에 의한 홍수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수지나 연못의 수위(水位)를 적절한 시기에 낮추는 것이다.

연방내각은 위험이 절박한 때에는 위와같은 지령을 발할 수가 있으나 댐이나 호수로 부터 물을 빼는 데에는 상당히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되도록 빨리 착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것은 에너지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이와같은 사태하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석유 또는 석탄을 수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실행하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국민 각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 평시에 있어 개인생활에 불가결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체의 약 50%에 달하는 실정인 바, 이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위로여행, 에어컨 불필요한 가옥내의 조명이나 난방등이다. 또한 공장도 생활필수품 이외의 물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한 때에는 보다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서도 수요(需要)를 타개할 수 있으며, 나무 숲, 송진등도 에너지원(源)으로 사용되고, 석유와 석탄 등은 장기간의 저장이 가능하다.

긴급시에는 댐의 수위를 저하시켜 홍수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한 에너지공급의 부족은 각자가 참아야 한다.

수백만킬로와트의 전력(電力)의 손해와 댐의 파괴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천명의 인명의 손실과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전시경제상의 이유에 의하여 댐등의 수위를 대폭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민방위대는 노인, 아이들, 병자, 불구자들을 위험지역으로부터 피난시킴과 동시에, 대용품이 없는 식료품이나 곡물을 안전한 장소에 확보한다.

경보센터는 홍수지역 전체에 대하여 당해 경보구의 무선망을 통하여 방수 경보를 발한다. 이 때 홍수지역 전체에 있어서의 홍수발생기간을 알리고 현지의 민방위대를 다른 지역에 대하여도 적당한 수단으로 통보한다.

12. 구조작업 (le sauvetage)

총래의 경험에 의하면 매몰(埋沒)되거나 대피소내에 갇혀 있던 자가 수일 후에 구출된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구조작업은 기만할수록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이 크다.

충분한 완벽한 훈련을 실시하고 건물이나 그 부근지리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작업을 정력적(精力的)으로 또 참을성있게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트란셰」(Tranchees) 가에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고 흩

더미와 대피소 안에는 적어도 100여인의 주민이 파묻히게 되었다.

이때 주택 방위대장은 곧 재해상황을 판단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대는 즉시 행동을 개시한다. 통반민방위대장은 구조반과 함께 전시소방반 및 공사반을 파견한다.

주택방위대장은 평시에 작성한「주민등록부」(les listes nominatives)에 의하여 행방불명자를 확인하고 행방불명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조사연구 하여 그 결과를 전시소방반 및 공사반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피해지 처리책임자는 구조작업의 착수장소를 지정하며 주택방위대장으로부터 조언(助言)을 받는다.

공사반은 기술적 용구(用具)를 장비하고 매몰된자들을 구출하며 전시소방반은 필요한 방화(防火)조치를 취하고 주택방위대는 이를 원조한다.

피해가 너무 커서 전시소방반 및 공사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는 통반민방위대장은 중장비를 가진 방공대에 원조를 구할 수 있다.

※ 역자주: 「스위스연방의 민방위 실태」는 스위스연방집행원 (le conseil federal)이 스위스국민에게 1가구당 1권씩 배포하여 민방위에 관한 하나의 교과서 및 심득서(心得書)로서 널리 보급시키려는 목적하에 법무치안부 (le Departement federal de justice et police)에 요청하여 발행한 민방위라는 책자에서 스위스민방위의 운영실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IV . 스위스 연방의 민방위 제도

제 1 절 연 방 민 방 위 법

I 총 칙

제 1 조 ① 민방위는 국가 방위의 일부분이다.

② 민방위는 일정한 조치를 통하여 국민을 보호 구호 구출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무력 충돌을 미연에 방지 또는 경감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방위에는 교전임무 (Kampfaufgabe) 가 부여되지 않는다.

제 2 조 민방위는 주로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위험 및 방위에 관한 국민제동
2. 다음과 같은 보호 및 구출 수단외 강구
 - a. 경 보 (Alarmierung)
 - b. 등화 관제 (Verdunkelung)
 - c. 방화 및 소화
 - d. 사람 및 재산의 구조
 - e. 원폭, 세균전 및 화학전의 피해 방지
 - f. 홍수에 대한 방지
 - g. 주민의 철수
 - h. 기업 (Betrieb)의 보호
 - i. 중요한 문화재의 보호
3. 다음과 같은 보호적 조치 (Betreuungsmaßnahme) 외 강구

a. 부상자, 불구자, 병자에 대한 부조

b. 무주택자 및 무의탁자에 대한 배려

제 3 조 위의 조치는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1. 민방위 기관

2. 지역 민방위대 및 직장 방위대 (Betriebsschutz) 의 시설 및 설비

3. 인근 및 지구의 원조

4. 주민을 위한 방공호 및 설비

제 4 조 ① 전시 일반동원 (Gesamtmobilmachung) 에는 민방위 조직이 소집되는 것으로 한다.

② 연방 집행원은 다음의 경우에도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다.

1. 일부 동원의 경우

2. 기타 현역 근무를 위하여 군부대가 소집되었을 경우

③ 주로 다음의 경우에 언제든지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다.

1. 돌발적인 전쟁의 경우에 인근 및 지구의 구조를 위하여

2.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근 및 지구의 긴급 구조를 위하여

제 5 조 민방위대는 방공대 (防空隊, Luftschutztruppen) 가 배속되어 있는 군대의 지원을 받는다. 이 군대는 연방 집행원에 의하여 위험이 큰 시(읍, 면)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제 6 조 필요한 조치에 관한 명령과 실시는 행정 관청의 임무이다.

제 7 조 ① 연방 집행원은 감독과 최고의 통제를 행하고 법규의

시행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실시한다.

- ② 연방 집행원은 소집 근무 기간내에 있어서 규정된 조치 및 수단의 완비를 명한다.

제 8 조 ① 이 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무는 그것이 연방의 관할 사항인 한, 연방 법무 치안부에 위임한다. 그러나 제 87 조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연방 민방위청은 실시 기관으로서 연방 법무 치안부에 소속된다.

제 9 조 ① 각주는 연방이 발한 주에 관한 법규를 시행할 책임을 진다. 주는 그의 영역내에서 감독과 통제를 행하고, 명령된 조치의 집행과 그 방책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실시한다.

- ② 각주는 민방위대를 설치할 의무를 지는 시(읍, 면) 및 기업을 지정한다. 당해 시(읍, 면)와 기업은 이에 관하여 연방 집행원에 항수할 수 있다.

- ③ 각 주는 그의 영역에 있어서 집행기관으로서 주의 민방위청(Zivilschutzstelle)을 지정함과 아울러 주 및 시(읍, 면) 민방위기관의 업무와 권한을 정한다.

- ④ 각 주는 주에 필요한 교관수를 결정한다.

- ⑤ 주가 민방위 업무를 지금까지 군행정청에 위임하였던 경우에는 금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군행정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① 시(읍·면)는 그의 영역에 있어서 민방위의 중심적

책임기관으로서 연방 및 주가 규정하는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시(읍·면)는 기업, 가옥소유자 및 개인에 대하여 당해 조치의 시행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실시와 방법을 직접 행한다.

② 시(읍·면)는 그의 영역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집행기관으로서 지역지휘부(Ortsleitung)와 민방위 기관을 지정한다.

제 11조 각 기업은 그에게 부여된 조치의 준비 및 실시를 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의무를 진다.

제 12조 ① 가옥소유자는 그에게 부여된 조치의 준비와 실시,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가옥 소유자는 특히 자신이나 임차인이 공동 사용할 장소에서 장애물 제거와 등화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그가 임차한 장소에서 장애물 제거와 등화관제를 행하여야 한다.

제 13조 ① 각인은 규정된 인적조치를 준비하고 실시할 의무를 진다. 그 중에는 특히 장애물의 제거와 등화관제, 경보시의 행동을 포함한다.

② 누구든지 민방위대의 활동중에는 그가 비록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는 그에게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한 이를 행할 의무를 진다.

II 민방위대 (Schutzorganisation)

A. 조 직

제 14 조 ① 보호, 구조, 구출의 조치를 준비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조직을 둔다.

- a. 시(읍·면)에 있어서는 지역민방위대
- b. 각 직장에 있어서는 직장방위대
- c.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방위대

② 직장방위대와 주택방위대는 지역 민방위대의 일부분으로서 그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B. 민방위대 설치의무

제 15 조 ① 당해 지역내에 1,000명 또는 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취락(Siedlung)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모든 시(읍·면)에는 민방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밖의 시(읍·면)에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민방위대의 설치의무를 선언할 수 있고, 지역민방위대나 개개 근무부서의 설치도 억제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당해 시(읍·면)의 중요성 및 상황으로 보아 특례를 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방위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 16 조 민방위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시(읍·면)에는 최소한 전시소방대(Kriegsfeuerwehr)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읍·면)에는 주의 승인을 받아 지원에 의한 민방위대를 둘 수 있다.

제 17조 수개 시(읍·면)의 지역 방위대와 독립된 전소방대는 주의 명령에 따라 통합될 수 있다.

제 18조 ① 민방위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읍·면)의 최소한 100인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공사(公私)의 기업과 행정관청에는 직장방위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최소한 침대 50개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설비(Anstalt)와 병원에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시(읍·면)에 있어서의 소규모 기업과 일반기업에 있어서도 공공의 이익이 되거나 당해 기업이 특별한 위험성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장방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100인 또는 그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과, 침대 50개 또는 그이상을 보유하는 공공설비 및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의 특성이나 상태로 보아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장방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밖의 기업에는 주의 승인을 받아 지원에 의한 직장방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9조 ① 민방위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읍·면)에 있어서는 모든 건축물에 주택방위대를 두어야 하며, 직장방위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시설에도 주택방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 주택을 위한 공동주택 방위대를 둘 수 있다.

- ② 주는 또한 민방위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시(읍, 면)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방위대의 설치를 억제할 수 있다.
- ③ 민방위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시(읍·면)에 있어서는 주의 승인이 있는 때에만 지원에 의한 주택방위대를 둘 수 있다.
- ④ 연방 집행원은 주택방위대를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한다.

제 20 조 각주는 주의 기업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한다.

제 21 조 연방 집행원은 연방의 각 시설과 면허받은 운송기업 (Konzessionierten Transportunternehmung) 을 위한 특별규정을 제정한다.

C. 민방위대의 임무

제 22 조 ① 지역 민방위대는 직장방위대와 주택방위대가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임무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 민방위대는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직장방위대와 주택방위대를 지원한다.

- ② 지역 민방위대는 시설 및 설비의 유지 및 준비를 위한 공공의 방공호 (Schutzraume) 를 관리한다.

제 23 조 직장방위대는 그의 영역내에서 인명 및 생활상 중요한

재산을 보호하고, 기업이 가능한 한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명하여진 조치를 준비하고 시행한다.

제 24 조 ① 주택방위대는 명령된 조치와 장비 및 개인방공호의
관리를 감독하며, 경보의 경우에 명령을 전달한다.

② 주택방위대는 또한 진화(鎮火)를 행하며, 매몰된 자와 피해
자를 구출하고 경상을 치료한다.

D. 민방위대의 구성

제 25 조 ① 지역 민방위대에는 보통 다음의 자로 구성되는 지휘
부(Leitung)를 두어야 한다.

지역 민방위대장 (Ortschef) 및 그 보좌관

직장 방위대장

주택 방위대장

개개 부서의 장

그 밖의 보조자

② 지역 민방위대에는 다음의 근무부서를 두어야 한다.

a. 경보, 감시, 연락반

b. 전시 소방반

c. 공사 반

d. 위생 반

e. 화생방반

f. 이재민 구호반 (Obdachlosenhilfe)

③ 각주는 대규모의 민방위대를 가진 시(읍·면)에는 부서를 추가함으로써 민방위대를 확장하거나, 소규모의 민방위대를 가진 시(읍·면)에는 그 일부를 축소시킬 수 있다.

제 26 조 ① 직장방위대에는 지휘부와 다음의 부서를 두어야 한다.

- a. 경보, 감시, 연락반
- b. 소방반
- c. 공사반
- d. 위생반

② 각주는 대규모의 기업에 관하여는 부서를 추가시킴으로써 방위대의 확장을 요구하고, 소규모의 기업에 대하여는 보다 적은 부서로 축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 27 조 시(읍·면)당국은 지역민방대장의 요청에 따라 개개의 주택방위대의 규모와 구성을 규정하며, 주택방위대에 건조물을 배당한다.

제 28 조 ① 시(읍·면)는 인접지의 구조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주는 이에 관한 세칙을 정한다.

② 주는 지역의 구조를 행하며, 인접한 주와 협조한다.

표. 지휘 및 출동 (Leitung und Einsatz)

제 29 조 ① 시(읍·면)당국이 지역민방위대장으로 지명한 책임자는 각지역 민방위대를 지휘한다.

② 모든 조직은 시(읍·면)의 민방위계획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③ 지역 민방위대장은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방위대 및 기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대와의 협동을 행하며 시(읍·면)는 전체 민방위조치를 감독한다.

④ 지역 민방위대장은 방위대의 출동을 명하며 그가 임의로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

⑤ 지역 민방위대장은 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시(읍·면) 당국에 책임을 진다.

제 30조 (직장방위대) ① 시설의 요원으로서 지도적 지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책임자는 직장방위대장으로서 그 직장방위대를 지휘한다. 직장방위대장은 당해 직장방위대의 출동을 명한다.

② 직장방위대장은 당해 직장방위대의 시설밖의 출동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규제를 요구할 수 없는 한, 지역 민방위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직장방위대장은 필요한 간부 및 전문가를 임명한다.

제 31조 건물소유자 (Gebäudechef)는 각 주택방위대를 지휘하며, 이를 조직하고 이의 출동을 명한다.

제 32조 연방 집행원은 지역 민방위대장, 직장방위대장, 각 근무부서의 장 및 기타의 간부 및 전문가의 임명에 있어서 직급 (Funktionsstufe), 조건, 절차를 정한다.

제 33조 ① 근무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 민방위대장은 구조를 행할 장소와 구조의 긴급성 (Dringlichkeit)을 결정한다. 근무대의 출동은 군지휘관에 의하여 명하여지고 지휘된다.

- ② 군부대가 직접 긴박한 전투를 준비중에 있거나 전투중에 있는 경우에는 군부대와 민방위대의 협동은 군지휘관에 의하여 명하여지지만 이때에는 군지휘관은 민방위 실시를 위한 명령만을 발할 수 있다.
- ③ 시(읍·면)에 배치된 방공대가 전투행위의 결과로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하여 당해 시(읍·면)를 위하여 더 이상 기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방공대는 가능한 한 다른 시(읍·면)의 민방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Ⅲ. 민방위 근무의무 (Schutzdienstpflicht)

A. 범 위

제 34 조 ①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의 남자는 민방위에 복무할 의무를 진다.

② 연방 집행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최고 만 65세로 연장할 수 있고, 만 16세의 소년에게까지도 방위근무의무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 연방 집행원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 35 조 ① 군복무 및 보조근무 의무자 (Dienst- und Hilfsdienstpflichtige)는 방위근무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그러나 일반시민의 생업을 위하여 군복무나 보조근무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방위근무의무를 진다.

③ 연방 집행원은 적절한 수의 군복무 및 보조군무 의무자를 그들의 병역의무 기간동안 민방위대에서 간부 또는 전문가로서 복무케 한다.

제 36 조 ① 군복무 및 보조군무 의무자가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경우에는 그의 군경력은 가능한 한 참작되어야 한다.

② 연방 집행원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법정 군복무 또는 보조군무를 필한 자에 대하여 특히 그 자가 민방위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시(읍·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방군무의무를 단축시킬 수 있다.

③ 연방 집행원은 군에서 특히 지구방위대(Ortwehr; 1967년 해산됨)에서 복무하여야 하고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방위근무 의무자에게는 민방위근무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

④ 연방 집행원은 주 및 시(읍·면)로 하여금 적절한 수의 방위근무 의무자를 경찰력의 증강을 위하여 임의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 37 조 부인과 만 16세에 달한 여자는 방위근무의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 38 조 방위근무의무가 면제된 남자와 만 16세에 달한 소년은 방위근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 39 조 ① 방위근무의무를 지원한 자는 의무적 방위근무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②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근무 의무를 부담하게 된 자의 복무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나 그 후에 다시 연장될 수 있다.

제 40조 각 민방위대원은 임무를 부여받으며 이와 관련된 군무를 수행한다.

제 41조 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적합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만이 방위대에 편성될 수 있다.

② 스위스 국민만이 지역방위대에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 44조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스위스 국민이 아닌 자도 직장방위대 및 주택방위대에 편성될 수 있으나 다만, 일반적으로 간부가 될 수는 없다.

④ 직장방위대는 당해 기업의 소속원을 통상 타의 모든 요구에 우선하여 민방위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제 42조 ① 지역 민방위대, 독립된 전 시소방대, 주택방위대에는 당해 시(읍·면)내에 거주하는 자만이, 직장방위대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자만이 편성될 수 있다. 지방방위대에는 예외적으로 시(읍·면)에 거주하는 당해 기업의 소속원이 아닌 자로 편성될 수 있다.

② 주는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지역적으로 다른 규정을 제정한다.

제 43조 ① 민방위 의무의 면제사유는 다음과 같다.

a. 연령, 질병 또는 신체적 결함

b. 제 36조 제 3 항에서 의미하는 면제사유

c. 부인에 대한 중대한 사유 <특히 모(母)로서의 의무와 노
인이나 부양의무 있는 가족의 부양>

② 민방위 의무의 실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a. 무능력자

b. 부적격자

제 44 조 연방 집행원은 민방위소집 근무기간내에 방위근무 의무를
연장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특히 외국인 및 스위스 국적이
없는 자에게도 민방위 근무의무를 지게 할 수 있다.

제 45 조 ① 연방 집행원은 지역방위대, 직장방위대, 주택방위대에
편성시키기 위한 절차와 면제 및 실역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② 연방의 기업이나 면허를 받은 운송기업에 관하여는 특별규정
을 적용한다.

B. 방위 의무자의 권리

제 46 조 ① 학과교육·실제연습·보고서작성(Rapport)에 참여하거
나 방위소집 기간내에 복무하고 있는자 또는 긴급구조를 제공
하는 자는 그 근무가 최소한 3시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권을 가진다.

② 연방 집행원은 군보수의 범위 안에서 보수액을 결정한다.

제 47 조 학과교육·실제연습·보고서작성에 참여하거나 방위근무의
소집근무 기간내에 복무하고 있는자 또는 긴급구조를 제공하는
자는 그를 위하여 적용될 생계보상법(Erwerbsersatzordnung)

의 규정에 따른 상응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제 48 조 ① 학과교육·실제연습·보고서작성에 참여하거나 방위근무의 소집 근무 기간내에 복무하고 있는자 방위근무를 위하여서나 긴급구조를 위하여 소집된 방위근무자 (Schutzdienstleistende) 와 교관은 당해 소집관청에 의하여 적합한 재해 질병보험에 가입된다. 이 보험은 보통의 군사보험에 상응되어야 한다. 제 13 조 제 2 항에 따라 구조를 제공하는 자도 재해보험에 가입한다.

② 연방은 주 및 시(읍·면)가 참여할 수 있는 집단보험 (Kollektivversicherung)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9 조 <생략>

제 50 조 ① 민방위에의 근무는 병역의무의 대행으로 적절히 고려될 수 있다.

② 연방 집행원은 이에 관한 세칙과 절차를 정한다.

제 51 조 소집 근무기간 중에는 채무 및 파산에 관한 1889년 4월 11일의 연방법률 제 57 조에 의한 군복무중 법적 절차정지의 규정은 지역 민방위대 및 직장방위대에 근무중인 자에게도 준용한다.

IV. 훈 련 (Ausbildung)

제 52 조 ① 지역 민방위대원과 직장방위대원 및 건물소유자는 연방법규에 의하여 학과교육·실제연습·보고서작성의 훈련을 받으

며 항상 출동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가능한 한 방공대와 합동연습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사소방대원의 훈련은 전쟁의 특수성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주 및 시(읍·면)법규에 따라 행하여진다.

③ 주는 연방 집행원의 승인을 얻어 그 밖의 주택방위대원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제 53 조 ① 새로이 지역 민방위대에 편성된 모든 대원은 3일간의 기초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민방위대의 간부 및 전문가는 2일간의 기본교육(Grundkurs)을 받는다.

③ 간부와 전문가는 원칙적으로 4년간의 광범위한 전 교육과정(Weiterbildungskurs)을 거쳐야 한다.

④ 상위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는 전항의 교육외에도 12일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민방위대원을 위하여는 지원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교육훈련기간이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방 집행원은 주의 의견을 들은후 훈련기간을 3분의 1 연장할 수 있다.

제 54 조 지역민 방위대와 직장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건물소유자 및 주택방위대의 전문가는 매년 최고 2일간의 실제연습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될 수 있다.

제 55 조 ① 연방은 다음 각호의 자를 훈련한다.

a. 주 민방위관청의 장, 주의 교관, 지역 민방위대장과 그의 보좌관, 종업원 500인 또는 그 이상을 가진 기업의 직장방위대장과 그의 보좌관

b. 경보·감시·연락반 및 화생방반의 전문가

c. 연방의 직장방위대의 요원

② 연방은 주의 요구에 따라 주의 비용부담으로 주에서 훈련할 책임이 있는 간부 및 전문가에게도 연방의 교육과정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56 조 각주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a. 방위대의 각종 부서의 장 (Dienstchef), 방위대의 파견대장 (Detachmentschef), 방위대의 구단위대의 장 (Sektorenchef), 동단위대의 장 (Quartierchef), 지역 민방위대 및 직장방위대의 전문가

b. 500인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직장 방위대장

c. 기타 주의 직장 방위대원

제 57 조 시(읍·면)는 각 분대장 (Gruppenchef), 각 통반 단위대의 장 (Blockchef), 건물소유자와 지역 민방위대 및 직장방위대의 기타의 대원에게 훈련을 실시한다.

제 58 조 각 기업은 당해 직장방위대의 각 분대장과 기타의 대원에게 훈련을 실시한다.

제 59 조 연방 집행원은 교관의 훈련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한다.

제 60조 연방은 학과교육 및 실제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인원 및 그 목적에 적합한 건물과 시설 및 장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제 61조 연방·주·시(읍·면)·기업의 임무의 범위에 속하는 학과교육은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든 임의적인 것이든 그 실시를 상급 당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V. 장비·물자·시설·설비

(Ausrüstung, Material, Anlage und Einrichtung)

제 62조 ① 연방 집행원은 민방위에만 사용될 장비 및 물자에 관한 세칙을 정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조사도 행한다.

② 연방 집행원은 또한 민방위를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게 될 장비 및 물자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연방은 추후에 주·시(읍·면)·기업체 및 개인에의 인도를 위하여 장비 및 물자를 저장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방은 지방 분권을 위하여 주 및 시(읍·면)로 하여금 그 저장품을 전부 또는 일부 저장 및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다.

제 63조 ① 주는 그가 보유한 방위대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한다.

② 주는 연방으로부터 그에게 위탁된 장비 및 물자에 추가하여

그 밖의 저장품 특히 위생도구 (Sanitätsmaterial) 를 확보할 수 있다.

제 64 조 ① 시 (읍·면) 는 지역 민방위대와 주택방위대를 위하여 정하여진 개인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 민방위대를 위하여 규정된 공동의 물자와 적절한 저장품 특히 식품을 확보한다.

② 시 (읍·면) 는 지역 민방위대와 주택방위대의 대원에게 정하여진 개인장비를 대여 (貸与) 의 형식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 65 조 ① 기업은 직장방위대를 위하여 규정된 개인장비 및 규정된 공동의 물자와 적당한 저장품을 확보한다.

② 기업은 직장방위대 요원에게 개인 장비를 대여의 형식으로 필요한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 66 조 가옥소유자는 규정된 공동의 물자를 주택방위를 위하여 확보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다.

제 67 조 외국으로부터 연방으로 수입된 민방위 물자 (Zivilschutzmaterial) 인 반제품과 완제품은 관세사무에 관한 1925년 10월 1일의 연방법률 및 1926년 7월 10일의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세법상 전쟁물자 (Kriegs-material) 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68 조 ① 시 (읍·면) 와 기업체는 그의 민방위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방은 유지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방 집행원은 이에 관한 세칙을 정한다.

VI. 비 용 부 담

제 69 조 ① 연방이 관계자에 대하여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의무적인 조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연방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 보조금은 주의 재정능력과 산악지역 (Berggebiete) 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55 ~ 65 %까지로 한다. 제 3 항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연방은 그의 법규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된 훈련의 비용에 대하여도 그 비용의 55 % ~ 65 %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연방은 장비 및 물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연방은 민방위의 실시 및 관리가 연방의 관할사항에 속하는 한, 이에 대하여, 특히 연방의 직장방위대, 연방이 실시한 학과 교육·실제연습·보고서작성, 기술교육용 자재에 대하여 전비용을 부담한다.

⑤ <생략>

⑥ 연방은 주 및 시(읍·면)의 경찰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제 36 조 제 4 항에 따라 주 및 시(읍·면)에 위임하여 실시하는 방위근무 의무자의 훈련, 장비 및 그 사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⑦ 연방은 정식 소방반의 훈련·장비·물자에 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0 조 ① 주는 그가 행하는 민방위의 실시 및 관리와 그가 명한 긴급구조를 위한 민방위대의 출동에 있어서의 전 비용을 부담한다.

② 주는 특히 그가 실시하는 학과교육, 실제연습 및 보고서작성과, 자신이 보유한 또는 연방으로부터 위탁된 장비와 물자의 저장에 대한 연방의 보조금을 제한 나머지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 71 조 ① 시 (읍·면) 는 그가 행하는 민방위의 실시 및 관리와 그가 명하는 긴급구조를 위한 지역민방위대의 출동에 있어서의 전비용을 부담한다.

② 시 (읍·면) 는 특히 그가 실시하는 학과교육·실제연습 및 보고서작성과 그가 보유한 또는 연방으로부터 위탁받은 장비 및 물자의 저장과, 그가 설치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 나머지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 72 조 주법은 시 (읍·면) 및 기업의 비용에 대하여 주가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지를 규정한다.

제 73 조 ① 기업은 그의 방위대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연방은 훈련·장비·물자에 관하여 그가 시 (읍·면) 에 지출하는 액수와 동일한 보조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③ 시설 및 설비가 민방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연방은 그가 각 시 (읍·면) 에 지출하는 액수와 동일한 비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시설 및 설비가 민방위만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연방은 비용의 초과액에 대한 보조금만을 지급한다.

제 74 조 가옥소유자는 주택방위대 공유의 물자의 구입비용을 부담하며, 일정한 물자를 시(읍·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VII. 소유권 행사 (Inanspruchnahme von Eigentum)

제 75 조 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 및 점유권자는 민방위대 또는 개개의 근무부서 (Einzelnen Dienstzweig) 의 정할 (Erkundung) 및 연습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적시에 사전 신고한 후에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②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 및 점유권자는 또한 그의 토지가 민방위의 시설 및 설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허용할 의무도 진다.

③ 그 소유권이 가치가 경감되거나 무가치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은 수용에 관한 1930년 6월 20일의 연방법률 제 33조에 따라 단축된 절차로 강제 수용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연방 집행원은 이 권한을 주 또는 시(읍·면)에 위임할 수 있다.

제 76 조 ① 민방위소집 근무기간에는 군대에 있어서와 동일한 보상조건으로 민방위를 위한 징발권 (Requisitionsrecht) 이

발생된다.

- ② 평상시에는 이에 필요한 사전준비 만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민방위대의 소유이거나 이에게 할당된 장비·물자·시설·설비는 군에 의하여 징발되거나 그 밖에 군에 의하여 요구될 수 없다.
- ④ 연방 집행원은 이에 관한 세칙을 규정한다.

Ⅷ. 손해의 책임

(Haftung für Schäden)

제 77조 ① 연방·주·시(읍·면) 및 기업은 그가 실시한 학과 교육과 실제연습의 결과로 또는 기타 그들의 교관이나 민방위대의 근무수행으로 제 3자에 대하여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의 결정에 있어서는 채무법 (Obligationrecht) 제 42조, 제 43조 제 1항, 제 44조 제 1항, 제 45조, 제 46조 및 제 47조를 준용한다.

- ② 도로 교통에 관한 1958년 12월 19일의 연방법률에 따른 책임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민방위대와 군대의 합동연습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 출동에 있어서의 책임에 의하여 행한다.
- ④ 전시 민방위대의 출동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책임은 발생되지 아니한다.

제 78 조 연방·주·시(읍·면)나 기업이 손해를 배당한 경우에는 그들은 그 손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 79 조 ① 주는 손해배상청구를 관할할 관할관청을 지정한다.

②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관청은 제 1 심관할청으로서 손해배상청구 및 물적손해에 의한 구상청구에 관하여 결정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손해배상액에 관계없이 이 결정을 문서상으로 통보를 받은후 30일 이내에 민방위에 관한 연방항소위원회(Eidgenössische Re Kursrommission für Zivilschutzangelegenheit)에 종국적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 3자를 살해 또는 상해케 한 경우에는 주의 관할관청은 제 1차적으로 적합한 방법에 따른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재판소는 유일한 재판소(Einzige Instanz)로서 이를 판결한다. 연방재판소는 인적손해를 야기시킨 자에 대한 구상에 관하여도 판결한다.

④ 재해의 결과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를 동시에 야기시킨 경우에는 물적손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의 제 3항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연방재판소가 판결한다.

제 80 조 ① 제 77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가 발생된후 30일 이내에 그의 요구를 제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추후에 증명될 수 있는 손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늦어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이에 관하여 책임있는 공동체 (Gemeinwesen) 또는 시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으로써,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기간의 만료로써 그 시효가 완성된다.

③ 구상 청구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알거나 주무관청에 의하여 배상의무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으로써,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써 그 시효가 완성한다.

제 81조 연방·주·시(읍·면) 및 기업간의 손해배상 급여의 분담에 관하여는 제 69조를 기준으로 한다.

IX. 항 소 권 (Beschwerderecht)

제 82조 ① 재산권적 성질이 아닌 분쟁에 있어서는 이 법이 종국적인 것으로 제기하지 아니한 최종적인 주 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연방 법무치안부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종국적 판결이 되지만 제 9조 제 2 항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지역 민방위대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관할권 있는 시(읍·면)

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종국적 결정을 행하는 관할권 있는 주관청에 대한 항소의 방법으로 그 취소가 청구될 수 있다.

X. 재산권적 청구권 (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제 83 조 ① 연방 민방위청은 민방위법 또는 연방집행원의 집행명령에 근거한 연방의 또는 연방에 대한 재산권적 성질의 청구에 관하여는 손해책임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판결한다. 이 판결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30일 내에 분쟁가격에 관계없이 중국관절을 행할 민방위에 관한 연방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② 연방 집행원은 이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XI. 벌 칙

제 84 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특별히 경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 대신에 관할권 있는 주 또는 시(읍·면) 관청은 1차의 경고를 발할 수 있다. 민방위에 있어서 자신에게 위임된 임무의 수임을 특별면제나 건강상 이유로 면제를 받음이 없이 거부하는 자, 민방위의 학과교육, 실제연습 또는 기타의 준비에 불참할 것을 또는 공적으로 명하여진 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것을 공공연하게 선동

하는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자.

a.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에 불응하거나 학과교육, 실제연습이나 출동에 불참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방위근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b. 학과교육, 실제연습 및 기타의 준비 또는 민방위의 시설이나 설비 또는 민방위활동을 방해하거나 해치는 행위

② 중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을 과할 수 있다.

③ 근무기간 중의 범행은 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④ 다른 법에서 정하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소추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85 조 ① 고의로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연방집행원이 세정한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200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한 경우 또는 누범에 대하여는 이에 병과하여 구류에 처할 수 있다.

② 특별히 경한 경우 또는 행위자가 과실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는 처벌에 대신하여 관할권 있는 주 또는 시(읍·면) 관청은 1차의 경고를 발할 수 있다.

③ 복무기간 중의 행위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 86 조 ① 주는 이 법에서 형벌로써 벌하는 행위의 소추와 그 판단을 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유죄판결과 재판실차의 정지 결정 (Einstellungsbesch-

lüsse) 은 전문으로 연방변호사회 (Bunderanwaltschaft) 에
무료 송달하여야 한다.

XII. 문화재 보호 (Kulturgüterschutz)

제 87 조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는 1966년 10월 6일의 “전쟁시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XIII.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제 88 조 <삭 제>

제 89 조 ① 연방 집행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
규정과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② 연방집행원은 시민의 계몽·위생근무·화생방근무에 관한 규정,
경보·방화·무주택차 부조에 관한 규정 및 전시 민간인 보호
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협정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다.

③ 연방집행원은 전항의 협정의 시행을 스위스적십자사 이외에
민방위대에도 위임할 수 있다. 민방위대에는 어린이에 대한
인식표의 교부 및 위의 협정에 관한 국민계몽의 임무를 이양
받을 수 있다.

③ 이 법의 집행은 주의 그 밖의 임무로써 시(읍·면), 공사
(公私)기업의 경영자 및 개인의 감독하에 행한다.

제 90 조 연방 집행원은 이 법의 집행이 연방의 관할사항인 경우에는 이 법의 집행권을 가진다.

제 91 조 ① 연방 집행원은 민방위에 관하여 군대 및 전시 경제부와 협조를 행한다.

② 연방 집행원은 특히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행정관청과 군부대간의 관할권을 정한다.

제 92 조 ① 연방 민방위청은 종래 연방 국방부 방공국 및 연방 내무부 보건국이 관장하던 민방위에 관한 민간인의 업무를 인수한다.

② 연방 집행원은 민방위업무를 연방 국방부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방공대의 임무·조직·장비 및 훈련은 우선적으로 민방위의 요구에 따른다. 그러나 군대의 필요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이미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만 60세의 남자는 만 65세까지 방위근무 의무를 진다.

제 93 조 <삭 제>

제 94 조 ① 연방 법무치안부의 조직에 관한 1919년 6월 27일의 연방법률은 다음 각호와 같이 보충된다.

각호 <생략>

② 종래의 제 8 호는 제 9 호로 한다.

제 95 조 ① 연방 정부조직에 관한 1914년 3월 26일의 연방법률

은 다음 각호와 같이 보충된다.

각호 <생략>

② 종래의 제 8 호는 제 9 호로 한다.

제 96 조 ① 연방 집행원은 이 법의 시행일을 정한다.

②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법률은 폐지된다..

1. 민간인의 소극적인 방공에 관한 1934년 9월 29일의 연방 결정
2. 소극적인 방공에 관한 벌칙에 대한 1938년 6월 24일의 연방 결정
3. 종래의 시행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개폐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시행일 : 1963년 1월 1일

제 2 절 민방위에 있어서의 건축상조치 에 관한 법률

스위스 연방의 연방의회는,
연방헌법 제 22 조의 2, 제 42 조의 3 및 제 64 조의 2에 의거하여
1962년 9월 21일의 연방 집행원의 보고를 열람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건축의무

제 1 조 ① 지역 민방위대 (Örtliche Schutzorganisation) 를 설
치할 의무가 있는 모든 시 (읍·면) 에는 민방위에 필요한 건
축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기타의 시 (읍·면) 및 방위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시
(읍·면) 에 있어서의 방위의무가 있는 기업체는, 사정상 필요
한 경우에는 주에 의하여 건축의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③ 시 (읍·면) 의 중요성과 위치가 예외를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주는 시 (읍·면) 의 건축의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하게
할 수 있다.

제 2 조 ① 건축의무를 진 시 (읍·면) 에 있어서 주택소유자는 지
하실을 갖춘 모든 신축물 또는 지하실이 있는 건물의 현저한
개축의 경우에는 비상계단이 있는 방공대피실을 설치하며, 필요

한 경우에는 비상통로 (Fluchtweg) 및 비상암거 (Fluchtkanal; 暗渠) 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건축물에는 벽(壁) 비상구 (Mauerdurchbrüchen) 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주는 지하실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어느 범위만큼 건축상의 조치가 행하여져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주는 특별한 경우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으며, 특히 붙용건 (Abgelegene Gebäude) 및 야간에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주간에만 거주하는 그러한 건물에 대하여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 3 조 ① 병원의 신축 및 개축의 경우에는 방공대피 수술실 (geschützte Operationställe) 과 간호실 (Pflegeräume) 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기존의 병원에 대하여는 주는 위와 동일한 조치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명할 수 있다.
- ③ 병원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방위대를 둘 의무가 있는 시 (읍·면) 에 있어서는 주는 응급보전소를 응급병원으로 개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 2 항과 제 3 항에 제기된 조치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연방은 당해 지역의 보전소를 응급병원으로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4 조 ① 시 (읍·면) 는 영업중심지 및 교통교차점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중 (公衆) 의 왕래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에서는 제 2 조 제 1 항에 제기된 기타의 시설을 가진 공공 방공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또한 시(읍·면)는 개인방공호가 없거나 건축될 수 없거나 위험이 너무 많은 지역의 거주자를 위하여 공공의 방공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지역은 주가 시(읍·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주는 특히 지리적 관계상 이러한 방공호의 건축이 특별히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의 방공호를 설치할 시(읍·면)의 의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④ 연방 집행원은 스위스 연방의 기업 및 면허받은 운송기업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건축상의 보호조치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한다.

2. 보조금 (Beiträge)

제 5 조 ① 연방 집행원은 명하여진 조치 및 임의로 행하여진 조치의 비용으로서 주의 재정력과 광산지역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연방, 주 또는 시(읍·면)의 보조금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건축물 및 시설이 초래할 이익을 보조금 확정시에 산정하여야 한다.

제 6 조 ① 연방은 제 2 조 제 1 항에 의한 건축조치의 비용으로 25 ~ 35 % 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주와 시(읍·면)는 보조

금의 총액이 70% 이상이 되도록 공동으로 35~45%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규정된 병원건축물 및 그 설비에 대하여는 연방이 55~65%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주와 시(읍·면)는 나머지 35~45%를 공동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 방공호 및 100인 이상의 인원을 특히 위험성이 많은 지역에서는 5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공공건물 내에 있는 방공호의 비용으로서 연방은 40~50%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60%까지를 지급한다.

④ 주와 시(읍·면)간의 보조금의 배정은 주법에 따라 정하여진다.

제7조 ① 제2조에 규정된 건축조치가 임의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연방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2조에 의한 건축의무가 존재하지 아니 하더라도 건축상 또는 기술상의 보호조치가 기존주택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연방의 보조금의 가액은 35~45%에 상당한 것으로 한다. 주와 시(읍·면)는 보조금의 총액이 80% 이상이 되도록 35~45% 이상을 공동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규정된 건축상의 보호조치가 주 및 시(읍·면)의 관할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연방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3. 최 소 요 건

- 제 8 조 ① 연방 집행원은 건축상의 보호조치가 충족하여야 할 최소요건을 결정한다. 개인 방공호에 있어서의 요건은 비용에 있어서 토지구입을 뺀 건축비용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보조금은 그것이 기술적 면에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초과비용으로서 지급된다.
- ③ 기존 주택의 건축상의 보호조치에 대하여는 필요한 건축물을 위한 보조금이 최소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4. 보 존

- 제 9 조 ① 방위시설의 소유자는 이 시설이 유지되고 사용될 것 및 그 시설이 언제나 최단기간내에 민방위에 기여될 수 있는 것을 배려하여야 한다.
- ② 연방은 유지비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수 용 (Enteignung)

- 제 10 조 ① 민방위에 있어서의 건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연방은 1930년 6월 20일의 수용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방은 이 권한을 주 또는 시(읍·면)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읍·면)는 비상암거, 비상통로 및 벽비상구가 규정되어

있는한 사인(私人)을 위하여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모든 경우에 약식절차 (abgekürzte Verfahren) 는 수용법 제 33 조 및 제 34 조에 따라 행하여진다.

6. 보 상 의 실 시

제 11 조 ① 의무자가 규정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는 주관할 관청의 비용으로 명하여진다.

- ② 보상의 실시로 발생된 초과비용에 대하여는 어떠한 연방의 보조금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7. 사 용 임 대 차 료 (Mietzins)

제 12 조 기존주택에 있어서의 방공호의 설치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관하여는 사용 임대인에 대한 초과급부로 간주된다. 다만, 임대인에게는 불이익의 발생이 고려되어야 한다.

8. 건 축 허 가

제 13 조 건축의무를 진 시(읍·면)에 있어서 및 보조금이 요청되는 임의의 보호조치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제 8 조 및 시행규정에서 의미하는 최소요건을 충족하고 관할관청이 승인한 경우에만 주 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9. 항 고

제 14 조 ① 시(읍·면) 관청의 비재산권적 성질의 명령과 결정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의 비재산권적 성질의 명령 및 결정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방의 법무 차관부에 30일 이내에 재항고되어야 한다.

10. 재산권적 청구권

제 15 조 ① 주 또는 시(읍·면)에 대한 재산권적 성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주 법에 의한 관할관청이 결정한다.

② 이 법 또는 연방 집행원의 집행명령에 의거한 연방의 또는 연방에 대한 재산권적 성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연방 민방위청은 소송물가액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방 민방위업무를 위한 항고위원회에 대한 30일 이내의 재항고를 제외하고 결정을 내린다.

③ 연방 집행원은 항고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정한다.

11. 형 별 규 정

제 16 조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시행규정 또는 개개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② 특별히 경한 경우에는 주무 주관청 또는 시(읍·면) 관청에 의한 징계로 형벌을 갈음한다.
- ③ 다른 법률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7 조 (형사소추) ① 위반행위의 소추 및 판결은 주가 책임을 진다.

- ② 동일한 형사판결과 정지결의 (Einstellungsbescchlüsse) 는 연방변호사회에 완전한 정본으로 무상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12. 시 행

제 18 조 이 법의 시행은 주의 관할사항으로 한다. 그 시행은 관할 관청을 정하고 소송절차를 명한다.

13. 연 방 의 감 독

제 19 조 ① 연방 집행원은 상급감독을 행하고 필요한 시행규칙을 정한다.

- ② 이 법에 의거한 임무는 그것이 연방의 관할사항인 한 법무치안부에 위임한다.

제 20 조 ① 연방 민방위청은 법무치안부의 시행기관으로 한다.

- ② 연방관청은 행정상 및 기술상의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 ③ 주, 시(읍·면) 및 개인 또는 연방의 행정관청과 영조물에 대한 감독권은 연방관청에 귀속한다.

14. 경 과 규 정

제 21 조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건축사업이 이 법의 시행시에 허가되어 건축작업과 동시에 개시되는 한 방공호의 비용으로 지급된다.

② 건축상의 방공호에 관한 1950년 12월 21일의 연방결의에 의한 보조금은 이 법의 시행시에 완성된 방공호의 비용으로 지급된다.

15. 사 행

제 22 조 ① 연방 집행원은 이 법의 시행시기를 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a. 1962년 3월 23일의 건축상의 보호에 관한 연방결의

b. 1962년 3월 23일의 민방위에 관한 연방법 제 88 조

c. 1949년 3월 30일의 스위스 군대의 행정에 관한 연방의회의 결의 제 166 조

③ 기존의 시행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적용되거나 대체되거나 폐지될때까지는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시행일 : 1964년 5월 25일

V . 이 스 라 엘 의 민 방 위 제 도

이스라엘의 민방위법

제 1 절 해석 (Interpretation)

제 1 조 (정의) 이 법에서 "민방위" (civil defence)라 함은 어떠한 공격이나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민간인 (民間人)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공격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다만 자위 (自衛) 수단 이외의 전투조치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HAGA"라 함은 제 2조에 의하여 설치된 민방위부 (民防衛部)를 말한다.

"보조기관" (auxiliary organisation)이라 함은 공공업무를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협회, 기업 또는 단체로서 국방상이 민방위상 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보상에 공고한 기관을 말한다.

"전쟁기간" (period of hostilities)이라 함은 외국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행위를 행하는 기간을 말한다.

"HAGA대연습" (manoeuvres)이라 함은 민방위 부사령관이 HAGA 대연습이라고 포고한 민방위부 또는 보조기관의 훈련 활동을 말한다.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공격시" (time of attack)라 함은,

1. 외국이 그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시기 및
2. 전시중 또는 HAGA 대연습중에 실시되는 비상경보 (the alarm signal)와 해제경보 (the all clear signal)와의 사이의 시간을 말한다.

"지방당국" (local authority)이라 함은 시(읍, 면) 당국 또는 지방의회를 말하며, 이러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방당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민방위규정" (civil defence rule)이라 함은 이 법률,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 및 이 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명령이나 지시를 말한다.

"지방당국의 장" (head of local authority)이라 함은 시(읍, 면)의 경우에는 시(읍, 면)장 또는 부시(읍, 면)장을 말하며,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을 말한다.

"군인" (soldier)이라 함은 1955년 군사재판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 2 절 민방위부 (Civil Defence Service)

제 2 조 (민방위부) 국가의 민방위를 조직 및 지휘하기 위하여 민방위부를 설치하며, 민방위부는 다음에 제기하는 권한을 가진다.

1. 국가 전역 또는 특정지역에 관한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이행

2. HAGA에 소속된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훈련, 장비, 부대편성, 민방위부대의 지휘계통과 징계제도 및 운영방법의 규정
3. 민방위 대원의 제복 또는 인식표(認識標)의 제정
4. 계약의 체결 및 토지와 동산의 취득
5.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 건물 및 시설의 건축과 이러한 건축물의 유지
6. 민방위분야에 있어서의 과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기관을 교육 및 지도하고 전시 또는 HAGA대연습기간중 이 보조기관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동원
7. 민방위사항에 관하여 정부 각 부처, 지방당국 및 사기업체(私企業體)와의 협조
8. 비상경보 및 해제경보의 제정과 이러한 경보의 운영
9. 주민에 대한 민방위훈련 및 이를 위한 주민의 장비
10. 건물의 위장관리, 공격을 받은 주민의 구조 및 민방위규정에 따른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업무의 이행
11. 전반적으로 또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방상의 승인 및 관계 당국의 협조하에 민방위에 관련되지 아니한 생명 및 재산의 구조행위

제 3 조 (HAGA 사령관) ① 국방상은 이스라엘방위군(the Defence Army of Israel)의 장교 1인을 HAGA 사령관으로 인명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 공포한다.

② HAGA 사령관은 HAGA의 행정을 통할하고 모든

소속원을 통솔하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모든 규칙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있어 HAGA의 이름으로 행위할 수 있다.

제 4 조 (전국평의회) ① HAGA 전국평의회 (National Council of HAGA) 는 HAGA 사령관의 자문기관이다.

② HAGA 전국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계기하는 자로 구성한다.

1. HAGA 사령관 이사령관은 전국평의회 의장이 된다.
2. 재무상, 보건상, 교육문화상, 경무상, 사회복지상, 노동상, 내무상 주택상 및 교통상이 각 해당성의 직원중에서 임명하는 대표 각 1인
3. 「예루살렘」시, 「텔, 아비브, 야파」(Tel-Aviv-Jaffa)시 및 「하이파」시의 대표로서 각 시의회에서 임명한 자.
4. 제 3호에 계기되지 아니한 시(읍, 면)의 대표로서 내무상이 이해관계 있는 지방당국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는 자 2인
5. 1941년 지방의회령(The Local Council)의 대표 1인으로서 내무상이 이해관계있는 지방당국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는 자
6. 이스라엘에 있는 「다윗의 붉은 방패」(Magen David Adom) 협회 집행위원회의 의장
7. 1959년 소방서법(The Fire-Fighting Services Law)에 의하여 임명되는 소방감(The chief Inspector of Fire-Fighting)
8. 부인단체(women's organization)의 대표로서 내무상이 이해관계 있는 부인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는 자 1인

제 5 조 (지구 HAGA 사령관) ① HAGA 사령관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전국을 수개의 HAGA 지구 (地区) 로 나누고 각 지구마다 지구 HAGA 사령관 (The Districe HAGA Commander) 을 임명한다.

이 법에서 " 지구 HAGA 사령관 " 이라는 말은 관제지구의 HAGA 사령관을 말한다.

② 각 지구 HAGA 사령관은 관할지역내의 민방위에 관한 조직 및 행정을 통할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1. 당해 지구내의 모든 HAGA 소속원을 통솔하고,
2. 전시중 또는 HAGA 대연습기간중 당해지역내의 보조기관을 동원할 수 있으며
3. 민방위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위임된 기타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 6 조 (지구평의회) ① HAGA 의 지구평의회 (The District Council) 는 각 HAGA 지구내에 설치하며 당해 지구 HAGA 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② 지구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써 구성한다.

1. 지구 HAGA 사령관 이는 당해 평회의 의장이 된다.
2. 보건상, 교육문화상, 경무상, 사회복지상, 내무상 및 교통상이 각 관할성내의 직원중에서 임명하는 대표자 각 1 인 다만, 제 6 조 A 에서 말하는 HAGA 지휘부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구에 있어서는 내무상이 내무성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는 대표 1 인만으로 한다.
3. 지구내에 있는 지방당국의 대표 이러한 지방기관 및 대표의

수는 내무상이 결정한다.

4. 당해 지구내에 있는 Magen David Adom 협회지부의 대표로서 국내 MDA 협회 집행위원회의장이 임명하는 자 1인

5. 소방감이 임명하는 당해 지구내의 소방기관의 대표 1인

6. 당해 지구내의 부인단체대표로서 내무상이 부인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는 대표 1인

③지구 HAGA 사령관은 지구평의회와 동의를 얻어 당해 지구내에 있는 일반대중 및 시설의 민방위참여 또는 보조기관의 교육, 지도, 조정에 관한 업무를 지구평의회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와같이 부여되는 업무는 당해 위원이 대표하는 장관 또는 기관의 관할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6 조 A (HAGA 관구) ① HAGA 사령관은 2개 이상의 HAGA 지구를 합하여 하나의 HAGA 관구 (command)를 만들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HAGA 관구사령관은 이스라엘방위군장교로써 보한다.

② HAGA 관구사령관은 그의 관할내에 있는 HAGA 지구에 관하여 HAGA 지구사령관으로서의 임무 및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며 그 외에도 HAGA 사령관이 지시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③각 HAGA 관구에 HAGA 관구평의회 (HAGA Command Council)를 설치하고 이 관구평의회는 HAGA 관구사령관의 직속자문기관으로서 다음에 제기하는 자로 구성한다.

1. HAGA 관구사령관. 이는 이 평의회 의장이 된다.

2. 관구내에 있는 HAGA 지구 사령관

3. 보건상, 교육문화상, 경무상, 사회복지상, 노동상, 내무상, 및 교통상이 각 해당성의 직원중에서 임명하는 대표 각 1인
4. 당해 관구내에 있는 지방당국의 대표, 이러한 지방당국 및 대표의 수는 내무상이 결정한다.
5. 이스라엘에 있는 MDA 집행위원회회장이 임명하는 당해 관구내의 MDA 협회제부의 대표 1인.
6. 당해 관구내에 있는 소방기관의 대표로서 소방감이 임명하는 자 1인.
7. 당해 관구내에 있는 부인단체의 대표로서 내무상이 부인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는 자 1인.

④ HAGA 관구사령관은 당해 관구 평의회회 동의를 얻어 일반대중 또는 공공기관을 민방위에 참여시키거나, 당해 관구내에 있는 보존기관을 훈련 또는 지도하거나 또는 민방위활동을 조정하는 임무를 이 평의회위원회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임무는 이를 부여받은 위원이 대표하는 장관 또는 기관의 관할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6 조 B (평의회회 절차) ① 전국평의회, 관구평의회, 지구평의회, 및 이들 각기의 위원회 (committees)의 업무 및 심의절차와 의 결정적수에 관한 규정은 규칙 (Regulation)으로 정한다.

② 전국평의회, 관구평의회, 지구평의회 또는 이들 각기의 위원회의 행위는 행위 당시 결원 (欠員)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써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 7 조 (HAGA 의 기본임무) 국방상은 HAGA 의 특정임무를 기본임무 (essential duty) 로 선언하고 국회의무안보위원회 (The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Committee of the Knesset) 의 승인을 얻어 HAGA 의 기본임무를 필수임무 (a vital duty) 로 선언할 수 있다.

제 8 조 A (기본임무 또는 기동연습을 위한 소집통고)

① HAGA 사령관은 전국평의회 의 자문을 거쳐 HAGA 지구사령관이 HAGA 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거나 HAGA 기동연습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일을 하거나 생활하는 자를 소집할 수 있도록 명령 (order) 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은 국가 전역에 걸쳐, 또는 특정한 HAGA 지구가 그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의한 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이 명령이 시행되는 지역의 HAGA 지구사령관 또는 이로부터 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장교는 당해 지역내에서 일을 하거나 생활하는 자에게 HAGA 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도록 배치되었다는 통고서 (이하 "배치통고" (posting notice) 라 한다) 를 발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치통고를 받은 자를 HAGA 의 기본임무수행 또는 기동연습을 위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전시를 제외하고는,

1. 누구든지 1948 년 법률 및 행정명령 (The Law and Administration Ordinance) 에서 말하는 휴가기간 중에는 이 조에 의한 어떠한 근무에도 소집되지 아니하며,

2. 누구든지 월간근무 (月間勤務 : The monthly service)로서는 1개월에 3시간, 연간근무 (the annual service)로서는 1년에 3일을 초과하여 소집되지 아니한다.

2-2. 기본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배치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소정기간 내에 성명, 연령, 직업, 경력, 주소, 사업소 또는 직장, 가족사항, 1개월 이상의 출국 및 귀국에 관한 명세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 조에 의한 연간근무는 계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HAGA 지구사령관은 이 근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HAGA 사령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특정인 또는 특정범위에 속하는 자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한하여 2기(期)로 구분

2. 관계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기 이상으로 구분

④이 조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는 관보상의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서 "장교" (officer)라는 말에는 HAGA의 장교계급보유자도 포함한다.

제 7 조 B (기본임무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HAGA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도록 배치되거나 소집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기본임무를 수행하거나 HAGA 기동연습에 참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 이스라엘 방위군의 정규군인 또는 예비군인

2. 이스라엘 경찰

3. HAGA의 용군

4. 16세 이하 또는 62세 이상의 남자

5. 17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의 여자

6. 임신중의 임부 및 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녀

7.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녀 또는 이를 대신하여 이 자녀를 맡고 있는 자

8. 5세 이상의 자녀를 여러명 가진 부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자.

② 누구든지 거소(居所) 또는 직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당국의 관할범위 외에서는 HAGA의 기본임무를 배치되거나 소집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기본임무를 수행하거나 HAGA 기동 연습에 참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소 또는 직장이 있는 지역의 지방당국의 관할범위 외에서는 필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또는 HAGA 기동연습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인원을 배치 또는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거소 또는 직장이 있는 HAGA 지구 외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배치 또는 소집하지 못한다.

제 7 조 C (배치통고의 취소 또는 소집해제에 관한 신청)

① HAGA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도록 배치된 자는 HAGA 지구평의회에 배치통고의 취소를 출원하고 이 평의회로부터 신청서제출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HAGA 기동연습에 참가하거나 HAGA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도록 소집된 자는 소집일로부터 15일(전시중에는 5일) 이내에 HAGA 지구 평의회에 대하여 이 소집의 해제 또는 연기를 출원하고 이 평의회로부터 신청서 제출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지구평의회 또는 당해 목적을 위하여 선임한 위원회는 교육, 정착(定着), 국민경제, 건강, 가족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 등은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을 허가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전시중에는 이 지구평의회 또는 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하여야 한다.

④ 건강상의 이유로 이 조에 의하여 제 7 조 A 제 2 항의 통고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이 신청과 동시에 국방상의 자문을 거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본임무 수행에 관한 적합성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신체검사의 수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무수행의 부적합성이 판정된 경우에는 통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지구평의회 또는 전술한 위원회는 신청자 및 당해 HAGA 지구 사령관에게 이 신청에 관한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D (소집에 응소할 의무) 제 7 조 A 제 2 항에 의한 소집에 응소할 의무는 소집이 해제 또는 연기를 위한 신청제출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때까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시에는 누구든지 이 신청에 대한 허가가 결정되지 아니

하는 한 이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7 조 E (전시중 급여) ① 제 7 조 A에 의하여 기본임무를 수행하거나 보조기관의 일원으로 이 보조기관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면서 HAGA 지구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민방위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시중 전술한 임무수행에 관하여 1959년 예비군(보상)법 (The Reserve Service (Compensation) Law) 제 3조 제 2항에 의한 명령으로써 그 당시 비상근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된 급여금을 국고로부터 지급받는다. 그러나 전술한 자가 고용주로부터 이러한 근무일수에 대한 노임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고용주는 이 자가 이러한 근무에 관하여 국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에 지급할 노임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국방상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HAGA 및 그 보조기관내의 계급을 이스라엘 방위군의 계급에 준하여 채택할 수 있다.

제 8 조 (HAGA의 구성원) ① HAGA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1949년 방위군법 (The Defence Service Law)에 의한 예비군복무를 HAGA에서 이행하도록 지시받은 이스라엘방위군에 소속된 예비군
2. HAGA에 지원입대한 자
3. 제 7조에 의하여 HAGA의 기본임무가 부여된 자
4. 예비군지원자로서 HAGA에 근무하도록 파견된 자
5. 이스라엘방위군의 정규군인으로서 HAGA에 근무하도록 파견된 자

②누구든지 임무가 명시되어 있는 지원병신고서에 서명한 후가 아니면 HAGA에 지원입대하지 못한다.

③HAGA에 지원입대한 자가 이로부터 퇴역할 수 있는 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HAGA 요원은 합법적으로 그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며 상관의 정당한 명령 또는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1호에 의하여 HAGA요원이 된 자의 경우에 있어서 제4항은 1949년 방위군법의 규정에 추가하여 적용되며 전술한 법의 목적을 위하여 HAGA는 이스라엘방위군의 예비부대(reserve unit)로 보며 HAGA장교의 계급은 방위군장교의 계급으로 본다.

⑥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HAGA 요원은 그의 임무 수행에 따른 작위(作為)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정부직원으로 본다.

⑦1949년 전쟁상이자(수당 및 직업재활)법 및 1950년 전몰군인가족(연금 및 직업재활)법은 HAGA의 임무수행중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요원 및 그의 친족에 대하여 준용하며 전술한 법률의 목적을 위하여 HAGA에서의 근무는 군복무로 보고 HAGA의 임무종료일은 군복무로부터의 전역일로 본다.

제8조 A(참조사항) 어떤 제정법에서 1959년 상이군인(연금 및 직업재활)법 또는 1950년 전몰군인가족(연금 및 직업재활)법을 참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반대 규정이 없는한 이 법 제8조도 이 참조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 8 조 B (보조기관 요원에 대한 이 법의 준용) 보조기관의 요원이 전시중 또는 HAGA 지구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HAGA 기동연습 기간중 민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 8 조 제 4 항, 제 6 항 및 제 7 항과 제 8 조 A, 제 9 조 및 제 24 조는 이 자를 HAGA 요원으로 간주하여 준용하며, 제 8 조 제 7 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목적을 위하여 이 요원의 근무는 군복무로 보고 이 근무의 종료일은 군복무로부터의 전역일로 본다.

제 8 조 C (손해배상의 책임) 보조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이 기관의 보유장비를 운용하도록 지시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장비는 1940 년 보상 (방위) 령 (The Compensation (Defence) Ordinance) 에 의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또는 이익 손실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하여는 정부가 이 영에 의한 비상권한에 의하여 점유한 장비로 본다.

제 9 조 (HAGA 요원의 특별권한) ① HAGA 사령관 HAGA 지구사령관 및 HAGA 요원으로서 HAGA 사령관 또는 HAGA 지구의사령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자는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민방위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민방위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하거나 또는 실제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가옥이나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전시중 또는 HAGA 기동연습 기간중 근무중인 HAGA 요원은,
1. 제 1 항에 열거한 상황 또는 목적하에 어떠한 가옥이나 건물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2. 민방위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③ HAGA 요원은 공격중 피공격지역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역내의 인명(人命)을 보호하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 9 조 A (경보기 및 통신시설의 설치) HAGA 사령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국방상이 규칙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경보기, 통신시설 및 동력시설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으며, 기타의 통신시설 및 동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보상지급에 관하여는 1940년 보상(방위)령 제 3 조 제 1 항 제 3 호를 준용한다

제 9 조 B (구축을 위한 수송봉사) ① 전시중 HAGA 사령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HAGA 요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그 당시 차량을 운전하는 자에게 지시받은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받은 방법으로 피공격 지역내에 있는 부상자를 운반하거나 당해 지역내에 있는 사람 또는 재산을 구출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법정(法定)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는 이 법정(法定)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수송봉사(transportation service)에 차출된 차량은 이 봉사기간중 보상지급에 있어서는 1940년 보상(방위)령에서 말하

는 비상당국 (the emergency powers)에 의하여 수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 8 조 제 6 항 및 제 7 항과 제 8 조 A의 목적을 위하여 수송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는 HAGA의 요원으로 보며, 이자의 봉사는 HAGA의 임무로 본다.

④ 이 조에서, "차량" (vehicle)이라 함은 교통령 (The Traffic Ordinance)에서와 동일한 의미이다.

제 10 조 (HAGA)의 예산) ① HAGA의 연간예산 (이하 "예산"이라 한다)은 국고 및 지방당국에서 부담한다.

② HAGA 예산에 대한 국고의 부담액은 매년 재무상의 권고에 입각하여 국회재정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HAGA 사령관은 전국평의회 의 자문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한다.

④ 전술한 예산안은 국방상, 내무상 및 재무상의 승인을 얻으며 법적기속력 있는 유효한 예산으로 되며 HAGA는 이 예산에 일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은 재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일지출항내에서 어느 목(目)의 예산을 다른 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⑤ 국고부담액을 공제한 후 예산지출에 소요되는 잔액은 내무상에 의하여 지방당국간에 배부된다.

각 지방당국에 배분되는 금액은 이에 관한 통고가 당해 지방당국에 발하여진 날로부터 HAGA에 대한 이 지방당국의 채무를 구성한다.

제 10 조 (HAGA 의 예산) ① HAGA 의 연간예산 (이하 "예산"이라 한다)은 국고 및 지방당국에서 부담한다.

② HAGA 예산에 대한 국고의 부담액은 매년 재무상의 권고에 입각하여 국회재정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HAGA 사령관은 전국평의회 의 자문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한다.

④ 전술한 예산안은 국방상, 내무상 및 재무상의 승인을 얻으면 법적기속력 있는 유효한 예산으로 되며 HAGA 는 이 예산에 일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은 재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일지출항내에서 어느 목(目)의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⑤ 국고부담액을 공제한 후 예산지출에 소요되는 잔액은 내무상에 의하여 지방당국간에 배부된다.

각 지방당국에 배분되는 금액은 이에 관한 통고가 당해 지방당국에 발하여진 날로부터 HAGA 에 대한 이 지방당국의 채무를 구성한다.

제 10 조 A (지방 HAGA 의 예산) ① 지방당국은 제 10 조에 의한 HAGA 예산에 대한 부담금 이외에 내무상이 매년 HAGA 사령관의 재청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 지방당국의 민방위의 필요조건 및 이러한 재정 부담의 능력을 고려한 후 정하는 관할지역내의 민방위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그 예산내에 포함시켜야 하며 지방 HAGA 예산의 내역은 HAGA 지구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당해 지방당국이 결정한다

②지방당국이 회계년도말까지 내무상이 지시한 바에 따라 지방 HAGA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무상은 전술한 미지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부에 HAGA에 지불할 채무로서 기장(記帳)하도록 지시하고 이 지시를 발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 채무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HAGA에 지불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HAGA가 이 채무를 지불받은 때에는 HAGA는 이 채무를 지불한 지방당국의 민방위경비를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지방당국은 HAGA 지구사령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방 HAGA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절 대피소 (待避所)

제 11 조 (정의) 이 장에서

“사업소” (business premises)라 함은 10인 이상이 동시에 일을 하거나 20인 이상의 늘 출입하는 작업장 또는 사업소로서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영구건물을 말한다.

“가옥” (house)이라 함은 건축상 타건물과 분리되고, 사업소가 아닌 사람의 주거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영구건물을 말한다.

“사업주” (事業主) : Business Owner 라 함은 사업소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소유자”라 함은 가옥 또는 기타 건물에 관하여는 이로부터의 수입을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자 또는 자기자신의 권리로 서 또는 대리인이나 수탁자로서 이 가옥이나 건물에서 생기는 수입을 수취하는 자를 말하며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25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가옥이나 기타건물에 관하여는 임차인을 말한다.

“관할관청” (competent authority) 이라 함은 HAGA사령관, HAGA 지구사령관 또는 HAGA사령관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3장의 목적을 위한 관할관청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피소” (shelter)라 함은 관할관청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대피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축물 또는 기타 장소를 말하며, 이러한 계획은 전반적으로 또는 특정부류의 대피소나 개별

대피소에 있어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적 건축명세서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승인받지 못한다.

“공중대피소”(公衆待避所: public shelter)라 함은 개별가옥이나 사업소용이 아닌 대피소를 말한다.

“공중대피소”라 함은 공격중 일반대중을 위하여 일시적 피난소로 사용하기 위한 대피소 이외의 장소를 말한다.

“토지”(premises)에는 공지도 포함된다.

“전차인”(轉借人: subtenant)이라 함은 이 부에 의한 참가의무가 우선 주된 차가인(借家人)에게 떨어질 때에 전차계약에 의하여 전차기간이 협의에 의하여 수시로 연장되었거나 1955년 차가인보호법(the Tenants' Protection Law)에 의하여 연장되었거나의 여부를 불문하고 적어도 3년간 계속하여 당해가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제 11 조 A (국가에 대한 적용가능성) ① 제 3 장의 규정은 HAGA 지역내에 소재한 가옥 및 사업소에 관하여 국가도 기속한다.

다만, 제 13 조 및 제 16 조의 규정은 이스라엘 방위군 또는 이스라엘 경찰이 점유하는 가옥 및 사업소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HAGA 지구 평의회위원장이 이 평의회 또는 이 평의회가 선임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국가 기관이 점유하는 가옥이나 사업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 조에서 “HAGA 지역”이라 함은 국방상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HAGA에 위탁한 지도상에 HAGA 지역으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 11 조 B (대피소에 관한 설계명세서) 관할관청은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적 설계명세서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한, 대피소의 건설 또는 확장에 관한 계획을 승인하지 못한다.

이 조에 의한 규칙은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국방상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관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 12 조 (지방당국에 대한 지시) 관할관청은 당해 관청의 관할지역 내에 있는 지방당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할 수 있다.

1. 이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내에 지정하는 수량의 공중대피소를 건설하고 이러한 대피소를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할 것.

2. 가옥 및 사업소의 소유자가 민방위규정에 따라 대피소를 건설 및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

제 13 조 (공중피난소) 지방당국이 어떤 건물 또는 일부가 공중피난소로서 이용하기에 적합하거나, 이 건물에 관한 건축 또는 개발 계획이 완성되면 이에 적합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이 건물을 공중피난소 용건물로 지정하겠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지방당국이 이러한 건물을 공중 피난소로서 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수리 및 개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술한 통고서내에 지방당국이 이행할 수리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지방당국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지방당국은 또한 이러한 건물을 공중피난소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모든 추가경비도 부담한다.

② 지방당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전술한 통고서를 발하지 못한다.

관할관청이 그러한 건물이 수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지방당국이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건설할 책임이 있는 공중대피소에 대용(代用)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경우

2. 건물을 공중피난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수리 및 개조로 인하여 이 건물의 점유자가 통고 이전에 사용하던 목적을 위하여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

③ 전술한 바와 같이 통고서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다음에 제기하는 이유에 입각하여 HAGA 지구평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사업이나 시설로서 사용할 예정이며 따라서 이 건물을 공중피난소로 사용한다면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2. 당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대피소의 건설을 위하여 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④ 전술한 이의신청은 지구평의회 위원중에서 이 지구평의회가 선임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심사한다. 이 위원회는

1.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며

2. 결정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3. 조사위원회령(the Commissions of Enquiry Ordinance)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위원회에 부여되는 모든 권한을 가지며,

4. 통고를 확인 또는 취소하거나, 특정조건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고,

5. 자체의 절차 및 업무규정을 제정한다.

⑤ 어느 건물에 관하여 통고가 발하여지고, 이 통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구평의회 소속 위원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피난소로서의 이 건물의 효율적 사용을 해치는 어떠한 개조나 수리등을 행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행하도록 허가하지 못한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통고가 발하여지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통고가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공중피난소로서 지정된다.

⑦ 건물이 공중피난소로서 지정된 경우에는 이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의무를 진다.

1. 지방당국 또는 HAGA 사령관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로 하여금 통고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 건물에 대한 필요한 수리 및 개조를 이행하도록 허락할 의무

2. 지방당국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피난소로서의 이 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리, 개조 또는 기타 사항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지 아니할 경우

제 13 조 A (건물을 공중피난소로서 지정할 수 있는 HAGA 사령관의 권한) ① HAGA 사령관은 지방당국에 대하여 공중피난소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관하여 전조에서 말하는 통고

를 발하고 이러한 건물을 공중피난소로 만드는데 필요한 수리 및 개조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지방당국이 소정기간내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HAGA 사령관은 지방당국을 대신하여 직접 이 통고를 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 지방당국은 당해 건물에 관하여 통고서에 명시된 수리 및 개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당국이 상당한 기간내에 수리 및 개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HAGA 사령관은 이의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수리 및 개조의 비용은 HAGA 에 대한 지방당국의 부채가 되며, 따라서 제 10 조 A 제 2 항이 이 비용에 관하여 준용된다.

③ HAGA 사령관이 특정건물을 공중피난소로서 지정하겠다는 통고를 발한 경우에는 이 통고에 대하여 제 13 조를 준용한다.

④ 이 조는 제 13 조에 의한 지방당국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한다.

제 14 조 (가옥 및 사업소내의 대피소 건설) ① 모든 가옥은 그 내부 또는 인근에 우선적으로 이 가옥의 거주자가, 그 다음으로 이 가옥을 자주 출입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두어야 한다.

② 모든 사업소는 그 내부 또는 인근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소에 고용된 자가 그 다음으로 이 사업소를 자주 출입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두어야 한다.

③ 전적으로 또는 사업소로서 사용할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나, 이러한 기존건물에 관한 증축허가는 다음에 제기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건축관계법에 의하여도 허가되지 아니한다.

1. 허가를 받으려는 건축설계에 당해 건물 또는 부대건물을 위한 대피소의 건설 또는 증축되는 부대건물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기존 대피소를 확장하는데에 관한 계획이 구비되어 있거나, 이 조에 의하여 대피소의 건설 또는 확장의 의무가 면제될 경우

2. 규칙에 의하여 범위가 정하여지는 가옥 또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대피소로 통하는 계단의 건축 또는 이 계단 이외에도 대피소로 통하는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로의 건축이 전술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적 건축명세서에 일치하는 것을 증명할 경우, 그리고, 건축설제도에 대피소의 건설 또는 확장에 관한 계획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있어 이러한 대피소는 공격시에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피난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기존 가옥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 가옥의 소유자는 가옥의 내부 또는 인근에 지방당국이 지시하는 기간 및 장소내에 대피소를 건설할 의무를 진다.

⑤ 기존사업소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업소의 소유자는 사업소의 내부 또는 인근에 지방당국이 지시하는 기간 및 장소내에 대피소를 건설할 의무를 진다.

사업소의 소유자는 이 사업소가 소재한 건물내에 대피소가 건설되어 있고, 이 대피소를 당해 건물이나 다른 사업소의 점용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술한 의무를 진다.

⑥ 가옥의 소유자 또는 사업소 소유자는 대피소를 유사시 그 용도(用途)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지방당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리 또는 개조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수리 또는 개조를 이행하는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당국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1. 단독가옥의 소유자에게 공동대피소의 건설을 조건으로 가옥별 단독대피소의 건설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으며 이 당국이 당해 가옥이 소재한 지역의 상황이 이를 허락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없이 면제하여 줄 수 있다.

2. 사업소의 소유자가 지방당국에 대하여 이 사업소가 소재한 건물의 내부 또는 인근에 당해 사업소의 직원뿐만 아니라 이 사업소를 자주 출입하는 자들이 피난소로서 이용할 수 있는 대피소가 있고, 이 사업소로 부터 당해 대피소에의 출입이 용이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 경우에는 이 사업소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피소의 건설의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3. 증축되는 가옥 또는 사업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황 등이 이를 허락하고, 또한 이 가옥 또는 사업소의 내부나 인근에 기존하는 대피소가 이러한 증축된 가옥이나 사업소에서 일하거나 이곳을 자주 출입하는 자들을 위하여 피난소로서 이용될 수 있고 이 대피소로의 출입이 용이하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이 증축된 가옥이나 사업소의 소유자로 하여금 제3항에서 규정한 대피소의 건설 또는 기존 대피소의 확장이라 의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당국이 다수의 가옥을 위한 공동대피소를 건설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이 가옥의 소유자들이 가옥 인근에 대피소를 건설할 의무를 지는 공동 소유자인 것처럼 간주하여 준용한다.

⑨ 1. 이 법에 의하여 어느 지상(地上)에 대피소를 건설, 수리 또는 개조할 의무를 지고, 대피소의 건설용으로 지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타인이 이 지상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행할 수 있으며, 어떠한 법령이나 협정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출원할 수 있고, 전술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어느 토지에도 들어갈 수 있다.

2. 어느 지상에 대피소를 건설, 수리 또는 개조할 의무있는 자가 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방당국이 발하는 대피소의 건설,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지시서는 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송부하거나 양자에게 송부하며, 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고가 송달될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지시에 대하여 HAGA 지구평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당국의 지시가 승인된 경우에는, 대피소를 건설, 수리 또는 개조할 의무있는 자는 제1호에서 말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 이 조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9항에 의하여 어느 토지상의 출입이 허가된 자는 이 토지

에 들어가기 전에 이에 대한 토지점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당국의 장이 대리인으로 지명한 지방당국의 직원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토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11) 전술한 바와 같이 어느 토지를 출입하는 자는 이 지상에 있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H A G A 사령관은 지방당국에 대하여 단독가옥소유자 또는 사업소의 소유자에 의한 대피소의 건설 및 유지에 있어서 제 4항 제 5항 및 제 6항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지방당국이 소정기간내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찰관청은 당해 지시의 이행을 위하여 이 지방당국에 대신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4 조 A (공지상의 건축) 제 13조에 의한 통고 또는 제 14조에 의한 지시가 발하여진 토지가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이러한 통고 또는 지시의 송달은 이 토지상에 가옥이나 사업소를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소정의 건축허가를 얻고 이 허가사항을 지방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한다.

제 14 조 B (참호파기) ① 국방상은 국회의무안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HAGA 지구사령관이 민방위를 위한 참호파기(trench-digging)에 인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집에 관한 조건을 이 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집된 자가 업무수행중 또는 임무수행의

결과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자는 1966년 국경희생자(원호) (the Border Victims (Benefits Law)에서 말하는 국경희생자로 보며, 이 상해는 이 법에서 말하는 국경상해(border injury)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정되는 규칙에 의한 국방상의 지시 및 참호파기를 위한 소집은 관보상의 공고로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HAGA 지구사령관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공고 방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5 조 (대피소의 사용) ①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공격중 피난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피소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어느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대피소로 이용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 토지가 타인에 의하여 공격중 피난소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될 것을 알거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다른 용도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이 토지를 매매, 임대차, 위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처분하에 두지 못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위법행위를 범한 자가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매매문서에서 이 토지가 대피소로 사용될 예정이며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러한 문서 또는 등본이 이 토지가 타인에게 양도되기 전에 타인에게 송부되었으며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는 하나의 변호가 된다.

④ 제 2 항에 의한 금지에 위반하여 대피소를 타인의 처분하에 두는 협정은 무효이며, 이 협정의 각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수취한 것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며, 현물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 협정이 매매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매매의 타부분이 분리 가능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정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에 따라 제 2 항에 의한 금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협정의 부분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대피소를 파괴하지 못한다.

⑥ 대피소인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공격중 그 장소 근방에 있는 자가 이 대피소에 들어가서 공격종료시까지 거기에 머무르도록 할 의무를 진다.

⑦ HAGA 사령관은 공중대피소 또는 공중피난소의 사용에 관한 지시 및 대피안내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시는 관보에 공고할 필요는 없으나 전술한 장소의 입구 또는 내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 16 조 (가옥용대피소로 예정된 토지에 관한 규정) ① 지방당국이 가옥용 대피소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이러한 대피소를 건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당국이 이러한 대피소를 건설하려면 당해 토지가 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지방당국은 이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소정 기간내에 이를 비우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지시의 송달일로 부터 14일 이상으로 한다.

전시중 전술한 바와 같은 지시는 더 이상 항소하지 못하는
치안법원의 퇴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지방당국은 토지점유자가 토지를 비울 당시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대용설비 (alternative accommodation)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한, 점유자가 거소 (居所)나 사업소로서 사용하는 토지를
비우라고 지시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조건은 점유자의 거소 또는 사업소의 일부를 구성
하는 토지로서 이 부분의 철거가 그의 생활상태 또는 사업운영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당국과 점유자가 대용설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자기 치안법원에 이에 대한 판정을 출
원할 수 있으며, 치안법원은 점유자로 하여금 비우게 되는 토지
의 용도에 상당히 적합한 대용 토지를 이용하게 하거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치안법원은 점유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만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도록 판정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토지점유자의 합법적 요구와 민방위의 필요를 모두 참작하여
야 한다.

2. 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대용토지가 비워지게 되

는 토지보다 면적이 더 적거나 이용이 더 불편하다는 사실은 전술한 대용토지가 비워지는 토지의 용도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⑤ 가옥내의 있는 토지가 제 2 항에 의한 지시에 따라 비워지는 경우에는 이 가옥의 잔여부분의 차가인(借家人)은 가옥의 소유자가 비워지는 토지에 관하여 수취할 수 없었을 임차료를 가옥주에게 지불할 의무를 진다.

⑥ 토지가 대피소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가옥소유자는 이러한 토지를 대피소가 건설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킬 의무를 지며, 전에 이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제 2 항에 의한 지시에 따라 이를 비웠던 자는 이 토지가 대피소로 이용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먼저 그에게 제공된 대용토지를 비운 다음 이를 다시 점유할 수 있다.

제 17 조 (권리의 포기) ① 공중피난소로 사용될 예정이거나, 제 16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러한 취지의 통고가 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토지를 비운후 이를 서면으로 지방당국 및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토지에 관한 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포기의 통지 송달일을 권리의 포기일로 보고, 이러한 통지가 지방당국과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다른 날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더 늦은 날자를 권리포기일로 본다.

② 점유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 점유자는 권리포기일 이후에는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소유

자에게 임차료 또는 기타의 대가(對價)를 지불하도록 부과된 의무로부터 면제되며 권리포기일 이전에 소유자에게 임차료 또는 기타의 대가를 선불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이러한 임차료 또는 기타의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소유자 및 점유자는 권리포기일로 부터 계약에 의한 쌍무적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이 호의 규정은 권리포기일 이전에 발생한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8 조 (경비의 분담) ① 가옥소유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피소를 건설하거나 이를 수리 또는 개조함에 있어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가옥의 임차인으로 부터 다음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1. 1945년 7월 1일 이전에 완공된 가옥의 경우에는 비용의 50%

2. 이 법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1945년 7월 1일 이후에 완공된 가옥의 경우에는 비용의 25%

3. 1945년 7월 1일 이전에 완공된 가옥으로 1945년 7월 1일 이후에 층(層) 또는 기타 부분이 증축된 가옥의 경우에는 비용은 처음에 건축된 부분의 임차인과 그 후에 추가된 증축 부분의 임차인 간에 거실(居室)의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데 전자는 50%, 후자는 25% 씩 부담한다.

② 대피소를 건설하거나 유지함에 있어 가옥소유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하여 가옥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지

방당국이 확인하는 금액을 실제적 비용으로 본다.

제 19 조 (분담금 및 잡칙) ① 차가인이 제 16 조 제 5 항 및 제 18 조에 의하여 가옥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당해 가옥내의 거실수에 대한 차가인이 점유한 거실수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총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정한다.

2) 분담금의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 16 조 제 5 항에 의한 분담금은 집세와 함께 그리고 이와 비슷한 분할별로 지불한다.

2. 제 18 조에 의한 분담금에 있어 비용에 관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가옥 소유자로 부터 대피소의 건설, 수리 또는 개조가 완공되었다는 내용과 경비의 총액 및 차가인의 분담금을 명시한 통지서를 등기 우편에 의하여 수취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다.

3. 제 18 조에 의한 분담금으로서 동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을 판정하는 지방당국의 통고서를 수취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분담금의 미지불(未支払)은 임차로의 미지불로 본다. 다만, 차가인이 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관한 공판이 개시 되기전에 그의 분담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이는 퇴거의 이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자택에서 거주하거나 실제로 자택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가옥 소유자는 이 가옥의 차가인이 지불하는 분담금의 산정(算定)을 위하여 차가인으로 본다.

⑤ 집을 바운 차가인은 가옥소유자로 부터 제18조에 의하여 지불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가옥소유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집의 새로운 차가인으로 부터 분담금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이 분담금은 새로운 차가인에 관하여 이 차가인이 이 가옥의 차가인으로 있는 동안 이 가옥의 대피소를 건설하는데 지불된 비용에 대한 분담금으로 본다.

⑥ 다수인이 가옥 또는 사업소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이에는 1961년 협동주택법 (the Cooperative Houses Law)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도 포함된다)에는, 이 법에 의한 의무는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공동으로 또 개별적으로 부과되며, 각 자는 가옥 또는 사업소내에서의 그의 배당분에 따라 지불하여야 될 금액을 초과하여 전술한 공동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초과지불금에 관하여 나머지 공유자로 부터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원칙은 가옥 1동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에 준용한다.

⑦ 사업소가 아닌 공장 또는 영업소로서, 그 소유자가 단독대피소를 건설할 의무를 지는 장소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이 장소의 점유자는 차가인으로 보며 이러한 차가인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이 공장 또는 영업소의 지상이나 지하에 있는 거실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이러한 거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당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 건물의 임차인이 분담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고, 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차인(轉借人)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 이 전차인은 이 분담금중 자기의 할당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할 의무를 진다.

2. 이 전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전차인의 할당금은 이 주택내에 있는 거실 총수에 대한 이 전차인이 점유한 거실수의 비율에 따라 임차인의 분담금에 대한 비율에 의한다.

3. 이 전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전차인의 할당금은 제 2호에 의한다. 다만, 제 7항에서 규정한 산출방법은 거실수를 기준으로 하는 산출방법으로 대응된다.

4. 제 2항, 제 3항 및 제 5항의 규정은 임차인을 가옥소유자로 전차인을 임차인으로 간주하여 전차인의 할당금에 대하여 준용한다.

⑨ 지방당국은 공동대피소의 건설 및 유지에 관한 비용에 있어 제 14조 제 8항의 적용을 받는 가옥소유자의 할당금과 제 16조에 의하여 가옥중에서 비워지는 건물에 관하여 가옥소유자가 지불하여야할 금액을 결정하며, 이러한 가옥의 소유자는 그에게 할당될 비용을 제 18조 제 2항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또 건물을 비우기 위하여 그가 지불한 금액을 제 16조에 의하여 비우게된 건물의 임차료로 간주하여, 그가 지불한 분담금을 차가인으로 부터 변상 받을 수 있다.

제 19조 A (공중피난소 및 대피소내의 장비) ① 국방상은 국회의 무안보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써, 공중피난소의 점유자

및 대피소의 소유자로 하여금 장비를 비치하고,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며, 공중피난소 또는 대피소의 출입구 밖에 적당한 간판을 부착하고, 이러한 간판을 적절한 상태로 보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간판의 형태 및 위치를 규정할 수 있다.

② 공중대피소 또는 공중피난소에 관하여 이 조에 의한 제반 경비는 지방당국이 부담한다.

공중피난소의 점유자가 부담한 전술한 경비는 지방당국에 대한 이 점유자의 부채에서 생각한다.

③ 공중피난소의 점유자는 장비 및 간판에 관하여 무상수취인(無償受取人: gratuitous bailee)의 책임을 진다.

④ 공중대피소 이외의 대피소의 경우에는, 이 대피소를 이용하는 가옥의 소유자 및 차가인은 이 조에 의한 장비의 취득비용은 이 대피소를 건설할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하며, 제 20 조 내지 제 20 조 표의 규정은 장비의 취득을 제 20 조에서 말하는 주요사업으로 간주하여 준용한다.

장비의 소유권은 대피소의 소유권과 동일하다.

⑤ 공중대피소 이외의 대피소의 장비에 관한 보관 비용은 이 대피소를 이용하는 가옥의 차가인가에 할당되며, 각자의 할당금은 이 가옥내의 총거실수에 대한 각자의 임차한 거실수의 비율에 따라, 총비용에 대한 비율에 의한다.

⑥ 1961년 협동주택법에서 말하는 협동가옥내에 소재한, 공중대피소 이외의 대피소의 경우에 있어서, 이 조에 의한 제반비용은

전술한 법률 제 42 조의 적용을 받는 비용으로 본다.

제 20 조 (필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옥소유자)

가옥소유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에 의하여 대피소를 건설, 수리 또는 개조할 의무를 지고(이하 이러한 작업을 "필수공사" (required work)라 한다) 이 필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관청 또는 지방당국은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필수공사를 직접 이행하고 가옥 소유자 또는 사업주로부터 이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징수한다.

이러한 비용징수는 이 비용을 세금징수령 (the Taxes (Collection) Ordinance)에 의한 세금으로 간주하여 이 영을 준용 (제 12 조는 제외) 하며, 이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법 제 18 조 및 제 1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이 가옥의 차가인으로 하여금 이 필수공사를 소정기간내에 완공하도록 한다.

제 20 조 A (차가인에 의한 필수공사의 이행) ① 차가인이 제 20 조에 의하여 필수공사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이를 가옥 소유자가 부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 18 조 및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가옥소유자와 차가인 간에 차가인 상호 간에 그리고 임차인과 전차인간에 할당되며, 각 임차인은 가옥 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될 임차료에서 또는 임차료로서 제공한 약속어음 (promissory notes)에서 가옥소유자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② 공사비용의 분담자 간에 할당된 분담금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당국이 입차인, 전차인 또는 가옥소유자의 신청에 입각하여 분담자의 할당금으로 승인한 금액을 이 조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할 할당금으로 본다. 그러나, 비용에 관한 승인은 필수 공사가 완공되고, 관계자들에게 비용총액 및 각자의 할당금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야만 할 수 있다.

자기의 할당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불한 차가인은 이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한, 이 초과분을 자기의 할당금 보다 적게 지불한 자로 부터 변상 받을 수 있다.

제 20 조 B (지정인에 의한 필수공사의 이행) ① 차가인이 소정기간내에 제 20 조에 의한 필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공사의 이행의무를 부과한 당국은 본인의 동의하에 이 공사를 이행할 자(이하 "지정인"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차가인 및 가옥소유자가 이 지정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 당국은 소정기간내에 필수공사를 이행하지 못한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고, 차가인에게 적절한 경고를 발하였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전술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러한 경고에는 제 1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20 조 C (당국에 의한 비용의 배분 및 징수) ① 지정인이 수행하는 공사비용은 그의 보수를 포함하여 제 18 조 및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필수공사가 가옥소유자에 의하여 이행된 것으로

보아, 이 가옥소유자와 차가인간에, 차가인 상호간에, 그리고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배당되며, 이 지정인은 그의 비용 및 보수를 면제받기 위하여 차가인 및 가옥소유자의 배당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당국은 지정인의 신청에 입각하여 이 필수공사의 예상비용 (probable expenses)을 결정하며, 지정인은 필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라도 차가인 및 가옥소유자로 부터 전술한 각자의 비용 분담금에 따라 예상비용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급(先給)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사비용 또는 선불금의 분담자간에 또는 분담자와 지정인간에 각자의 분담액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당국이 분담자 또는 지정인의 신청에 입각하여 분담자의 할당금으로 승인한 금액을 이 조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할 분담금으로 본다.

제 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사비용에 관한 승인은 이 공사를 완공하고, 관계자에게 비용총액 및 할당금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야만 할 수 있다.

④ 제 3항에 의한 승인은 더 이상 항소하지 못하는 관할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20 조 D (비용에 관하여 법원에 출원할 수 있는 권리)

제 20 조 C의 규정은 누구든지 필수공사의 비용 또는 지정인의 보수에 관한 분담금을 그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당국의 승인하에 이미 지불되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관할법원에서 관정하여 주

기를 요구하는 권리를 훼손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청구는 분담금의 지불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청구가 계류되어 있는 법원은 지방당국의 승인의 시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며 지정인이 이를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 20 조 E (의무의 이행을 위한 책임의 유보)

제 20 조 제 1 호 또는 제 20 조 B에 의한 조치는 제 3장에 의한 가옥소유자 및 차가인의 의무 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0 조 F (지방당국의 장의 권한) ① 제 13 조, 제 14 조, 제 16 조,

제 20 조, 제 20 조 B 또는 제 20 조 C에 의하여 지방당국에 부여된 권한은 전반적으로 또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 지방당국의 장 또는 이로 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도 부여되며, 지방당국은 제 3장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지방당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당국의 장 또는 이로 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그의 권한 또는 지방당국의 권한에 의하여 발한 지시의 이행이나,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사전 통고를 발한 후 적당한 시간에 어느 장소에도 들어갈 수 있다.

제 4 절 기 업 체 종업원의 장비 및 훈련

제 20 조 G (기업체 종업원의 장비 및 훈련을 요구하는 권한) 국방
상은 규칙 으로써 .

1. 기업주 (企業主) 에 대하여 민방위의 목적을 위한 장비를 준비
및 유지하고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종업원을 장비 및 훈련시
키며 하나의 건물내에 수개의 기업체가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업
원수 및 기업형태에 따라 이러한 기업체 및 종업원의 전부 또
는 일부가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고 이에 관한 훈련을
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2. 어느 관청이 일반적 또는 제한적 지시에 의하여 특정기업체에
관하여 제 1 호에서 규정하는 장비의 명세 및 유형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3. 제 1 호에 의하여 기업주가 훈련을 시키도록 요구되는 기업체의
종업원에 대하여 이 훈련에 있어서 HAGA 지구 사령관의 지
시와 기업주의 지시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4. 이 조에 의하여 훈련을 마친 종업원에 대하여 같은 기업체내
의 다른 종업원 또는 동일건물내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체의 종
업원을 교육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5. 제 1 호에 의하여 동일건물내에 소재한 다수기업체에 관한 장비
및 훈련에 있어서 이러한 기업주로 하여금 제 20 조 H에서 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 훈련 및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6. 이 조에 의한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기업체, 기업주 또는 종업원에 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7. 법무상의 동의를 얻어 제 5 호에서 말하는 기업주의 장비비용의 부담비율 및 장비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심리방법과 이 심리에 의한 결정을 시행하는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제 20 조 H (다수기업체간의 운영비용) 제 20 조 G에 의하여 어느 기업주가 동일건물내에 있는 다른 기업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유지 또는 준비하거나 종업원을 훈련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의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총액, 이러한 경비에 대한 부담금 또는 이러한 부담금의 지불시기에 관하여 관계기업주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의무를 부과받은 기업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관할관청에 대하여 합의가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이 증명한 의무수행에 소요되는 예정비용에서 다른 기업주가 지불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범위안에서 의무의 이행은 보류할 수 있다.
2. 이 조에 의한 기업주의 통보가 관할 관청에 도달된 경우에는 관할 관청은 이 조에 의하여 증명된 예정비용 중 다른 기업주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자(이하 "수금원" (the collector)이라 한다)를 임명하고 (기업주 자신을 수금원으로 할 수 있다) 수금원에게 수금된 금액을 의무이행의 책임을

진 기업주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관할관청이 전술한 바와 같이 예정비용을 분담하도록 요구되는 기업주의 분담금을 수금하는데 있어 상당한 노력이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수금원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는 수금의 목적을 위하여 비용으로 다룬다.
4. 관할관청이 각 기업주로부터 이조에 의하여 수금할 수 있는 금액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 금액의 징수에 대하여 세금(징수)령의 규정(제 12조는 제외)을 준용한다.

제 20 조 I (업무로 간주되는 훈련) 제 4 장에 의한 종업원의 훈련 및 교육은 이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는 기업체 내에서의 업무로 본다.

제 20 조 J (고용주로서의 국가) 제 4 장에 의한 규칙은 고용주로서의 국가를 기속한다.

제 5 절 민방위 경계 상태

제 21 조 (민방위 경계 상태)

- ① 국방상은 전시중 또는 전쟁이 곧 발발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민방위 경계상태는 국가의 전역이나 일부지역에 대하여 또는 특정지방에 대하여 포고할 수 있다.

② 민방위경계상태가 포고된 경우에는

1. 유리창문(glass panes)의 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제정되는 규정이 국방상이 수시로 포고에 의하여 명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전역이나 일부지역 또는 특정지방에 걸쳐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되며,
2. 유리창문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에 따라야 하며,
3. 누구든지 일몰(日沒)과 일출(日出)간의 기간중(이하 등화관계시간) 제 27조 제 3항 제 6호에서 말하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빛을 노출시키지 못한다.

제 21조 A (가구의 제거) 제 21조에 의하여 대피소 또는 공중피난소로 부터 제거되는 가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가구의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자가 제거당시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가구를 이 자에게 인도한다.
2. 전술한 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구는 소유자의 비용으로 HAGA 사령관 또는 HAGA 지구사령관이 명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가구가 상하기 쉽거나 유독성 또는 기타 위험성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는 자는 제반사정으로 보아 소유자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이를 처분 및 매각할 수 있다.
3. 이 조에 의하여 제거된 가구에 관한 처분조치는 가구주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가구의 보관통고에 있어서는 이조에 의하여

가구를 매각할 수 있는 권리도 언급하여야 한다.

4. 이 조에 의하여 보관된 가구로서 가구주가 보관통고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관장소에서 제거하지 아니한 가구는 HAGA 사령관 또는 HAGA지구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5. 의문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의하여 매각되는 가구는 매각전에 불혀진 저당 또는 압류등의 부대조건에서 해제된 구매자의 소유물이 되며 보관, 통고 및 매각의 비용을 매각수익금에서 공제한후 저당 또는 압류등은 이러한 수익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잔여금은 청구에 따라 가구주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6.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송달되는 이 조에 의한 보관통고는 당해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조에 규정된 시기에 송달되고 관계자가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본다.
7. 이 조의 규정은 가구를 제거하지 아니한 가구주의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 B(보상)

- ① 이 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위원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위원회는 지방당국에 대하여 공중 피난소의 점유자에게 제21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지시에 따라 가구를 치우고 창고에 넣어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

면청구에 의하여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상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3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임명하며, 이 중 1인은 치안법원 판사로서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2인은 국방상 및 내무상이 각각 추천한다.

위원중 적어도 2인은 국가공무원이어서는 아니되며 지방당국의 직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제 22 조 (기동연습을 위한 등화관계) HAGA 사령관은 HAGA 기동연습을 위하여 국가의 전역 또는 일부지역이나 특정건물 또는 차량에 대하여 명령으로서 제 21 조 제 3 항 제 6 호에서 말하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화관계시간중 불빛의 노출은 금지시킬 수 있다.

제 6 절 유독성물질 (Poisonous Substances)

제 22 조 A (유독성 물질의 선언) 국방상이 특정물질의 살포가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을 해치거나 재산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방상은 명령으로써 이러한 물질을 이 법에서 말하는 유독성물질로 선언할 수 있다.

제 22 조 B (소지의 단속)

① 국방상은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1. 유독성 물질을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물질의 포장 보관장소, 보관 장소의 주의 환경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제

출하도록 의무를 과하는 사항과 이러한 보고 제출상의 조건 및 제한, 제출의 방법 및 시기, 보고서의 접수 기관에 관한 사항

2. 어느 기관이 제 1호에 의하여 유독성 물질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자료 하여금 명령내에 명시되거나 전시중 유독성 물질의 소지와 관련하여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을 해치거나 재산을 손상시킬 우려를 없게 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이러한 조치는 유독성 물질은 다른 보관소 또는 다른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도 포함하며 이 규칙은 권한의 위임도 규정할 수 있다.

3. 어느 기관이 공격중 또는 유독성 물질이 소재하는 곳에서는 민방위 경계상태의 포고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동안, 이 포고 또는 공격개시의 이전 또는 이후에 명령이 발하여 졌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그의 비용으로 제 2호에 의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이 규칙은 또한 이 기관의 명령 이행에 관한 조건, 제한 및 절차와 유독성 물질의 판매 또는 파괴 사업의 폐쇄 및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

4.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공격중 또는 이전 당시에 유독성 물질이 소재한 곳에서는 민방위경계상태의 포고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동안 유독성 물질의 이전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사항

② 이 조에 의한 규칙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다.

제 22 조 C (명령시행에 대한 법원의 권한) 제 22 조 B 제 1 항 제 2 호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소정기간내에 이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명령불이행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과할 수 있는 형벌 이외에, 이 명령을 타인으로 하여금 명령불이행자를 대신하여 후자의 비용으로 이행하도록 명하거나 법원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유독성 물질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불이행자가 생산, 시장 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주인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거나 유독성 물질을 매각하는 때까지 이 기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제 22 조 B 제 1 항 제 3 호에 의한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D (판매에 관한 규정) 제 6 장에 의한 유독성 물질의 판매에는 제 21 조 A 제 5 호를 준용한다.

제 7 절 개인장비 (Personal equipment)

제 22 조 E (부과금의 부과) 국방상은 노동상의 동의 및 국회의무 안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써 민방위를 위한 개인장비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부과금 (이하 「부과금」 (the charge) 이라 한다) 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2 조 F (부과금납부자 및 장비수취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 22 조 E에 의한 규칙으로 정한다.

1. 양로보험 및 1968년 국민보험법에 의한 유족보험의 피보험자 중에서 부과금의 부과대상자 및 부과금의 금액과 납부시기
2. 민방위를 위하여 개인장비를 무상으로 수취할 수 있는 대상자
3. 전술한 바와같이 무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개인장비의 종류

제 22 조 G (국민보험협회에 의한 징수) 부과금은 국민보험협회 (the National Insurance Institute)가 징수하고 징수에 소요된 행정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넣는다. 국방상과 노동상은 명령으로 이러한 행정비의 금액을 정한다.

제 22 조 H (보험료에 부과되는 부과금) 부과금은 1968년 국민보험법에 의한 양로보험 및 유족보험의 피보험자로 부터 이러한 보험료에 대한 부가금 (附加金)으로서 징수하며 양로보험 및 유족보험에 관한 국민보험법의 모든 규정은 제 7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과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국민보험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주는 고용인의 임금에서 고용인을 대신하여 지불한 부과금의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 22 조 I (장비의 분배 및 취급) 국방상은 이 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분배되는 장비에 관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해당자에 대한 장비지급의 방법 및 시기
2. 장비를 무상으로 동일형태의 장비로 교환하여 주거나 분실의 경우에는 동일 형태의 장비를 지급하여 주는 세부조건
3. 장비의 유지 및 보관방법
4. 장비의 휴대, 비치 또는 이용의 시기 및 조건에 관한 사항

제 22 조 J (노동법원의 재판권) 1969년 노동법원법 (the Labour Courts Law) 에 의한 지방법원 (the Regional Court) 이 부과금에 관한 단독재판권을 가진다.

제 22 조 K (유상으로 취득하는 장비) 국방상은 국회의무안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써 모든 국민 또는 특정범위의 국민에 대하여 민방위의 목적을 위한 개인장비중 제7장에 의하여 무상으로 지급되는 장비 이외의 장비를 각자의 비용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비를 휴대, 비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 및 상황에 관한 지시를 말할 수 있다.

제 8 절 총 칙

제 23 조 (서류의 송달) ① 민방위규정에 의하여 수신인에게 서명으로 송달되어야 하는 명령·통고 또는 청구사항(이하 "문서"(document)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송달할 수 있다.

1. 직접 수신인에게 송부한다.
2. 수신인과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자에게 송부한다.
3. 수신인의 일상적 또는 최후의居所(居所)나 사업소에 대하여 동거 우편으로 송부한다.

② 서류의 송달시기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는 다음과 같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발신된 경우에는 발신한 때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때.
2.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발신된 경우에는 발신한 때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한 때.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건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이를 눈에 띄이기 쉽게 게시하거나, 적어도 3개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게시 공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 23 조 A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에서 지방기관의 부채의 공제)

① 재무성 (the Treasury)은 HAGA의 요구가 있으면, 내무상의

승인을 얻어, 법률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국고로부터 지방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서 이 금액에 관하여 담보, 저당 또는 기타 양도금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10 조 제 5 항 또는 제 10 조 A에 의하여 지방기관으로부터 HAGA에 지불할 부채(負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HAGA에 지불할 수 있으며, HAGA에 대한 지불은 당해 지방 기관에 대한 지불로 본다.

② 이 조는 HAGA에 대한 지방기관의 부채를 수금하는 기타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4 조 (위반행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HAGA요원은 징역 3월 또는 벌금 500 파운드에 처하거나, 전시중에 이러한 위반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2,000 파운드에 처한다.

1. 합법적으로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임무 수행을 소홀히 한 자.
2. 합법적으로 발하여진 명령이나 지시에 불복(不服)하는 자.
3. HAGA요원의 자격으로 위탁받은 장비 또는 재산을 파손하거나 보관을 소홀히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역 3월 또는 벌금 500 파운드에 처하거나, 전시중에 이러한 위반행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2,000 파운드에 처한다.

1. 민방위 규정에 위반하거나, 이의 준수를 소홀히 한 자.
2. 허가없이 HAGA에 계복 또는 표지(insignia)를 착용하는 자.

3. HAGA요원이 민방위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고의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자.

③ HAGA 사령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허가없이, 어떠한 단체, 사업, 직업, 협회, 생산품 등을 기술함에 있어, 동일명칭의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HAGA의 승인을 얻거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민방위" "HAGA" 사령관의 승인을 받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말을 사용하는 자는 벌금 3,000 파운드에 처한다.

④ 이 조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이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형벌 이외에, HAGA 사령관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경고장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기간중 각 1 일에 대하여 징역 2 일 또는 벌금 20 파운드에 처한다.

⑤ 어느 단체가 제 2 항에 의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 이 단체의 장, 간사(幹事), 이사(理事), 지배인 또는 관리인이었던 자는 이 위반행위가 자기도 모르게 범하여졌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⑥ 사업소 소유자가 대피소의 건설 또는 유지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 함으로써 제 2 항 제 1 호에 위반행위를 범하였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형벌 이

외에, 대피소를 건설, 수리 또는 개조할 때까지 사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⑦ 제 15 조 제 2 항에 위반하는 자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2,000 파운드에 처한다. 법원은 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형벌 이외에, 대피소의 점유자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를 제공한 후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할 수 있다.

1. 민방위규정에 저촉되는 대피소의 사용 중지.
2. 점유자에 의한 대피소의 명도
3. 법원이 재판상항으로 보아 민방위규정에 따른 대피소의 이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대피소의 인계.

⑧ 검찰총장 (the Attorney-General) 또는 그 대리인은 대피소의 사용중지, 명도 또는 인계에 관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제 7 항에 의한 절차에서 허용할 수 있는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에 의한 위반행위는 거의 모두 경범죄 (misdemeanours) 로 다룬다.

⑩ 이 조의 규정은 타법률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범한 자의 형사 책임에 부가 (附加)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 24 조 A (벌금의 선택) ① 벌금을 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 (finable offence) 라 함은 민방위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써, 국방상이 범무상의 동의를 얻어, 관보상에 공고하는 명령에 의하여 벌금을 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로 선언한 것을 말한다.

② HAGA 지구사령관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또는 HAGA 요원이 어떤 자가 벌금을 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소정 (所定) 의 소환장 (summons) 을 송부할 수 있다.

소환장에는 피소환자의 위반행위를 기술하고, 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대신 소정의 벌금을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③ 제 2 항에 의한 소환장을 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환장에 명시된 벌금을 법원에 지불하거나, 우편은행 (the postal bank)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이를 송금할 수 있다.

④ 국방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령으로 규정한다.

1. 벌금을 과할 수 있는 위반 행위 및 이에 부가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 다만, 벌금액은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 파운드, 재범은 50 파운드다.
2. 제 2 항의 목적을 위한 소환장의 내용.
3. 벌금의 지불방법

⑤ 1. 제 3 항에서 말하는 벌금을 지불하는 자는 법정에서 공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벌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자에게 송부된 소환장은 1940년 치안법원절차규정 (the Magistrate Courts Procedure Rules) 제 26 장에 의

하여 발송 및 송달된 소환장으로 본다.

⑥ 어떤 자가 제 3 항에서 말하는 벌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이 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법정형 이외에, 제 4 항에서 규정하는 범위안의 벌금을 과하며, 이 자의 출두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결정하는 비용은 부과할 수 있다.

제 24 조 B (징계법) 군인이 아닌 HAGA 요원은 부칙 (the Schedule) 에서 규정하는 징계법 (the disciplinary law) 의 적용을 받는다.

제 25 조 (폐지) 다음의 규칙은 폐지한다.

1. 1948 년 비상규칙 (등화관제)
2. 1948 년 비상규칙 (유리창문의 보호)
3. 1948 년 비상규칙 (민방위)
4. 1948 년 비상규칙 (대피소)

제 26 조 (잠정규정) ① 이 법률의 시행 이전에 1948 년 비상규칙 (이 조에서는 “ 전규칙 ” 이라 한다) 제 5 조에 의하여 건물이 비워진 경우에는 이 건물은 분담금의 지불 및 점유의 회복 (resumption of occupation) 의 목적을 위하여 제 16 조에 의하여 비워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의 시행직전에 전규칙 제 6 조에 의하여 변상받을 수 있는 경비는 제 18 조에 의하여 변상받을 수 있는 경비로 본다.

③ 제 19 조 제 5 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이전에 차가인 또는

전차인이 전규칙 제 6조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7 조 (시행 및 규칙) ① 국방상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국방상은 내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지방당국에 대하여 그 관리하에 있는 토지를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의 부과.
 2. 전시중 또는 HAGA기동훈련 기간중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당국이 점유하고 있는 장비, 차량, 각종 소화수단 (消火手段: means of fire-fighting) 및 기타 물자의 공급.
 3. 전시중 또는 HAGA기동훈련 기간중 지방기관의 직원을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항.
 4. 주민의 소개 (疎開: evacuation) 및 새로운 주택제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당국에 의한 HAGA에의 지원.
 4. A 민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소화용 (消火用) 또는 구급용으로 지방당국 또는 보조기관이 취득한 각종 장비의 규격 (standards) 및 명세 (明細: specifications).
 5. 관할지역내의 민방위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방당국의 기타 부담금.
- 2 - 2 제 2 항 제 2 호에서 말하는 임무가 부여되고, 지방당국이 필요한 토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당국은 이러한 토

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HAGA 사령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특정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이 회계연도에 HAGA가 필요로 하는 토지의 목록을 지방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단서(但書)는 토지에 대한 필요가 예기치 못한 원인에 의하여 후에 생기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방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이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기타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근무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8조 제6항에서 명시한 법률에 의하여 국고로부터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HAGA요원에게 발생한 치료비 또는 금전적 손실을 HAGA기금에서 지급하는 사항.
2. 전시중 또는 HAGA기동연습 기간중 도로 교통규칙.
3. 전시중 또는 HAGA기동연습 기간중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지휘.
4. 다수인이 출입하는 사업소들의 소유자들이 민방위의 목적을 위한 장비를 유지 및 비치할 의무.
5. 건물 및 시설을 공중으로부터 은폐하기 위한 위장(偽裝).
6. 등화관계시간에 빛을 노출시킬 수 있는 조건.
7.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한 각종 유리창문의 보호.
8. 국방상이 명령에 의하여 위험물질(dangerous substance)로 선언한 연료·가스 또는 기타 물질(다만, 제22조 A에 의하여

특성물질로서 선언될 물질은 제외)의 저장방법.

9. 전투기간중 민방위의 목적을 위한 우물 및 저수지 (water reservoirs)의 소유자의 급수임무.

10. 제2조 제8항에서 규정한 경제정보 및 해제정보의 사용제한 및 이러한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주지(周知)시키는 방법.

부 칙 (Schedule)

제1조(정의) 이 부칙에서 “징계관”(懲戒官) : disciplinary officer)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HAGA의 부대장으로서 소령급 이상의 현역장교.

2. HAGA 사령관이 징계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한 대위급 장교.

3. 현역군인이 아닌 HAGA의 부대장으로서 적어도 소령급에 해당하는 자.

“징계사유”(懲戒事由)라 함은 이 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위반행위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HAGA요원이 된자에 관하여는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헌병”(military policemen)이라 함은 1955년 군사재판법(the Military Justice Law) 제227조에서의 의미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2조(징계관의 처벌권한 및 그 한계) ①징계관은 징계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1. 경고 (警告 : warning)

2. 견책 (譴責 : reprimand)

3. 80 파운드 이하의 벌금.

4. 강등 (降等)

5. 전투기간중 위반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15일 이하의 구류.

② 징계관이 피징계자보다 2계급 이상인 자가 아니면 이 부칙에 의하여 징계사건을 심리하지 못한다.

③ HAGA장교는 HAGA지구사령관에 의하여서만 강등처벌을 받는다.

제 3 조 (벌금에 대신하는 구류) 징계관은 벌금형을 받은 자가 벌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금 5 파운드마다 구류 1일로 환산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 4 조 (벌금 대신 구류에 처한 기간의 공제)

제 3 조에 의하여 구류된자가 구류기간의 만료전에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구류기간은 벌금 총액에 대한 납부한 벌금의 비례에 따라 단축된다.

제 5 조 (손해배상의 요구) 징계관은 징계사건을 심리한 후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요구액은 100 파운드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손해배상요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벌금 및 배상금의 징수) 벌금 또는 손해배상의 처벌을 받은 자가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벌금

또는 손해 배상금은 이 자가 HAGA에서의 근무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서 공제 하거나, 세금(징수)령(the Taxes(Collection) ordinance)에서 규정하는 세금으로 간주하여 징수하며, 징수된 벌금을 HAGA에 귀속된다.

제7조(조건부 구류) 징계관은 구류처분을 재결함에 있어, 이 처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건부(conditional)로 하고, 재결일로부터 8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정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8조(조건부 구류의 집행) ① 조건부 구류처분을 받은 자는 정지기간중 선고받은 것과 동일한 위반행위 또는 판결문에서 지정한 징계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하고, 징계관이 정지기간중 또는 정지기간 경과 후에 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한, 형(刑)을 받지 아니한다.

② 조건부 구류처분을 받은 자가 누범(累犯)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 누범사건을 재결한 징계관은 조건부 구류처분을 취소하고 구류의 집행을 지시한다.

③ 조건부 구류처분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명령이 발하여진 날로부터 구류기간이 개시된다.

④ 피징계자의 누범에 대하여 유죄를 판결하고, 이 누범에 대하여 구류를 과하지 아니한 징계관은 제반사정으로 보아 조건부 구류처분을 취소하고 구류를 집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건부 구류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정지기간을 1차에 단하여 2년 이하의 기간연장시키도록

지시할 수 있다.

피징계자의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징계관은
누법에 대하여는 이 항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징계관은 정지기간중 범하여진 누법에 대하여는 조건부 구류를
과하지 못한다.

⑥ 누법에 대하여 구류처분을 받고,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건
부 구류처분이 취소된 자는, 누법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징계관
이 두 구류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병합을 지시하지 아니하는
한, 두 구류기간을 합산한 기간 구류에 처하여진다.

다만, 이 합산한 구류기간은 2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 2 항에 의한 명령은 이 부칙 제 14 조에 의한 이의(異議)의
대상이된다.

⑧ 조건부 구류처분을 받은 자가 HAGA요원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는 이 처분을 취소하고 구류처분을 집행하지 못한다.

제 9 조 (구류처분의 이행) 징계사유로 인하여 구류처분을 받은 자
가 이 처분을 전부 이행하기 전에 재차 구류처분을 받은 경우
에는, 이자는 두번째의 구류처분을 과한 징계관이 두 구류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산이행토록 지시하지 아니한 한, 두 구류기
간을 동시에 이행한다.

제 10 조 (구류장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구류처
분을 받은 자는 1955년 군사재판법에 의하여 군인을 구치하는
영창 또는 가수용소에 구치된다.

제 11 조 (징계절차) 징계관은 피징계자가 출두한 자리에서 심리를 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들어야 하며, 심리를 개시하기 전에 피징계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2 조 (징계판결) 징계관이 심리를 끝내고 이 징계사건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판결을 하여야 하며, 피징계자가 유죄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13 조 (판단의 집행) ① 조건부징계처분 이외의 기타처분의 집행은 이 부칙 제 21 조 또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지되거나 유예되지 아니한다.

② 징계처분을 내린 징계관 또는 이의 신청은 재결하는 HAGG 사령관은 이의신청의 절차가 끝나거나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때까지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 또는 유예시킬 수 있다.

제 14 조 (처벌의 경감) HAGG 사령관은 이 부칙에 의하여 부과된 처벌을 취소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으며, 더 가벼운 처벌로 바꿀 수 있다.

제 24 조 (규칙) 국방상은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의결요구절차 및 징계사건 심리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